월간

재정포럼 2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09년 2월호 제152호

현안분석 •
-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 분석/ 김우철
-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송호신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소고/ 전병힐

해외동향 • 2009년도 일본의 세제개편 외

정책흐름 •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외

KIPF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9.2_vol.152

CONTENTS |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민영화 · 송대희

현안분석

06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 분석 · 김우철
29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송호신
46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소고 · 전병힐

해외동향

61 2009년도 일본의 세제개편

주요국의 조세동향

70 프랑스 경기부양 종합대책 외

정책흐름

84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90 2008년 국세징수 실적
92 '08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95 IMF의 G-20 국가 경제성장전망 수정 발표
100 유가환급금 수령자 설문조사
102 선진 조세체계 구현을 위한 목적세 정비 추진 필요성
106 근로사실이 불확실한 53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108 미분양주택 취득시 취 · 등록세 50% 감면 확대

재정통계

111 업종별 법인 수 외

이슈 & 포커스

117 추경 10조 규모로 조기 편성 외

월간 재정포럼 2009년 2월호 통권 제152호·라101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전화 02-2186-2130·3 **홈페이지** : www.kipf.re.kr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민영화

송대희
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최근 공공성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 여기저기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공식적 개념 정리는 시도되지 않고 있다. 공공성이 공공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성의 개념 정의는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정책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공공기관(公共機關)의 공공성(公共性) 개념은 크게 보아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소유 및 관리주체적 관점에서의 공공성

첫째, 소유 및 관리주체적 관점에서의 공공성은 특정기관이 정부의 관리 책임하에 있음을 나타내며 가장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다. 흔히 공공기관(公共機關)이라고 할 때 공공(公共)의 의미는 정부의 주체적 소유 관리를 뜻하며 세계적으로 흔하게 통용되는 개념이다. 공기업(public enterprise)이라고 할 때 공(public)은 공적 소유를 의미하며 공기업과 정부 소유기업(state-owned enterprise)을 동의어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공공(公共)의 개념을 소유 또는 사실상 지배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근거법이 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부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어 최종적인 경영책임이 정부에 있는 공기업 및 각종 공공단체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관리주체로서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대체로 주인 없는 기관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를 진짜 주인은 국민이고 대리 주인이 정부이기 때문이라는 복대리(復代理)이론이 설명해준다. 진짜 주인에게 공공기관을 되돌려 준다는 것이 영국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이었다. 또한 OECD는 2005년도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주체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개념은 첫째, 소유 및 관리의 공공성 둘째, 절차와 과정의 공공성 셋째, 사업성격과 목적의 공공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사업추진 절차 및 과정적 관점에서의 공공성

둘째, 사업추진 절차 및 과정적 관점에서 보면 공개성(公開性)이 공공성의 핵심 내용이 된다. 공공(公共)장소나 공공(公共)질서라고 할 때의 공공(公共)의 의미가 시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공개(公開)를 함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개성은 사업 관련 시민 또는 다수 국민에 대한 공정성과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함의하고 있다. 공개성은 진짜 주인인 국민에게 대리 주인인 정부가 공공기관의 업무내용을 공개적으로 보고하고 업무추진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과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개된 공공기관이 유사부문과 비교되고 비판됨으로써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불법 비리가 효과적으로 억제되기를 기대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공개자료의 적절성과 신빙성에 대한 전문적 검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은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관이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이유도 바로 공공성 때문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300여개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경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알리오시스템'은 과정적 관점에서의 공공성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본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개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개념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사업추진의 성질 및 목적적 관점에서의 공공성

셋째, 공공성 개념을 사업추진의 성질 및 목적적 관점에서 보면 공공성의 핵심내용은 공익성(公益性)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익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헌법적 의미의 공익성을 찾아본다면 헌법 제23조와 제37조에 나타나 있는 공공복리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복리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는 다시 국가성장 발전과 사회복지 강화로 풀이되어야 할 것이다. 소위 균형 있는 성장과 분배의 지속적 발전과 개선이 공공복리 증진의 실체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공익성은 각 공공기

특정 설립 목적을 배경으로 설립된 각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은 각각의 설립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을 것이다.

관 설립 관련 특별법에 정해져 있으며 결국은 기관 설립 배경에 따라 성장발전 촉진 기능 또는 사회복지 강화 및 개선 기능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장발전 촉진 기능을 주 설립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주로 1960~70년대에 많이 설립되었으며 대체로 관련 민간산업의 성장발전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산업을 대신하여 공공기관이 직접 생산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간의 산업이 크게 발전한 현재는 민간이 효율적으로 공급 가능한 재화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함께 공급하는 경우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의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공공기관에 비해 이러한 지원이 없는 민간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초기의 성장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1980~90년대를 전후하여 사회복지 확충을 주 목적으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설립되었다. 특정 설립 목적을 배경으로 설립된 각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은 각각의 설립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사업 수행 공공기관, 즉 공익기관이라고 해서 그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필자는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다. 신속한 서비스 제공, 수혜자 선발의 전문성, 복지전달비용의 절감 등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생산성을 높일수록 주어진 재정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공공기관의 공공성 개념은 민영화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가? 첫 번째, 소유와 관리의 공공성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감독 철저와 환경 변화로 정부관리가 불필요해진 기관의 민영화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두 번째, 절차와 과정의 공공성은 공공기관 경영내용의 공개와 이에 따른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등 경영 혁신을 시사하고 있다. 세 번째, 사업성격과 목적의 공공성은 각 설립 목적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요청하기 때문에 경영 혁신과 더불어 가능한 민영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사업, 즉 공익사업일수록 효율성 제고로 더 많은 사회복지의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 방법상(바우처제도 등)의 민영화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공부분의 생산성과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길이 결국은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길이요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인 것이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안분석

■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 분석**
김우철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송호신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소고**
전병힐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 분석[1)]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wkim@kipf.re.kr)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사회나 그 국가의 조세재정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오랫 동안 공공경제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Ⅰ. 서론

한 사회나 한 국가에 있어 개인들 간에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성취(socio-economic achievement)에 있어서의 차이,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그 사회나 그 국가의 조세재정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서 오랫 동안 공공경제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다. 그런데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결과에 대한 각종 불평등도 지수나 빈곤율 지수, 양극화 지수 등의 국가들 간의 격차나 한 국가 내에서의 시기별 추이를 분석한다든지, 조세재정정책으로 인해 이러한 각종 지수들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그 긍정적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도 가지고 있다. 첫번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개인들이 달성한 사회경제적 성취의 불평등의 '원천' 이나 불평등이 발생한 '과정' 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천이나 과정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있어서의 차이는 개인들의 배경을 형성하는 환경들(circumstances), 개인들의 노력(individual effort), 정부의 정책(government policy), 그리고 우연적 운(random luck)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국가들 간의 재분배의 '전체 수준' 만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들 간의 재분배 정책을 비교함에 있어서 단순히 재분배의 전체 수준만을 비교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바람직한 조세재정정책의 설계 역시 전체적인 결과의 평등

1) 본고는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김우철 · 이우진, 2008) 주요내용을 요약한 것임.

이나 불평등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환경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을 얼마나 완화시키는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연구들은 조세재정정책이 불평등도 지수에 미치는 '전체적 영향' 에만 분석을 한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본 연구의 지침이 된 것은 로머(John Roemer, 1993, 1998)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론이다. 로머의 이론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현실 경제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이론화한 것인데,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그의 이론에 기초하여 수행된 것이다. 사실 기회의 평등에 대한 사회과학적 혹은 철학적 논의들은 그동안 많았지만 기존의 많은 논의들은 이를 정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갖지 못하여 추상적 논의들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로머의 이론이 갖는 장점 중의 하나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애매모호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한 국가의 재정정책이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기회의 평등을 얼마나 잘 보장하는지를 이론 및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시한 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연구들이 갖는 이러한 한계들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소득획득을 위한 기회(opportunity for income acquisition)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세재정정책은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을 얼마나 완화하는지를 검토하는것이다.

로머의 이론은 '기회의 평등' 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현실 경제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이론화한 것이다.

Ⅱ. 기회의 평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1. 현대적 평등주의 이론들

현대적 평등주의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잘 알려진 것들로서는 (i)근본재들(primary social goods)에 의해 분배적 정의의 원리들을 도출하려는 롤즈(John Rawls, 1971)의 평등주의 이론, (ii)후생과 근본재의 중간쯤에 위치한 개념인 '기본능력'(capability)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센(Amartya Sen, 1985)의 평등주의이론, (iii)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에 의해 재능의 불평등을 보정하려는 드워킨(Ronald Dworkin, 1981ab)의 평등주의 이론을 들 수 있다. 로머의 기회의 평등에 관한 이론은 이러한 이전의 연구들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먼저 롤즈의 이론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몇 가지 필요한 점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롤즈가 근본재들을 통해 정의의 원리들을 도출하려고 한 이유는 사람들 간의 선(善)에 대한 관념은 너무도 다양하여 개인들 간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경제학적으로

롤즈의 이론에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문제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고려되어 있다.

이야기하면 후생은 개인들 간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근본재들은 선에 대한 관념이 무엇이든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객관적(objective)이고 비교가 가능하다(comparable)고 본 것이다. 그의 차등원칙(difference principle)은 근본재들을 평등화하려는 원칙이다. 따라서 롤즈의 이론은 비후생주의적 평등주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롤즈는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하에서 의사결정을 할 경우 근본재를 평등화하는 것을 선택하리라고 주장한다. 이 경우 무지의 베일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선호(preference)나 재능(talent) 등을 전혀 모르는 상태를 말한다. 셋째, 근본재들은 동시에 개인들이 자신의 의지를 통해 사회경제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투입물들이지 사람들이 바로 소비하는 최종소비재들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롤즈의 이론에는 개인의 책임이라는 문제가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고려되어 있다[2].

이러한 현대 정치철학적 논의들은 그 주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생각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는 결과에서의 정의뿐 아니라 절차나 과정에서의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효율이든 평등이든 그 자체에 대한 물신숭배(fetishsm) 를 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으리라고 본다. 효율을 강조하든 평등을 강조하든 결국에는 개인들이 '좋은 삶' (good life)을 영위하도록 돕고 자아실현(self-realization)을 진작하도록 하는 데 있을 것이다. 소수의 부자들에게 돈을 몰아줘서 경제를 발전시키면 국익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도 더 나은 삶이 보장된다는 생각은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결과주의의 극단적 표현이라 하겠다. 둘째, '결과'를 후생으로 측정하든 자원으로 측정하든 상관없이 그 결과의 불평등에 있어 어느 만큼이 개인적 책임에 의한 것이고 어느 만큼이 환경의 영향에 의한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결과의 불평등 중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보정할 필요가 없고 사회가 제공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이다. 셋째, 개인의 선택의 결과는 그것이 숙고된 판단(deliberate judgment)에 근거한 선택일 경우에만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숙고된 판단은 책임에 대한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왜냐하면 숙고된 판단에 의한 선택에는 환경의 영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넷째, 후생(welfare)과 만족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다. 후생은 자아실현과 성취의 정도에 비례하며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이 자아실현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2) "도덕적 인간들로서 시민들은 자신들의 최종목적들이나 선호들을 형성하고 계발하는 데 일정부분을 담당한다...근본재를 사용하자는 것은 우리의 목적들에 대한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2. 로머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론

일반적으로 기회의 평등이란 사회경제적 성취를 달성하기 위한 경쟁에 있어 어느 누구도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정치철학의 많은 논의들은 윤리적으로 의미 있는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의 정치철학적 논의들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기회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량화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 논의들을 현실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한 지침을 주지 못하고 있다. 로머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론은 기존의 현대 정치철학적 논의들의 긍정적 성과들을 흡수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철학적 논의들이 갖는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로머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론을 소개하기에 앞서 몇 가지 개념적 명확성을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회의 평등(equal opportunity)이라는 말을 통해 의미하고자 하는 바는 사회경제적 성취를 달성하기 위한 경쟁에 있어 어느 누구도 '불공정한 우위'(unfair advantage)를 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에서의 기회의 평등이란 말에는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존재할 수 있다. 하나의 의미는 일의 할당이나 채용에 있어 평가에 무관한(irrelevant) 요인들로 개인들 간 차별을 하지 않고(non-discrimination) 개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자질(merit)만을 보고 평가한다는 의미에서의 기회의 평등이다.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잠재능력(relevant potential)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형성기(formative period)에 미래의 직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자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줌으로써 모든 개인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leveling-the-playing-field) 의미에서의 기회의 평등이다. 로머의 이론에서의 기회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주로 두 번째 의미에서의 기회의 평등이다. 둘째, 기회의 평등/불평등을 이야기 할 때 '무엇에 대한 기회'(opportunity for what)의 평등/불평등을 말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떤' 사회경제적 성취에 대한 기회를 평등하게 하려는 것인지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기회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애매모호하게 될 위험이 있게 된다. 셋째,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환경적 요인들로 인한 차이는 보정하면서 개인의 근면함이나 노력의 차이(보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행동이나 선택의 차이)로 인한 부분에 개인적 책임을 지우고자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한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는 정책은 최적조세이론에서 말하는 최적조세(optimal taxation)와도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공공경

로머의 이론에 있어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는 조세정책은 최적조세이론에서 말하는 최적조세의 하나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제학의 한 분야인 최적조세이론에서 통상 말하는 최적조세는 사회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를 최적화하는 조세정책이므로 로머의 기회 평등화를 달성하는 조세정책과는 일견 다르게 보인다. 사실 로머는 미얼리즈(James Mirrlees, 1971, 1976) 등에 의해 개발된 최적조세이론을 염두에 두고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론을 개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로머의 이론에 있어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는 조세정책은 최적조세이론에서 말하는 최적조세의 하나로 '해석될 수도' 있다. 우선 최적조세이론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단일의 최적조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후생함수에 대해 최적인가에 따라 최적조세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는 것이다. 최적조세이론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회후생함수는 공리주의적 사회 후생함수(utilitarian social welfare function)이지만 이것은 경제학자들의 관행에 따른 것일 뿐 최적조세이론에서 반드시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만을 선택해야 하는 이론적 혹은 선험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사회후생함수를 한 가지로 특정화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제약식들을 어떤 방식으로 포함시키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면서 로머의 이론을 최적조세이론과 관련지어 본다면 우선 로머의 이론은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나 롤즈적 사회후생함수가 아닌

$$\int_0^1 Min(v^1(\pi,\varphi^1),...,v^T(\pi,\varphi^T))d\pi \qquad \text{수식 (1)}$$

를 사회후생함수로 선택한 경우의 최적조세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통상의 최적조세이론과 마찬가지로 로머의 기회의 평등의 이론도 다양한 제약식들을 어떤 방식으로 포함시키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다르게 분석 할 수 있다. 그런데 수식 (1)을 사회후생함수로 해석할 경우에는 이를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나 롤즈적 사회후생함수와 비교해 볼 수 있다[3]. 우선 순수하게 공리주의적인 최적조세는

$$\int_0^1 \sum_{\theta=1}^{T} p^\theta v^\theta(\pi,\varphi^\theta)d\pi \qquad \text{수식 (2)}$$

를 최대화 하는 정책 규칙 $\varphi=(\varphi^1,...,\varphi^T)$이고 순수하게 롤즈적인 최적조세는

3)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롤즈는 후생이라는 개념을 배척하고 근본재라는 개념을 옹호하였다. 따라서 사회후생함수라는 개념을 '롤즈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이유로 '롤즈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첫째, 근본재에 대한 적절한 지수화의 문제가 해결되면 $v^\theta(\pi,\varphi^\theta)$를 근본재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수식 (2)를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라고 부르는 것은 경제학의 관행이다.

$$Min_{\pi,\theta} v^{\theta}(\pi, \varphi^{\theta})$$ 수식 (3)

를 최대화 하는 정책규칙이다. 반면 로머의 최적조세는 최대화하는 정책규칙이다. 따라서 로머의 기회를 평등화하는 최적조세는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는 롤즈적이지만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는 공리주의적인 접근을 취하는 중간적 형태의 사회후생함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는 로머적 최적조세는 일반적으로 순수하게 롤즈적인 최적조세보다는 덜 누진적이지만 순수하게 공리주의적 최적조세보다는 더 누진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이상에서 로머의 이론에서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는 조세정책이 최적조세정책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았다.

로머의 기회를 평등화하는 최적조세는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는 롤즈적이지만 개인의 '노력'에 대해서는 공리주의적인 접근을 취하는 중간적 형태의 사회후생함수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기회의 평등에 대한 최근의 실증 연구들

기회의 평등에 대한 로머의 분석틀은 여러 외국의 데이터를 이용해 소득획득, 교육정책, 건강보험, 실업보험, 외국원조의 배분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론적·실증적으로 적용되어 왔고 2000년 이후에는 그 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회의 평등에 대한 학계와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로머의 조언하에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남미의 여러 국가들을 비교분석한 단행본 보고서(Measuring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Latin America and the Carribean, 2008)를 간행하기도 하였다. 기회의 평등에 연구 관심은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절에서는 로머의 기회의 평등에 관한 이론에 기초한 기존의 여러 연구들을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표 1〉은 기존연구들을 연구연도별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다.

노동경제학과 사회학의 많은 연구들은,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 두 가지 변수가 개인의 경제적 성취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환경변수들임을 밝히고 있다.

〈표 1〉 기회의 평등에 대한 실증연구들

연구	내용요약
Betts and Roemer(2000)	미국의 자료를 이용해 인종과 부모의 경제적 지위로 유형을 구분한 후 교육의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계산
Page and Roemer (2001)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을 경제적 성취로 측정할 경우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재정정책을 계산
Roemer et al.(2003)	선진 11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을 경제적 성취로 측정할 경우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조세재정정책을 계산
Aaberge, Colombino and Roemer(2001)	이탈리아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추정한 후 비교
Dardanoni, Fields, Roemer, and Puerta(2006)	영국과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환경과 개인의 노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한 후 두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이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지를 분석
Lefranc, Pistolesi, and Trannoy(2006)	프랑스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회의 평등을 분석
Bourguignon, Ferreira, and Menendez(2007)	브라질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회의 평등을 분석

Ⅲ. 한국사회의 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기초 분석

본장에서는 제Ⅳ장에서 구체적으로 수행할 실증분석에 대한 예비 작업으로 우리나라에서 환경의 불평등이 개인들의 경제적 성취에 있어서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개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 요인의 구체적인 예는 매우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 두 가지를 고려한다. 노동경제학과 사회학의 많은 연구들은, 이 두 가지 변수가 개인의 경제적 성취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환경변수들임을 밝히고 있다. 당연하지만 학력뿐 아니라 학벌, 그리고 직업뿐 아니라 직급이나 근무회사도 중요한 환경변수이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입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상적으로는 부모의 소득이나 부에 대한 자료를 환경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다. 첫째, 부모의 소득이나 부에 대한 자료는 매우 구하기 어려운데다 설령 구한다 할지라도 피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소득이나 부인가에 따라서 결과에 많은 차이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려면 부모의 평생소득이나 부를 환경변수로 설정하면 되겠지만 이에 대한 정보는 입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둘째, 부모의 소득이나 부를 기준으로 유형들을 구분하려면 소득이나 부를 몇 개의 구간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그러한 구분은 학력이나 직업의 구분에 비해 매우 자의적일 뿐 아니라 그 구분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다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학력과 소득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가구조사 자료는 다수가 존재하나, 피조사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상태까지를 조사 내용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많지 않다. 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노동패널자료는 본인의 소득과 학력은 물론 부모의 학력과 직업 등이 함께 조사되어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노동패널자료에 나타나 있는 실제 자료를 통해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본인의 학력과 본인의 소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토한다.

노동패널자료에 나타나 있는 실제 자료를 통해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본인의 학력과 본인의 소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토한다.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본 연구는 분석 기간을 2001년부터 2005년까지로 한정하였다. 첫째, 노동패널자료는 1998년 처음 발표되어 여러 차례의 수정·보완을 거쳤는데 그런대로 일관된 기준이 확립된 것은 2001년 이후부터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노동패널은 1차 조사(1998)에서부터 아버지의 최종학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어머니의 최종학력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은 4차 조사(2001)에서부터이다. 둘째,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소한 3년간 우리 경제가 큰 충격을 겪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충격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는 시기가 2001년 이후라고 생각된다. 한편 주요 분석 대상은 '2005년 현재 35세 이상 55세 이하의 남성가구주'로 제한하였는데 이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노력이나 특성에 의한 요인을 어느 정도 분리하여 파악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소득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제주체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외환위기 이후 주된 일자리에서의 은퇴가 조기화 되는 경향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취업의 최대 연령을 55세로 설정하여 55세 이상의 가구주도 분석대상에 제외하였다.

이하의 분석에서는 부모의 학력에 따라 전체 자료를 다음과 같이 3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i) 먼저 어머니와 아버지 중 최고 학력자의 교육연수가 0~5년인 남성가구주 그룹을 Edu_Pa1로 나타낸다. 노동패널 자료에서 이는 부모 중 최고 학력자가 무학이거나, 초등학교를 중퇴 또는 수료한 경우를 포함하게 된다[4].

(ii) 다음 부모 중 최고 학력자의 교육연수가 6년~9년인 남성가구주 그룹은 Edu_Pa2로 나타내며, 이는 노동패널 자료 중에서는 부모 중 최고학력자가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학교를 졸업한 가구주에 해당된다.

(iii) 끝으로 부모 중 최고 학력자의 교육연수가 10년 이상인 남성가구주 그룹

4) 초등학교라는 명칭은 최근의 명칭이고 당시의 명칭은 소학교나 국민학교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초등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조사대상이 된 가구주들의 부모세대는 교육수준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들의 평균학령은 선진국들 대부분의 평균학령과 매우 비슷하다.

은 Edu_Pa3로 표현하기로 한다. 이는 부모 중 최고학력자가 적어도 1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거나 대학교육 이상을 받은 가구주에 해당한다.

부모 및 본인의 학령에 대한 계산을 함에 있어 초등졸 6년, 중졸 9년 등의 방법을 취하였으며 중퇴자의 경우 절반만 인정하여 계산하였다[5].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조사대상이 된 가구주들의 부모세대는 교육수준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하여 조사대상자들의 평균학령은 선진국들 대부분의 평균학령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다.

1. 부모 학력과 본인 학력의 관계

본절에서는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개인의 학력이 부모의 학력에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환경적 요인의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과의 관계를 먼저 학력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래의 〈표 2〉는 노동패널자료에 나타난 35세 이상 55세 이하 남성가구주의 본인 학력과 부모의 학력의 결합분포를 한해의 자료를 대상으로 요약한 것이다.

부모의 학력 분포를 보면, 가구주 부모의 교육연수가 6~9년인 Edu_Pa2가 총 관측치 1540개의 52.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반면 Edu_Pa1(교육연수 5년 이하)과 Edu_Pa2(교육연수 10년 이상)는 그 비율이 각각 24.5%와 22.5%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주 본인의 학력 분포를 보면, 고졸이 총 관측치의 43.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비중에 있어 다음 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4년제 대학 졸업자와 중학교 졸업자로서 그 비율이 각각 21.6%와 14.2%에 이르고 있다.

〈표 2〉 부모학력 대 본인학력

본인학력 \ 부모학력	Edu_Pa1	Edu_Pa2	Edu_Pa3
무학	4	0	0
초졸	64	33	1
중졸	101	106	12
고졸	156	411	109
전문대졸	10	83	42
대졸	36	148	148
석사졸	7	27	29
박사졸	0	7	6
합계	378	815	347

5) 노동패널에 의하면 중퇴와 수료를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그 구별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국노동연구원에 이의 구별과 관련하여 전화로 문의한 바 있는데 전화 답변에 의하면 '피조사자가 대답한 그대로' 기록한 것이라 한다. 보통 수료는 교육과정을 다 마쳤지만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를 지칭하는데 (예컨대 대학원 과정을 마쳤지만 논문을 쓰지 않은 경우) 노동패널자료에 초·중·고에 대한 수료자의 숫자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대학교육 이하에서 교육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만 하지 않은 경우를 상상하기가 어려웠다. 아마도 중퇴보다는 수료라는 말을 피조사자가 덜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실제로는 중퇴하였음에도 수료하였다고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중퇴와 수료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위의 〈표 2〉로부터 부모의 학력이 주어진 경우 본인 학력의 조건부 분포를 계산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부모의 학령과 자식의 학령 간의 단순상관계수는 0.45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3〉 부모학력이 주어진 경우 본인학력의 조건부 분포

부모학력 / 본인학력	Edu_Pa1	Edu_Pa2	Edu_Pa3
중졸이하(0~9)	0.447	0.171	0.038
고졸이하(10~12)	0.413	0.504	0.314
전문대이상(13~)	0.140	0.325	0.631

〈표 3〉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 역시 고학력자일 확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교육연수가 5년 이하(Edu_Pa1)일 때 본인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일 가능성은 14.0%였으나 부모의 교육연수가 6~9년(Edu_Pa2)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 가능성은 2배가 넘는 32.5%로 커지고 부모의 교육연수가 10년 이상인 경우(Edu_Pa3)에는 그 가능성은 다시 2배 증가하여 63.1%로 커짐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령과 자식의 학령 간의 단순상관계수는 0.45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부모가 고학력일수록 자녀 또한 고학력자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너무도 당연해 보이지만 당연하기 때문에 종종 잊어버리는 중요한 사실이다. 교육수준은 개인의 소득취득능력(earnings potential)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수라는 점에서 이는 부모의 학력이라는 환경변수가 본인의 경제적 성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2. 부모 학력과 본인 소득의 관계

앞 절에서는 부모의 학력과 본인의 학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이 절에서는 부모의 학력과 본인소득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후 사용되는 남성 가구주의 소득을 분석의 편의상 가구주의 개인 근로소득(labor Income), 가구주의 총 표준소득(standard income)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총 표준소득은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가구주의 자산소득의 합으로 정의한다.

다음의 〈표 4〉는 각종 소득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4개의 기간에 대해 요약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평균소득뿐 아니라 중위소득, 지니계수, 그리고 양극화 지

고학력자의 부모를 둔 사람일수록 본인 자신의 학력도 높고 또 소득도 높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고소득자일수록 그 영향이 더욱 크다는 사실이다.

수도 함께 계산하였다.

가구주의 총 표준소득의 평균값이 가구주의 근로소득의 평균값보다 높은 이유는 전자가 자본소득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반면 동등화소득은 가구소득을 가구원 전체로 나눈 것이므로 가구원 중 비근로자가 있음을 반영하여, 가구주 개인의 근로소득보다 낮다.

그러나 어떤 소득 개념으로 파악하든 상관없이 지니계수로 추정한 불평등도 지수와 Wolfson(1994)의 방식에 따른 양극화지수는 기간중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계산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부모의 학력자료에 의한 기초통계량

소득의 종류	연도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가구주의 근로소득	관측수	3080	3080	3080	3080
	중위값	1800	1800	2088	2340
	평균	1902	2063	2233	2452
	지니계수	0.3873	0.4005	0.4046	0.3923
	양극화지수	0.2877	0.3400	0.3248	0.3059
가구주의 총 표준소득	관측수	3080	3080	3080	3080
	중위값	1800	1920	2160	2376
	평균	1958	2148	2312	2530
	지니계수	0.3925	0.4093	0.4107	0.3950
	양극화지수	0.2904	0.3262	0.3192	0.3035
가구 동등화소득	관측수	3080	3080	3080	3080
	중위값	1127	1200	1320	1455
	평균	1250	1388	1505	1660
	지니계수	0.3750	0.3983	0.3937	0.3724
	양극화지수	0.2835	0.3123	0.3092	0.2920

주: 1. 소득은 만원단위이며 연소득
2. 양극화지수는 Wolfson(1994)의 양극화 지수.

이 절의 분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의 학력이라는 환경변수가 개인의 경제적 성취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고학력자의 부모를 둔 사람일수록 본인 자신의 학력도 높고 또 소득도 높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고소득자일수록 그 영향이 더욱 크다는 사실이다. 둘째, 환경변수의 영향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은 그간의 높은 고도성장의 동력이었을 뿐 아니라 사회계급간 사회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원활히 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긍정적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최근의 기회 불평등의 심화는 이러한 과거의 패턴과 다른 형태의 소득동학(income dynamic)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기회 불평등의 심화는 이러한 과거의 패턴과 다른 형태의 소득동학이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소득획득에 대한 기회 평등화 효과

제Ⅲ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본장에서도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노동패널 자료에 나타난 35세 이상 55세 미만의 남성 가구주를 실증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환경변수로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 두 가지를 고려한다. 각각의 환경변수는 제Ⅲ장에서와 마찬가지로 3개로 나눈 후 실증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을 동시에 결합하여 전체 자료를 9개의 유형으로 세분하여 나눈 후 실증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각 유형별 표본크기가 너무 작아지는 단점이 있고, 또 9개의 유형을 가지고 기회 평등화를 위한 최적조세를 계산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력과 부모의 직업을 따로 따로 환경변수로 설정한 후 분석을 진행한다. 그리고 소득의 개념으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함께 포괄할 수 있는 가구주의 총 표준소득과 가구 동등화소득 두 가지를 고려한다.

1.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

본절에서는 제Ⅱ장에서 소개된 로머의 일반이론을 기초로 소득획득에 대한 기회의 평등이라는 보다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을 소개한다. 정확히 말하면 Roemer et al.(2003)에 사용된 모형을 한국의 실증분석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한 모형을 소개한다.

이 모형에서 개인의 유형을 결정하는 환경의 차이는 노동시간당 임금률의 차이에 반영된다고 가정한다. 정부의 정책 규칙으로는 누진세제(progressive taxation)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선형 조세함수(affine tax function)를 가정한다. 선형 조세함수는 선형인 부(負)의 소득세제(affine

기회 평등화를 달성하는 최적조세는 공리주의적 최적조세와 롤즈적 최적조세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negative income tax system)와 동일한 것이며 소득의 증가에 따라 평균세율이 증가한다는 의미에서 누진세제에 해당한다. 물론 현실의 누진세제의 법적 구조는 매우 복잡하고 나라마다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복잡성과 다양성은 많은 나라에서 선형 조세함수로 잘 근사화(approximation)될 수 있음을 많은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 의하면 이는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롤즈적 최적조세는

$$(1-t)x(w_{\min};t)+T(t,S) \qquad \text{수식 (4)}$$

를 최적화하는 조세이다. 그런데 $w_{\min}$, 즉 제일 낮은 임금률은 0이므로 롤즈적 최적조세는 결국 이전지출량을 최대화하는, 다시 말해

$$T(t,S) \equiv t\left(\frac{1-t}{\alpha(1+1/\eta)}\right)^{\eta}B-S \qquad \text{수식 (5)}$$

를 최대화하는 조세와 동일하게 되어 $t^{R}=\dfrac{1}{1+\eta}$이 된다. 간단한 비교연산을 통해 $t^{U} \le t^{EOp} \le t^{R}$이 성립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제II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회 평등화를 달성하는 최적조세는 공리주의적 최적조세와 롤즈적 최적조세의 중간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기회 평등화를 위한 최적조세율을 계산하고 나면 조세정책의 기회 평등화 지수(ν)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t^{Obs}를 현실의 자료를 이용한 관측된 한계세율이라 하고 t^{Bench}를 정부지출 중 이전지출이 0인 상태에서 정부의 예산제약식을 만족시키는 한계세율(벤치마크세율)이라 하면, t^{Bench}는 다음의 식을 만족하는 세율이다.

$$T(t,S) \equiv t\left(\frac{1-t}{\alpha(1+1/\eta)}\right)^{\eta}B-S=0 \qquad \text{수식 (6)}$$

부연하면 벤치마크세율은 이전지출이 0인 상태로, 기회 평등화를 위한 어떠한 정책도 시행하지 않고 세금은 모두 기타 서비스에만 사용되는 경우의 세율이다. $V^{Obs} \equiv V(t^{Obs},S)$를 관측세율하에서의 최불우 유형의 평균 세후소득, $V^{Bench} \equiv V(t^{Bench},S)$를 이전지출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적인 상황하의 최불

우 유형의 평균 세후소득, 그리고 $V^{EOp} \equiv V(t^{EOp}, S)$를 기회 평등화를 위한 최적조세율하에서의 최불우 유형의 평균 세후소득이라 하면 조세정책의 기회 평등화 지수(ν)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기회 평등화를 위한 재정정책은 다른 조세정책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효율성 손실을 초래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nu \equiv \frac{V^{Obs} - V^{Bench}}{V^{EOp} - V^{Bench}} \qquad \text{수식 (7)}$$

기회 평등화를 위한 재정정책은 다른 조세정책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효율성 손실(efficiency loss)을 초래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기회 평등화를 위한 효율성 손실이 얼마나 큰지도 함께 계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관측된 재정정책에서 기회 평등화 정책으로 전환할 때 전체 국민소득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두 정책 사이의 국민소득간의 비율로 다음과 같은 효율성지수를 계산할 수 있다.

$$\varepsilon \equiv \frac{\int_0^\infty x(w; t^{EOp}) dF(w)}{\int_0^\infty x(w; t^{Obs}) dF(w)} \qquad \text{수식 (8)}$$

이 식에 의할 때 $\varepsilon < 1$이라면 관측된 정책에서 기회 평등화 정책으로 이동할 때 효율성비용이 소요되고 반대로 $\varepsilon > 1$라면 관측된 정책에서 기회균등 정책으로 이동할 때 효율성 이득이 생김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overtax1과 overtax2의 경우에는 $\varepsilon > 1$이 관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모형의 추계를 위한 과정

이 절에서는 제1절에서 소개한 모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과정을 간단히 소개한다.

우선 과정을 도식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과정(1): 특정한 환경변수에 따라 개인의 유형(유형변수 θ를 정의)을 구분하고, 관심이 되는 소득의 종류를 정한다.

과정(2): 세전소득과 개인소득세, 이전지출 자료들을 활용하여 선형조세함수

국세통계연보와 국민소득계정을 이용하여 총 조세수입에서 총 이전지출을 뺀 값으로 S를 계산하였다.

를 추정하고, 관측된 한계소득세율(t^{Obs})을 구한다.

과정(3): 모형의 주요 모수에 해당하는 노동공급의 탄력성 η와 소득에 대한 여가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는 계수 α를 추정한다.

과정(4): 위에서 구한 α와 η의 추정치, 관측된 한계소득세율(t^{Obs}), 그리고 세전소득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가구주의 임금률 분포와 최불우 유형에 속하는 가구주의 임금률 분포를 구한 후, 앞에서 정의한 A와 B의 값을 계산한다.

과정(5): 노동공급의 임금률에 대한 탄력성 η와 A와 B의 값을 대입하여 기회 평등화를 위한 최적세율 t^{EOp}를 구한다.

과정(6): 정부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1인당 지출 S를 계산하여, 수식 (6)을 통해 정의되는 벤치마크세율(t^{Bench})을 계산한다.

과정(7): 위에서 구한 관측된 한계세율(t^{Obs}), 기회 평등화세율(t^{EOp}), 그리고 벤치마크세율(t^{Bench})을 적용하여, 세 가지 세율에 대응하는 최불우 유형의 세후소득의 평균값들(V^{Obs}, V^{EOp}, V^{Bench})을 구하고, 이를 수식 (7)에 대입하여 기회 평등화 지수(ν)를 계산한다.

과정(8): 끝으로 최적 세전소득 공식에 관측된 한계소득세율(t^{Obs})과 기회 평등화세율(t^{EOp})을 대입하여, 기회 평등정책의 달성을 위한 효율 비용(ε)을 수식 (8)에 따라 계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세통계연보와 국민소득계정을 이용하여 총 조세수입에서 총 이전지출을 뺀 값으로 S를 계산하였다. 이런 방식을 통해 계산한 S값의 추정치가 〈표 5〉에 요약되어 있다.

〈표 5〉 연도별 S값의 추계치

연도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S값	169.8	184.7	188.9	195.2

주: 만원 단위이며 연간 1인당 액수

3. 우리나라의 한계소득세율 추정

본절의 목적은 모형에서 가정된 선형조세함수를 노동패널의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패널에는 피조사자의 세액납부나 이전지출 급

여액수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본 연구에서 선형 조세함수를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하여 한계세율을 계산하였다.

최소자승 평균회귀법에 의한 추정결과는 한계세율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text{세후소득} = a + b^* \text{(세전소득)} \qquad \text{수식 (9)}$$

여기서 개인의 세후소득(post-fisc income)은 세전소득(pre-fisc income)에서 납부세액을 공제한 후 정부로부터 받은 각종 보조금과 이전지출을 더한 값이므로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y = (1-t)x + T$이 된다. 따라서 위의 수식을 통하여 추계된 상수 a는 보조금(T)의 추정치에 해당하며 기울기 계수 b는 (1-t)의 추정치가 된다. 본절에서는 2001년~2005년까지의 노동패널자료를 (i)전체, (ii)임금근로자, (iii) 비임금근로자의 세 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후 각 그룹별로 표준소득에 대해 한계세율을 추정해 보았다. 또 연금보험료를 포함했을 때의 추정뿐 아니라 제외한 상태에서의 추정도 함께 해 보았다.

먼저 조세에서 연금보험료를 제외하고 전체 자료(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 모두를 포함)에 대해 최소자승 평균회귀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 기간에 걸쳐 표준소득의 한계세율이 29~39%, 동등화소득의 한계세율은 26~33%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간별로 그 편차가 크다. 이를 다시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 살펴보아도 임금근로자는 표준 및 동등화소득의 한계세율이 각각 19~39%, 13~36%로,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 27~40%, 30~35%로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한계세율이 25~27%정도인데 우리나라의 추정 한계세율이 더 높게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한계세율이 미국의 한계세율보다 높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를 조세에 연금보험료를 포함한 결과와 비교하더라도 전체,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의 표준소득의 한계세율이 대략 2%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최소자승 평균회귀법에 의한 추정결과는 한계세율을 비현실적으로 높게 계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정 한계세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가 이상치(outlier)의 존재로 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자료에 대하여 2004/2005년의 세전 및 세후의 표준소득과 동등화소득에 대한 산점도(scatter plot)를 그려본 결과 모두 1억원 미만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1억원 이상의 소득 중 몇몇 자료가 회귀선의 기울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최소자승 평균회귀법을 이용한 추정결과는 소득분포의 이상치(outlier) 존재로 인해 소득격차가 커져 추정 결과가 다소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다. 중위 회귀법을 이용한 표

추측하건대 한국의 실제 한계세율은 통계청 가계조사자료에 의한 추정치보다는 높고 노동패널에 의한 추정치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준소득에 대한 추정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한계세율의 규모는 최소자승 평균회귀법에 의해 얻어진 결과에 비해 더 작고 기간별로 편차도 작게 나타나고 있다. 중위회귀법을 이용했을 때의 표준소득의 한계세율은 전체의 경우 조세에 연금보험료 포함 여부에 관계없이 17~22%이며,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 14~22%, 21~30%로 나타났다. 또한 동등화소득의 경우에는 표준화소득의 추정 한계세율보다 평균적으로 약 1~2%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 추정치 역시 여전히 높다고 생각되지만 최소자승 평균회귀법에 의한 추정치보다는 이상치로 인한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본 보고서에서는 중위회귀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선형조세함수를 관측된 조세함수로 사용한다.

〈표 6〉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에 의한 추정결과: 근로자 가구

연도	t	T (만원)	관측수
2001/02	0.120	175.22	3824
2002/03	0.121	185.40	4549
2003/04	0.129	207.01	5579
2004/05	0.135	233.84	5319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계조사자료에 의한 한계세율은 12~13.5%이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어떤 자료에 의한 추계가 현실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추측하건대 한국의 실제 한계세율은 통계청 가계조사자료에 의한 추정치보다는 높고 노동패널에 의한 추정치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4. 부모의 학력을 환경변수로 정의할 경우의 기회 평등화 효과

본절에서는 부모의 학력을 환경변수로 설정했을 때의 기회 평등화를 위한 최적세율을 표준소득에 기초하여 계산한다. 이 절에서는 제Ⅲ장 제1절의 정의를 이용하여, 환경의 차이에 따른 유형을 Edu_Pa1, Edu_Pa2, Edu_Pa3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부모의 교육수준을 환경변수로 사용하고 표준소득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본 장의 제2절에서 설명한 방식에 의해 구한 α, A, B에 관한 기간별 추정결과는 최불우 유형의 평균소득은 전체 평균소득의 79~85%이며, 이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면, 기회 평등화를 위한 최적세율과 벤치마크세율을, 그리고 기회 평등화 지수나 효율비용을 모두 계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계산 결과가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표에서 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기회 평등화를 위한 세율과 관측된 세율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대로 기회 평등화세율은 노동공급의 탄력성의 추정치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이 때문에 기회 평등화를 위한 세율과 관측된 세율 간의 격차도 탄력성 값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있어 그 격차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예컨대 η=0.06를 가정할 경우 관측된 한계세율은 17~20.6%임에 비해 기회를 평등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율은 63~73%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기회 평등화를 위한 세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회의 불평등이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한다.

〈표 7〉 한국의 기회 평등화세율: 환경=부모학력, 소득=표준소득

η=0.03 인 경우				
year	t^{Obs}	t^{EOp}	t^{Bench}	ν
2001/02	0.170	0.8073	0.0865	0.1564
2002/03	0.185	0.8093	0.0857	0.1844
2003/04	0.212	0.8510	0.0813	0.2190
2004/05	0.206	0.8602	0.0768	0.2109
η=0.06 인 경우				
year	t^{Obs}	t^{EOp}	t^{Bench}	ν
2001/02	0.170	0.6256	0.0862	0.2359
2002/03	0.185	0.6293	0.0854	0.2755
2003/04	0.212	0.7105	0.0810	0.2979
2004/05	0.206	0.7283	0.0765	0.2819
η=0.09 인 경우				
year	t^{Obs}	t^{EOp}	t^{Bench}	ν
2001/02	0.170	0.4538	0.0860	0.3659
2002/03	0.185	0.4593	0.0851	0.4204
2003/04	0.212	0.5777	0.0806	0.3992
2004/05	0.206	0.6036	0.0761	0.3698

물론 여기서 계산된 최적세율은 기회를 평등화하기 위한 최적세율이므로 현실에서 이 세율을 적용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회 평등화를 위한 세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회의 불평등이 그만큼 심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제Ⅲ장에서 관찰한 기본적인 실증결과들과 합치하

기회 평등화를 위한 세율이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는 것이다.

둘째, 기회 평등화를 위한 세율이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관측된 한계세율이 벤치마크세율과의 차이가 매우 적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에서 조세수입은 기타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만 사용되었을 뿐 기회를 평등화하는 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Roemer et al.(2003)의 분석의 결과들과 비교한 것이 다음 〈표 8〉이다. 부모의 학력을 환경변수로 설정하고 총 표준소득 개념을 이용하여 Roemer et al.(2003)이 η=0.06으로 전제하고 계산한 10개 선진국의 추계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비교를 위하여 한국의 2004/2005년의 추계결과를 함께 요약하였다.

〈표 8〉 선진국들과의 비교: 환경=부모학력, 소득=표준소득

국가	t^{Obs}	t^{EOp}	t^{Bench}	ν	ε
스페인 (1991)	0.376	0.605	0.080	0.748	0.973
이탈리아 (1993)	0.232	0.819	0.156	0.160	0.920
미국 (1991)	0.243	0.647	0.182	0.200	0.955
영국 (1991)	NA	NA	NA	NA	NA
벨기에 (1992)	0.531	0.535	0.316	0.999	0.999
네덜란드 (1995)	0.533	0.474	0.253	overtax1	1.007
서독 (1994)	0.364	0	0.225	overtax2	1.028
스웨덴 (1991)	0.524	0	0.203	overtax2	1.046
덴마크 (1993)	0.440	0	0.225	overtax2	1.035
노르웨이 (1995)	0.393	0	0.258	overtax2	1.030
한국 (2004/05)	0.206	0.728	0.077	0.282	0.938

주: 나라이름 옆의 괄호 안 수자는 추계연도를 나타냄.
출처: Roemer et al. (2003) Table 4, p. 555.

표에 요약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기회 평등화세율은 이들 5개국 중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있으나, 이들 나라의 관찰된 세율은 한국보다 높다. 스페인의 경우 벤치마크세율은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슷하나 관측된 한계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점에서 우리보다 적극적으로 분배를 위한 조세정책을 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이나 이탈리아는 관측된 세율과 벤치마크세율의 차이가 작은데, 이는 이 나라들에서 조세재정정책이 기회를 평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둘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와 서독의 경우에는 기회 평등화세율이 0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 나라에서는 100여년의 복지의 역사를 통해 이미 환경의 영향이 개인의 성취에 주는 영향이 매우 작아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셋째,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관찰된 세율과 기회 평등화를 위한 세율이 근접하고 있다. 넷째, 이 표를 통해 현실의 재분배 세율의 수준은 그 나라의 기회가 얼마나 평등한가 또 그 나라의 조세재정정책이 기회를 평등화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가 등을 나타내는 척도로는 매우 부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관측세율의 절대수준만으로 그 나라의 기회 평등화를 위한 정책적 의지를 판단하면 서독보다 스페인을 기회 평등화의 관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서독에서는 이미 기회의 평등이 충분히 달성되어 더 이상의 기회의 평등을 위한 재분배정책이 필요없는 것이고 스페인은 이와 반대로 기회의 불평등이 너무도 극심하여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관측세율보다 2배 가량 높은 세율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결과의 불평등도와는 달리 기회의 불평등도는 결코 낮지 않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정책적 시사점

많은 기존의 연구들이 보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소득 불평등도(즉, 최종 결과에 있어서의 불평등도)는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은 조심스럽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결과에 있어서의 불평등도가 높고 낮음은 기회에 있어서의 불평등도와는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결과의 불평등도와는 달리 기회의 불평등도는 결코 낮지 않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본 분석도 몇 가지 점에서 조심스럽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문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기회의 평등을 위한 세율은 어떤 장기적 정책목표로서의 최적조세율이다. 단 한 번의 추정결과를 놓고 현실에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솔한 주장일 것이다. 둘째, 본고는 매우 단순한 모형하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소비세가 갖는 효과를 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본고의 단순한 모형이 복잡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경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상의 몇 가지 유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분석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들을 갖는다. 첫째, 모형을 단순화한 이유는 Roemer et al.(2003)에 계산된 다른 나라들에서의 결과들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지 더

환경에 의한 불평등 부분은 상대적으로 큼에도 전체적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이 작았음을 의미한다.

복잡한 모형하에서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해서가 아니다. 혹자는 Roemer et al.(2003)에 보고된 '선진국들'과 우리 사회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지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수준은 최소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와는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더 앞서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한국은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다. 둘째, 본고의 추정은 단순한 모형을 전제로 했지만 매우 보수적인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때문에 추계에서 관측세율은 과대평가되고 기회 평등화세율은 과소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관측세율이 과대평가되었을 이유는 세액의 귀속계산 과정에서 실제납부액에 대한 과대평가와 실제 받은 이전지출이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의 관측된 한계세율이 미국 수준에 근접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기회 평등화세율이 과소평가되었을 첫 번째 이유로는 환경변수를 하나씩 따로따로 설정하고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력의 차이라고 간주하였던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환경들의 영향을 반영한 차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환경변수를 많이 설정하면 기회 평등화세율은 더 높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소득획득을 위한 기회의 평등만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교육기회의 불평등이나 부의 불평등에 비하면 소득의 불평등은 그리 크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만일 자산획득의 기회 평등화를 위한 세율을 계산하였다면 그 세율은 소득획득을 위한 세율보다 훨씬 높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결과의 불평등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불평등이 높은 현상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 불평등을 환경에 의한 불평등 부분과 개인의 노력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으로 나누어 볼 때, 환경에 의한 불평등 부분은 상대적으로 큼에도 전체적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이 작았음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를 마치기 전에 본 연구가 갖는 몇 가지 한계점이나 미흡한 점들을 언급하고 싶다. 첫째, 본 보고서에서 기회 평등화를 위한 최적조세율을 계산하여 한국사회의 기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큰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는데 관찰된 불평등을 기회의 불평등에 의한 부분과 노력에 의한 부분으로 분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진 못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량경제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야 하는데 필자들의 지식 부족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둘째, 한국의 경우 소비세의 비중이 높은데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다. 물론 그 이유는 Roemer et al.(2003)에서 얻어진 결과들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아쉬움

이 남는다. 이러한 아쉬움과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이 앞으로의 후속연구들에 하나의 준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KIPF

<참고문헌>

박기백 · 성명재 · 김종면 · 김진, 『사회분야 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6.

성명재, 『조세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2.

Aaberge, R., U. Colombino, and J. Roemer. 2001. "Equality of opportunity versus equality of outcome in evaluating income redistribution policies: Empirical evidence based on Italian data," mimeo.

Mirrlees, J., "An exploration in the theory of optimal income tax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38: 175–208, 1971.

Mirrlees. J., "Optimal tax theory: A synthe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 327–358, 1976.

Mirrlees. J., "The theory of optimal taxation," in K. Arrow and M. Intrilligator eds. *Handbook of Mathematical Economics*, Amsterdam, Netherlands: North– Holland, 1986.

Page, M. and J. Roemer, "The US fiscal system as an equal opportunity device," in Kevin Hasset and R. Hubbard eds. *The Role of Inequality in Tax Policy*, Washington, DC: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2001.

Roemer, J., "A pragmatic theory of responsibility for the egalitarian planner,"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0: 146–166, 1993.

_____, *Egalitarian Perspectives: Essays in Philosophical Economics*,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_____,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_____, *Equality of Opportunit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Roemer, J. et al., "To what extent do fiscal regimes equalize opportunities for income acquisition among citizen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7: 539-565, 2003.

World Bank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 *Measuring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Latin America and Caribbean*, Volume 1: Main Report. Washington, DC: WorldBank, 2008.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송호신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hsong@kipf.re.kr)

Ⅰ. 서론

일반적으로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이란 사회복지 관련 지출을 가리킨다. 그러나 실제로 어디까지를 범주로 하느냐는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인 차이점을 통제하고 국가간 비교 연구를 위해서 OECD는 사회지출 데이터베이스(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를 개발하였다. OECD가 정의한 사회지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회지출이란 개인이나 가계의 후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공공 및 민간기구에 의한 급여(benefits) 또는 금전적 도움의 제공이다. 다만, 그러한 제공은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불에 의하거나 또는 개개인간의 계약 및 이전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1)]

OECD에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는 사회지출은 다음의 9개의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Old-age, Surviors, Incapacity-related benefits, Health, Family,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Unemployment, Housing, Other social policy areas이다. "Old-age" 항목은 연금, 조기 은퇴 연금, 노인들에 대한 가사 도움 및 주택 서비스 등에 대한 사회지출, "Survivors" 항목은 예비군 연금 및 장례비용 등의 사회지출, "Incapacity-related benefits" 항목은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장애인 수당, 산재로 인한 수당, 종업원 병가 수당 등에 대한 사

사회지출이란 개인이나 가계의 후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제공되는 공공 및 사적 급여(benefits) 또는 금전적 도움의 제공이다. 다만, 그러한 제공은 특정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지불에 의하거나 또는 개개인간의 계약 및 이전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1) The OECD defines social expenditure as : "The provision by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of benefits to, and financial contributions targeted at, households and individuals in order to provide support during circumstances which adversely affect their welfare, provided that the provision of the benefits and financial contributions constitutes neither a direct payment for a particular good or service nor an individual contract or transfer."

우리나라의 경우 "Old Age", "Survivors", "Incapacity", "Health" 등 모든 항목에 있어서 OECD 평균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으로 볼 경우 사회지출 중 가장 큰 구성을 차지하는 항목은 연금 등이 중심이 되는 "Old Age"인 데 반하여 우리는 건강보험 등이 중심인 "Health"가 가장 큰 구성 항목이라는 점이다.

회지출, "Health" 항목은 입원 및 외래 환자에 진료, 의료용품, 예방 등에 대한 사회지출, "Family" 항목은 자녀수당, 자녀 돌봄 지원, 휴가시 소득 지원, 편부모 수당 등의 사회지출,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항목은 고용 서비스, 직업훈련, 장애인에 대한 고용정책 등과 관련된 사회지출, "Unemployment" 항목은 실업수당, 퇴직금, 노동시장 상황으로 인한 조기 퇴직금 등과 관련된 사회지출, "Housing" 항목은 주택 공제(housing allowances) 및 임대료 보조금 등과 관련된 사회지출을 포함하며, 마지막으로 "Other social policy areas" 항목은 저소득층에 대한 비정규 현금 급여(non-categorical cash benefits), 식량 보조와 같은 여타 구호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회지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Old Age", "Survivors", "Incapacity", "Health" 등 모든 항목에 있어서 OECD 평균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OECD 국가들 평균 수준으로 볼 경우 사회지출 중 가장 큰 구성을 차지하는 항목은 연금 등이 중심이 되는 "Old Age"인 데 반하여 우리는 건강보험 등이 중심인 "Health"가 가장 큰 구성 항목이라는 점이다. 이는 우리의 국민연금이 아직 충분한 성숙단계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Health"의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지출 증가가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매우 빠르게 증가한 반면, OECD 국가들의 경우 2001년 이후 건강 관련 사회지출이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1] 항목별 OECD 사회지출 평균과 한국

(단위: GDP대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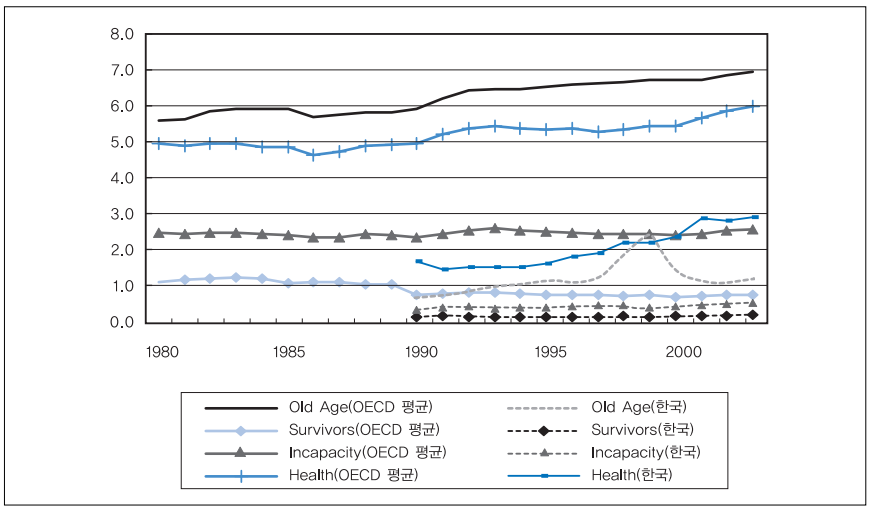

또한 "Family",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Unemployment" 부문의 사회지출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OECD 기준에 부합하는 "Housing" 관련 사회지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에 대한 현금 급여 등이 중심이 되는 "Others" 항목은 2001년 이후 거의 OECD 평균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현금 급여 등이 중심이 되는 "Others" 항목은 2001년 이후 거의 OECD 평균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항목별 OECD 사회지출 평균과 한국

(단위: GDP대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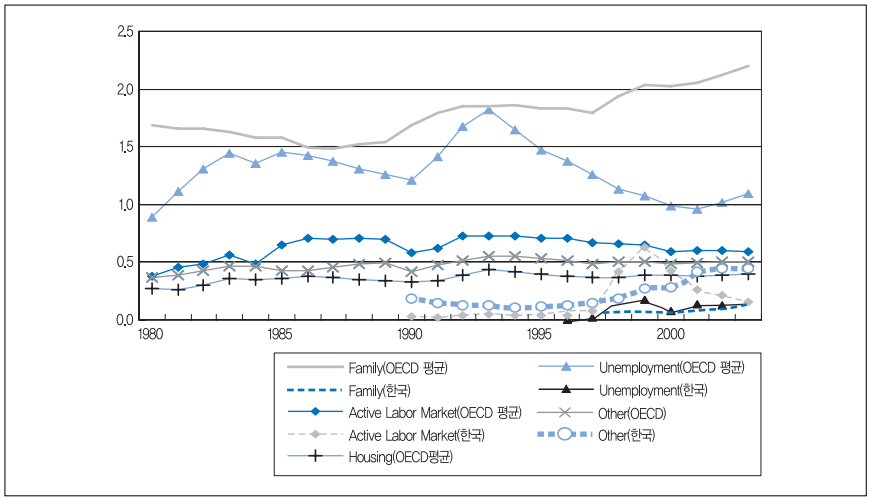

사회지출의 주체에 따라 공공 사회지출과 민간 사회지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같은 북부 유럽국가들은 공공 사회지출이 사회지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미국, 영국 등은 민간 사회지출이 전체 사회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전체 사회지출은 1980년 GDP 대비 18.7%에서 2003년 24.0%로 약 5.3%p 증가하였는데 그 중 공공 사회지출은 17.4%에서 20.9%로 3.5%p 증가한 반면 민간 사회지출은 1.5%에서 3.1%로 약 1.6%p 증가하여 공공 사회지출이 전체 사회지출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GDP와 1인당 사회지출을 각각 OECD 평균과 비교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OECD 평균 수준에 수렴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1인당 사회지출은 일정한 격차를 유지한 채 평행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 OECD 국가들 사회지출 추이

(단위: %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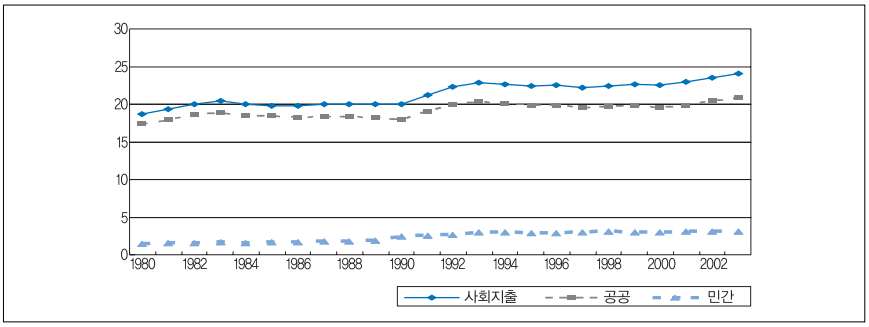

OECD 국가들의 사회지출 규모의 추이는 전체적으로 계단형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1970년 이후 약 두 차례의 점프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는 오일쇼크 직후인 1979년대 중반에, 두 번째는 1990년대 초반에 일어났다. 이후 2000년대 초반에 들어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4] OECD 평균 사회지출 및 1인당 GDP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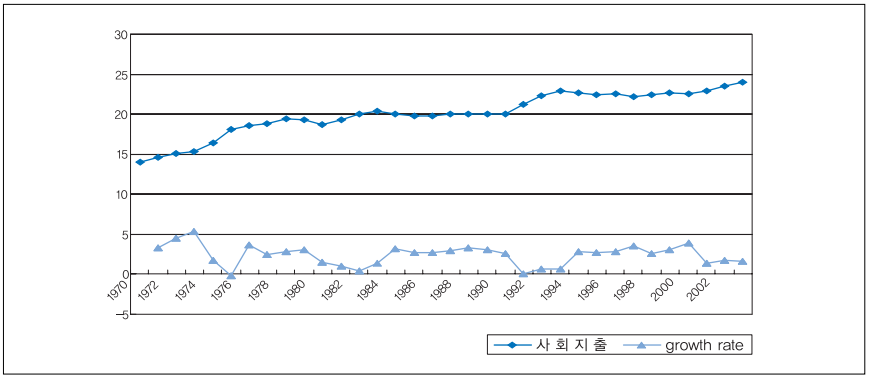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1인당 GDP와 1인당 사회지출을 각각 OECD 평균과 비교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OECD 평균 수준에 수렴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1인당 사회지출은 일정한 격차를 유지한 채 평행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경우, 우리 경제의 사회지출 규모는 1인당 소득에 비해 OECD국가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OECD 평균 1인당 GDP 및 1인당 사회지출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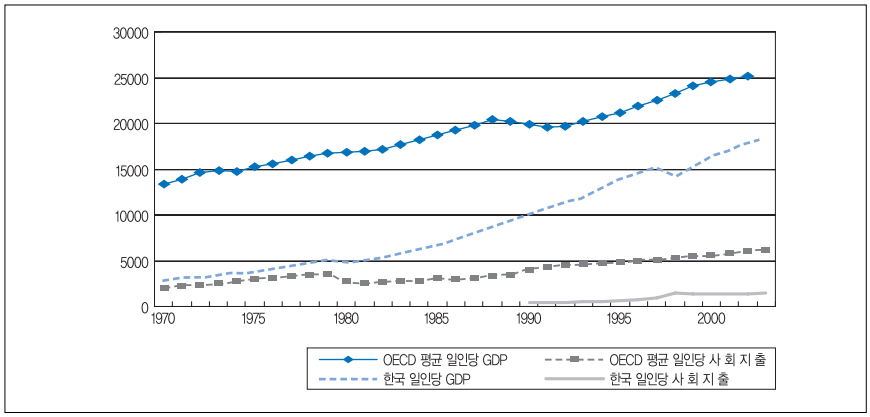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크게 두 가지 경로인데 이는 사회지출이 자본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과 사회지출이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논리이다.

이하에서는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하여 논의하고 OECD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Ⅱ.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1.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크게 두 가지 경로인데 이는 사회지출이 자본시장의 실패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과 사회지출이 사회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논리이다. 일반적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인적 · 물적 자본에 대한 원활한 투자를 저해하는 일종의 자본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데 사회지출을 통한 재분배정책을 통해 그러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전자의 논리이다. 후자의 논리는 Perotti (1996), Alesina와 Perotti(1996) 등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소득분배의 격차가 커지면 계층간 불화와 반목이 심화되고 사회불안을 야기해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사회지출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원만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한편 Garcia-Penalosa 및 Wen (2004)에 따르면 사회지출을 통한 사회안전망 제공은 경제주체들의 위험부담을 줄여주어 혁신활동의 유인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회지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논리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높은 한계세율과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보장이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성장과 고용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지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논리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높은 한계세율과 지나치게 관대한 사회보장이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저해하고 성장과 고용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Persson 및 Tabellini (1994), Alesina 및 Rodrick (1994)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이론들은 주로 급부제도(benefit system)가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경제내 노동공급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 실증분석의 어려움

본고에서는 OECD 국가들에 있어서 사회지출이 대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작용해 왔는가에 대해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은 계량경제학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일단,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을 식별가능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묘사하는 적절한 이론 모델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한 적절한 이론이 없기 때문에 잘 알려진 경제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을 추정하는 시도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시도로는 Arjona, Ladaique and Pearson (2001) (이하 ALP(2002))가 있다. 그들은 Mankiw, Romer 및 Weil (1992) (이하 MRW(1992))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인구증가율, 투자율 및 인적자본을 이용한 점에 착안하여, 그 세 변수를 기본 설명변수로 하고 그 외에 소득분배 관련 변수와 사회지출 관련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경제성장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주는 요인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어려운 것과 같이, 추가적인 설명 변수로서 사회지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도 그리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 세 요인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다른 요인들이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생략된 변수들에 따른 모수의 추정값에 편의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기본 설명변수 이외에 새로운 설명변수로서 사회지출을 추가하는 경우, 사회지출과 기본 설명변수 간의 상관관계 등으로 기본 설명변수가 유의하게 추정되지 못하는 점도 실증분석의 또 다른 어려움이 된다. 게다가 사회지출과 경제성장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동시성(simultaneity)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생성(endogeneity)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을 높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진한 경제성장이 높은 사회지출을 유도할 수도 있는 동시성(simultaneity)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는 추정 방식이 필요하다.

3.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OECD 국가를 중심으로

Mankiw, Romer and Weil(1992)는 물적자본뿐만이 아니라 인적자본도 포함한 확장된 Solow 모형을 통해 국가별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하에서는 OECD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2]. 본고에서는 데이터 이용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자 한다. 하나는 연간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기변동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전체 기간을 4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 기간별 평균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행하는 것이다. 먼저 연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Mankiw, Romer and Weil(1992) (이하 MRW(1992)) 방식을 패널데이터로 확장하는 방법과 Pesaran, Shin 및 Smith (1999) (이하 PSS (1999))이 제안한 Pooled Mean Group (PMG) 추정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4개의 기간별 평균데이터를 이용하여 사회지출의 효과를 추정한 후 각 결과를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가. Mankiw, Romer 및 Weil (1992)의 패널분석으로의 확장

Mankiw, Romer and Weil(1992) (이하 MRW(1992))는 물적자본(physical capital)뿐만이 아니라 인적자본(hunan capital)도 포함한 확장된 Solow 모형(augmented Solow model)을 통해 국가별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1985년 국가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1인당 로그 GDP를 투자율의 로그값, 인구증가율 로그값, 로그 학령을 이용하여 단순 OLS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하에서는 경제성장 회귀분석의 이론적인 모형으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MRW(1992)의 방법을 패널분석으로 확대 적용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MRW(1992)에서 도출한 균형 성장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축약형 행태식을 설정할 수 있다.

$$\ln y_{i,t} = \alpha + x_{i,t}{}'\beta + c_i + \epsilon_{i,t}$$

여기서 $y_{i,t}$는 1인당 소득을, $x_{i,t}$는 1인당 소득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의미하며, c_i는 고정효과 패널 모형에서 가정하는 관측되지 않는 변수이다. MRW(1992)가 제시한 기본 설명변수($x_{i,t}$)는 투자율 로그값, 인적자본 로그값, 인구증가율 로그값이다.

2) 데이터의 출처에 관해서는 부록을 참조하라.

조정 사회지출을 추가한 경우에는 사회지출이 1인당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음수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OECD 국가들의 패널 데이터를 이용해 얻은 추정결과인 아래의 〈표 1〉을 보면, 기본 설명변수만을 이용한 경우에 MRW(1992) 결과와 양립하는 추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기본변수에 사회지출을 단순히 추가한 경우에는 의미있는 양의 계수를 얻은 반면 기본 설명변수들의 부호가 MRW(1992)와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조정 사회지출을 추가한 경우에는 사회지출이 1인당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음수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서 조정 사회지출이란 사회지출을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기본변수들에 선형투영하여 얻은 잔차(residual)인데 이는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기본 변수인 투자율, 인적자본 및 인구증가와 상관관계가 높은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표 1〉 MRW(1992)방법의 OECD 패널 데이터 적용시 추정결과(고정효과)

	기본변수	기본변수 +단순사회지출	기본변수 + 조정사회지출
상수	6.445 (0.1273)	6.7710 (0.1306)	6.3880 (0.1339)
$\ln(I/GDP)$	0.0384 (0.0196)	-0.0159 (0.0171)	0.0057 (0.0184)
$1n(h)$	1.4851 *** (0.0469)	1.1734 *** (0.0575)	1.5117 *** (0.0509)
$1n(n)$	-2.2296 ** (1.2184)	-1.1066 (1.2222)	-2.2429 (1.4763)
$(SOCX/GDP)$	– ***	0.0149 *** (0.0015)	-0.0006 *** (0.0017)
No. of countries	26 *	26	26 *
No. of observations	759	690	690
R^2	0.891	0.883 ***	0.865

주: 1. Standard errors are in brackets.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및 10%에서 유의미한 추정값
2. $n_{i,t}$는 조증가율(gross growth rate)을 이용하였다.

나. Pooled Mean Group 추정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본절에서는 회귀식에 동질성(homogeneity)를 부여하는 패널회귀 분석을 떠나서 장기적으로는 OECD 국가들간의 동질성을 가지면서 단기적으로 개별 국가간 이질성을 허용하는 Pesaran, Shin 및 Smith (1999) (이하 PSS)이 제안한 PMG(Pooled Mean Group)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MRW(1992)에서 제시한 경제성장의 기본 설명변수가 실물자본투자율(s), 인적자본(h), 인구증가율(n)임을 감안하면 사회지출 등 기타 설명변수들(Ω)을 추가할 경우의 축약식은 장단기관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3].

$$\Delta 1n(y_{i,t}) = -\phi_i \Big[1n(y_{i,t-1}) - \theta_1 1n(n_{i,t}) - \theta_2 1n(s_{i,t}) - \theta_3 1n(h_{i,t}) - \sum_{m=4}^{K} \theta_m \Omega_{m_{i,t}} - \theta_{K+1} t - \theta_{0,i} \Big] + b_{1,i} \Delta\, 1n(n_{i,t}) + b_{2,i} \Delta\, 1n(s_{i,t}) + b_{3,i} \Delta\, 1n(h_{i,t}) + \sum_{m=4}^{K} b_{m,i} \Delta\, \Omega_{m_{i,t}} + \epsilon_{i,t}$$

여기에서 계수 a는 장기관계(long-run relationship)를 반영하며 계수 b는 단기 동학(short-run dynamics)을 반영한다.

Pesaran, Shin 및 Smith (1999)가 제안한 것과 같이 추정방식으로 최우추정법(MLE)를 사용하기 위해서 교란항 $\epsilon_{i,t}$이 정규분포 $N(0, \sigma_i^2)$를 따른다고 가정한다[4]. PMG 추정방식에 따른 결과의 해석은 이전 MRW(1992)와 비슷하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OECD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장기 관계식은 로그 1인당 GDP와 기본 설명변수 및 추가 설명변수들의 관계를 보여준다. 기본 설명변수만을 고려한 추정결과는 MRW(1992)가 시사하는 바와 같은 부호의 추정계수값을 보여주고 있다[5].

그러나 PMG의 추정방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설명변수를 추가할 때, 기존의 기본 설병면수의 측정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는 여전하였다.

장기 계수들의 추정값은 다음의 〈표 2〉에 잘 나와 있다. 이는 로그 1인당 GDP 수준과 GDP 결정요인들이 갖는 장기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사회지출은 로그 1인당 GDP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성장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MG 추정방식에 따른 결과의 해석은 이전 MRW(1992)와 비슷하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OECD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장기 관계식은 로그 1인당 GDP와 기본 설명변수 및 추가 설명변수들의 관계를 보여준다.

3) 이에 관한 도출 과정은 부록을 참조하라.
4) 추정에 이용된 집중 우도함수(concentrated likelihood function)는 PSS(1999)의 식 (3.8)에 잘 정의되어 있다. 또한 추정에 사용된 algorithm도 PSS(1999) 제안한 방법인 "back-substitution"을 사용하였다.
5) 단 인적자본의 경우,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회지출은 로그 1인당 GDP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성장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대한 단기적 효과는 세 번째 및 네 번째 설정식의 추정결과 중 단기 계수의 추정값에 반영되는데 OECD 국가 평균적으로 사회지출이 1%p 증가하는 경우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약 0.1%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 번째 및 네 번째 설정식을 이용하여 추정할 경우 각각 0.05%p 및 0.13%p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

〈표 2〉 연간 데이터를 이용한 Pooled Mean Group Estimation 결과

	기본 설명변수	+조세	+사회지출	+조세 +사회지출
장기 계수				
$1n(n_{i,t})$	-24.661*** (7.9825)	49.989*** (8.3177)	4.7031* (2.6750)	16.8870*** (5.4957)
$\ln(I/GDP)_{i,t}$	0.0983*** (0.0301)	-0.0012 (0.0.0473)	-0.0320 (0.0258)	-0.1415*** (0.0380)
$1n(h_{i,t})$	0.2064 (0.3656)	1.8009*** (0.3676)	-0.9302** (0.3960)	1.9811*** (0.4715)
$(T/GDP)_{i,t}$	–	-0.0643 (0.5090)	–	0.3868 (0.6730)
$(SOCX/GDP)_{i,t}$	–	–	-2.8363*** (0.4332)	-2.9371*** (0.5723)
time	0.0326*** (0.0045)	0.0484*** (0.0033)	0.0537*** (0.0052)	0.0401*** (0.0037)
상수	-54.9820*** (7.9808)	-91.824*** (6.361)	-94.5790*** (9.4009)	-75.2720*** (6.8189)
No. of countries	23			
No. of observations	486			

주: 1. Standard errors are in brackets.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및 10%에서 유의미한 추정값
2. $n_{i,t}$는 조증가율(gross growth rate)을 이용하였다.
3. 조정속도를 나타내는 ϕ_i 및 단기계수 b_i는 국가별 추정결과로 많은 지면을 차지하여 셋째 및 넷째 경우에 한하여 부록에 실었다.

6) 사회지출의 단기효과 계수의 t값의 절대값이 1.3을 넘는 국가는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미국뿐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통상적인 유의수준에서 의미있는 추정값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사회지출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주는 단기적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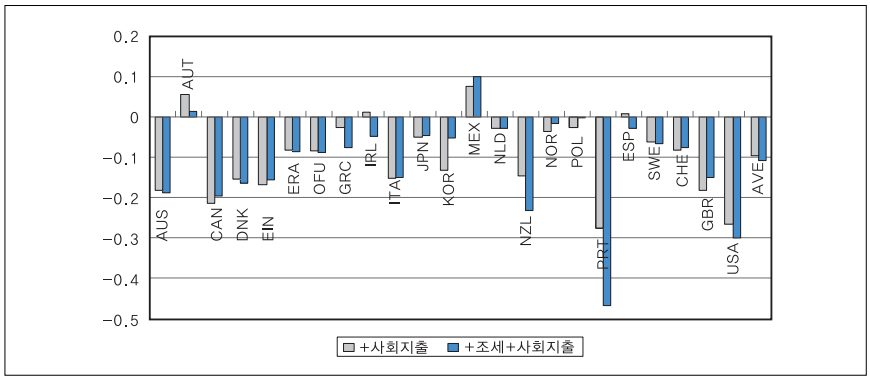

사회지출을 연금, 보건, 실업급여 및 여타 사회지출로 구분하여 설명변수로 활용한 경우는 실업급여와 여타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 기간별 평균 데이터를 이용한 고정효과 패널 회귀분석

Casseli, Esquivel 및 Lefort (1996) (이하 CEL(1996)이 언급한 경제성장에 관한 실증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축약형을 기간별로 평균을 취해 경기변동 효과를 제거하면 다음과 같은 축약식을 설정할 수 있다[7].

$$\Delta \ln y_{i,t} = \beta \ln y_{i,t-1} + W_{i,t-1}\delta + \eta_i + \epsilon_{i,t}$$

여기서 η_i는 고정효과 패널분석에서의 관측되지 않는 변수이다. 한편 경제성장 결정요인으로는 MRW(1992)에서 제시한 투자율, 인적자본 및 인구증가율에 국민부담률 및 사회지출을 고려하였다. 또한 사회지출을 연금, 보건, 실업급여 및 여타 사회지출로 구분하여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추정결과 MRW(1992)의 기본 설명변수인 로그 투자율, 로그 인적자본, 로그 인구증가율이 의미있게 추정되지 못하였다.

한편, 사회지출을 연금, 보건, 실업급여 및 여타 사회지출로 구분하여 설명변수로 활용한 경우는 실업급여와 여타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8].

7) 기간 구분은 1970~1979년(기간 1), 1980~1987년(기간 2), 1988~1995년(기간 3), 1996~2003년(기간 4)로 구분하였다.
8) 자세한 추정결과는 부록을 참조하라.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효과를 MRW(1992)방법, PMG 추정방식, 기간별 평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3〉 기간 평균 데이터를 이용한 고정효과 패널 회귀 추정 결과

	기본 변수
상수	0.1758 (0.1080)
$\ln(y_{i,t-1})$, catch-up	-0.0272* (0.0153)
$\ln(I/GDP)_{i,t-1}$	-0.0026 (0.0073)
$1n(h_{i,t-1})$	0.0485* (0.0293)
$1n(n_{i,t-1})$	-0.5625 (0.4662)
No. of countries	24
No. of observations	67
R^2	0.679

주: 1. Standard errors are in brackets.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및 10%에서 유의미한 추정값
2. $n_{i,t}$는 조증가율(gross growth rate)을 이용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효과를 세 가지 방식으로 추정해 보았다. 기본적인 추정방법은 MRW(1992)에서 제시한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기본변수(로그 투자율, 로그 인적자본, 로그 인구증가율)에 사회지출 등 여타 설명변수를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먼저 MRW(1992) 방법을 OECD 국가 패널자료에 적용한 결과 기본 설명변수들만 이용한 경우 추정값들은 모두 MRW(1992)와 동일한 부호를 유의미하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지출 변수를 추가하는 경우 추정 결과는 안정적이지 못하게 나왔다. 이는 기존 기본 설명변수와 사회지출 사이의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방식은 PSS(1999)가 제안한 PMG 추정방식을 적용한 경우이다. PMG 추정방식의 기본 가정은 OECD국가들간에 장기적으로 동질적인 관계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상호 이질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PMG 추정방식은 최우추정법(MLE)을 이용하며, 각국의 교란항이 서로 다른 분산을 갖는 것을 허용하면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설

명변수 추가시 기존 변수에 대한 추정 결과의 안정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최우추정법(MLE)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란항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 참인 경우 원칙적으로 내생성 문제에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세 번째 방식인 기간별 평균을 이용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가장 약점이 많은 방식으로 생각된다. 먼저, 교란항이 자기상관(autocorrelaton)을 가질 경우 LS를 적용하는 경우 편의가 생길 수밖에 없다[9]. 또한 $W_{i,t-1}$에 포함되는 변수들 중 사회지출과 같은 변수는 전기의 소득($y_{i,t-1}$)에 긴밀하게 영향을 주는 동시에 영향을 받으므로 근본적으로 내생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지출을 잘 반영하는 도구변수를 발견하고 이용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10].

본고에서 시도한 세 가지 추정방식의 결과를 종합하면, 적어도 OECD 국가들의 경우,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서 인구, 투자, 인적자본 외에 추가적으로 사회지출을 손꼽기에는 실증적인 결과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큰 것으로 여겨지는 요인인 투자, 인적자본, 인구와 같은 설명변수에 비해 사회지출의 추가적인 효과는 본고의 추정결과 일률적인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첫 번째 및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한 결과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효과는 의미 있는 수준에서 양 또는 음의 값을 얻을 수 없었다. 반면, 두 번째 방식을 이용한 결과, 사회지출은 의미있는 수준에서 음수의 결과를 얻었으나 기본 설명변수인 투자율과 인구증가율의 추정값이 반대로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는 동시에 기본 설명변수에 사회지출이라는 설명변수를 추가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을 더욱 엄밀하게 다루는 이론 모형의 개발과 그에 기반한 추정방법의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도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KiPF

OECD 국가들의 경우,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으로서 인구, 투자, 인적자본 외에 추가적으로 사회지출을 손꼽기에는 실증적인 결과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큰 것으로 여겨지는 요인인 투자, 인적자본, 인구와 같은 설명변수에 비해 사회지출의 추가적인 효과는 본고의 추정결과 일률적인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참고문헌>

Arjona, R. M. Ladaique and M. Pearson, "Social Protection and Growth," *OECD Economic Studies* No. 35, 2002/2, 2002, pp. 7~45

Arjona, R., M. Ladaique and M. Pearson (2001), "Growth, Inequaltiy and Social Protection," OECD Labor Market and Social

9) 세 번째 방법의 경우, 피설명 변수는 경제성장률(일인당 소득의 로그 차분)이고 이는 전기 소득의 함수이기 때문이다.

10)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충분한 과거 시차변수를 도구변수로 활용하는 Allerano-Bond 타입의 방법이다.

Policy Occasional Papers, No.51, OECD Publishing

Alesina, Alberto and Roberto Perotti(1996) "Income distribution, political instability, and invest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40, 1996, pp. 1203~1228

Alesina, A. *AND DANI RODRIK*, "Distributive Politics and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No. 109(2), 1994, pp. 465~90.

Caselli, F., G. Esquivel and F. Lefort, "Reopening the Convergence Debate: A New Look at Cross-Country Growht Empirics," *Journal of Economic Growth*, No. 1, 1996, pp.363~389

Cecilia Garcia Penalosa and J. Wen, "Redistribution and Occupational Choice in a Schumpeterian Growth Model," CESifo Working Paper Series, 2004

Mankiw, N. G., D. Romer and D.N. Weil,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07, No.2, 1992, pp. 407~437

Perotti, R., "Income distribution and investment." *European Economic Review*, 38, 1998, pp. 827~35.

Persson, T. *AND GUIDO TABELLINI*, "Is Inequality harmful for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84(3), 1994, pp. 600-621.

Pesaran, M.H., Y. Shin and R.P. Smith, "Pooled mean group estimation of dynamic heterogeneous panel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94, 1999, pp.621-634

<부록>

〈데이터 출처〉

- 실질GDP(2000년 구매력평가지수 기준)의 출처: OECD가 2008년 발간한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Volume I : MAIN AGGREGATES 1995-2006』의 III. Comparative tables based on purchasing power parities (PPPs)에 수록된 B.3 Gross domestic

product at the price levels and PPPs of 2000 (billions of US dollars)

- 물적자본(physical capital)의 투자율은 "민간부문 비주택 투자(실질)의 민간부문 GDP(실질) = {총투자 – 주택투자 – 정부부문 투자} / {실질GDP – 정부부문 소비 – 정부부문 투자}"를 이용하여 산출
  - OECD가 2008년 발간한 『National Accounts of OECD Countries Volume I : MAIN AGGREGATES 1995-2006』의 총투자(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total), 주택투자(GFCF- Housing), 정부부문 투자(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government), 실질GDP(Gross domestic product, expenditure approach), 정부부문 소비(Government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 인적자본: 25~64세 인구의 평균 학령을 대리변수로 사용
  - 이를 산출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출처는 1971~1998년은 Bassanini and Scarpetta(2001)에서, 이후 연도는 저자가 Fuente and Domenech(2000)의 Table 6 : Cumulative years of schooling by educational level에 OECD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Education at a Glance』의 Table A1.1a Educational attainment: adult population (2006) : Distribution of the 25-to-64-year-old population, by highest level of education attained을 적용하여 평균 학령을 추정
- 국민부담률의 출처: OECD가 2007년 발간한 『Revenue Statistics 1965-2006』
- 사회지출의 출처: 1970-1979년은 OECD가 1985년 발간한 『Social Expenditure 1960-1990』, 1980-2003년은 OECD가 2007년 발간한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OCX) 』

〈PMG Specification〉

먼저 MRW(1992)의 기본변수와 추가변수(Ω)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축약식을 설정할 수 있다.

$$
\begin{aligned}
1n(y_{i,t}) = {} & \lambda_i \ln(y_{i,t-1}) + \beta_{i,1} 1n(n_{i,t-1}) + \beta_{i,2} 1n(s_{i,t-1}) \\
& + \beta_{i,3} 1n(h_{i,t-1}) + \sum_{m=4} \beta_{i,m} \Omega_{m_{i,t-1}} + \beta_{i,k+1} t \\
& + \alpha_i + \epsilon_{i,t}
\end{aligned}
$$

이는 다음과 같이 변형할 수 있다.

$$\Delta 1n(y_{i,t}) = a_{0,i} - \phi_i \ln(y_{i,t-1}) + a_{i,1} 1n(n_{i,t}) + a_{i,2} 1n(s_{i,t})$$
$$+ a_{i,3} 1n(h_{i,t}) + \sum_{m=4} a_{i,m} \Omega_{m_{i,t}} + a_{i,k+1} t + b_{i,1} \Delta 1n(n_{i,t})$$
$$+ b_{i,2} \Delta 1n(s_{i,t}) + b_{i,3} \Delta 1n(h_{i,t}) + \sum_{m=4} b_{i,m} \Delta \Omega_{m_{i,t}} + \epsilon_{i,t}$$

여기에서 계수 a는 장기계수를, b는 단기계수를 나타낸다. 이에 OECD 국가들 사이에 장기관계의 동질성이 존재하는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이질성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장기 동질성(long-run homogeneity) 가정인 $\boldsymbol{\theta_i} = \boldsymbol{a_i}/\phi_i$, $\phi_i = (1-\lambda_i)$, $i = 1,2,...,N$을 허용하면 본문의 식을 얻을 수 있다.

〈기간별 평균 데이터를 이용한 고정효과 패널 회귀 결과〉

	기본 변수	기본변수 +조세	기본변수 +사회지출	기본변수+조세 +사회지출	항목별 사회지출 고려
상수	0.1758 (0.1080)	0.1951 (0.1277)	0.1495 (0.1807)	0.14195 (0.1833)	0.3552 (0.2734)
$\ln(y_{i,t-1})$	-0.0272* (0.0153)	-0.0292 (0.0189)	-0.02356 (0.0222)	-0.0221 (0.0225)	-0.0632* (0.0374)
$\ln(I/GDP)_{i,t-1}$	-0.0026 (0.0073)	-0.0029 (0.0075)	-0.0001 (0.0077)	0.0005 (0.0078)	-0.0019 (0.0083)
$1n(h_{i,t-1})$	0.0485* (0.0293)	0.0397 (0.0359)	0.0423 (0.0376)	0.0458 (0.0376)	0.1487** (0.0746)
$1n(n_{i,t-1})$	-0.5625 (0.4662)	-0.4123 (0.5364)	-0.5806 (0.6001)	-0.7004 (0.6415)	-2.7557** (1.1082)
$(T/GDP)_{i,t-1}$	–	0.0595 (0.0618)	–	-0.0516 (0.0898)	-0.2181* (0.1296)
$(SOCX/GDP)_{i,t-1}$	–	–	0.0470 (0.0679)	0.0679 (0.0777)	–
연금					-0.0014 (0.1758)
보건					0.1987 (0.2014)
실업급여					0.6441* (0.3719)
여타 사회지출					0.4096** (0.1747)
No. of countries	24	23	24	23	19
No. of observations	67	65	62	61	49
R^2	0.679	0.662	0.581	0.572	0.583

주: 1. Standard errors are in brackets.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및 10%에서 유의미한 추정값
2. $n_{i,t}$는 조증가율(gross growth rate)을 이용하였다.

〈부표 3〉 PMG 단기계수 추정결과 (기본 설명변수 +사회지출)

	AUS	AUT	CAN	DNK	FIN	FRA	DEU	GRC	IRL	ITA	JPN	KOR	MEX	NLD	NZL	NOR	POL	PRT	ESP	SWE	CHE	GBR	USA	평균
조정속도																								
phi_hat	0.0035	0.0026	0.0035	0.0027	0.0060	0.0015	0.0028	−0.0141	−0.0281	0.0102	0.0079	−0.0087	−0.0005	0.0001	−0.0007	0.0047	−0.0067	−0.0071	−0.0051	0.0012	0.0017	0.0063	0.0039	−0.0005
t−value	2.4624	4.0420	3.7728	5.5049	5.7143	1.1755	3.5205	−3.8785	−3.6075	2.9782	2.6144	−8.3179	−1.5672	0.0921	−0.4208	6.3418	−9.1955	−3.9939	−2.4145	1.7063	1.7994	4.1461	5.1908	
단기계수																								
d_log(n+1)	−0.4687	−0.1910	0.1530	0.5870	−0.2786	0.1190	0.1074	0.1908	−0.1458	−0.0116	−0.8021	0.0026	−0.0856	0.2106	0.0794	0.0768	0.5885	−0.0045	−0.0470	0.3023	0.6064	0.5794	−0.8211	0.0325
d_log(s)	0.0046	0.0217	0.0000	0.0012	0.0064	0.0206	0.0084	0.0006	0.0078	0.0164	0.0486	0.0265	0.0237	0.0083	0.0129	0.0024	0.0179	0.0083	0.0238	0.0035	0.0027	−0.0065	−0.0026	0.0112
d_log(h)	0.0579	0.0327	0.0162	0.0063	0.0055	0.1007	0.0273	−0.1401	0.1224	0.0012	0.0149	−0.1128	−0.0006	0.1856	0.1231	−0.0264	−0.0430	−0.0483	0.0322	0.0988	−0.0228	0.0125	0.0348	0.0208
d_socx	−0.1806	0.0561	−0.2121	−0.1524	−0.1660	−0.0808	−0.0838	−0.0250	0.0117	−0.1511	−0.0490	−0.1312	0.0761	−0.0274	−0.1441	−0.0347	−0.0263	−0.2756	0.0086	−0.0616	−0.0815	−0.1808	−0.2645	−0.0946
t_value																								
	−0.4666	−0.6061	0.2029	0.5559	−0.1354	0.0755	0.1434	0.3266	−0.2171	−0.0240	−0.5103	0.0019	−0.3328	0.1379	0.3775	0.0629	0.1491	−0.0137	−0.0658	0.2246	0.5572	0.3326	−0.6610	
	0.1204	0.6900	−0.0024	0.1061	0.3885	0.5865	0.1759	0.1915	0.4089	0.4949	1.4214	1.2604	1.7056	0.2553	0.4166	0.6132	1.9645	0.1543	1.3298	0.2375	0.0522	−0.1959	−0.1560	
	0.5243	0.4064	0.0737	0.1583	0.0731	0.4825	0.1641	−0.5095	0.6246	0.0064	0.0603	−0.6760	−0.0231	0.4579	0.3576	−0.4076	−0.1721	−0.2710	0.4655	0.4777	−0.0781	0.0768	0.4094	
	−0.4750	0.2003	−1.6230	−1.5449	−1.5600	−0.3856	−0.5135	−0.1551	0.0706	−0.6846	−0.2817	−1.1065	0.1222	−0.1983	−0.4582	−0.5807	−0.2137	−0.5157	0.0649	−0.6551	−0.2853	−1.1885	−1.3145	

〈부표 4〉 PMG 단기계수 추정결과 (기본 설명변수 + 조세 +사회지출)

	AUS	AUT	CAN	DNK	FIN	FRA	DEU	GRC	IRL	ITA	JPN	KOR	MEX	NLD	NZL	NOR	POL	PRT	ESP	SWE	CHE	GBR	USA	평균
조정속도																								
ln(y(−1))	-0.0009	0.0033	0.0035	0.0007	0.0039	0.0036	0.0043	-0.0004	0.0158	0.0032	0.0054	0.0007	-0.0005	0.0002	-0.0037	0.0012	-0.0053	0.0101	0.0047	0.0013	0.0007	0.0014	0.0023	0.0024
t−value	-0.7098	3.5485	2.3141	1.7289	3.2173	2.8687	2.5600	-0.6588	2.3824	1.8231	1.8450	0.1872	-0.3046	0.1351	-1.5808	2.7954	-4.8153	1.4540	1.7503	1.9502	0.5400	1.2936	2.2539	
단기계수(b)																								
d_log(n+1)	-0.5314	-0.1762	0.1790	0.5713	-0.3308	-0.0228	0.1249	-0.0152	-0.0180	-0.0415	-0.9879	-0.4359	-0.1042	0.2064	0.0702	-0.6342	-2.6368	-0.0646	0.4454	0.3204	0.6388	0.3552	-1.2050	-0.1867
d_log(s)	0.0146	0.0175	0.0058	-0.0007	0.0093	0.0217	0.0087	0.0007	0.0107	0.0157	0.0505	0.0215	0.0223	0.0089	0.0039	0.0013	0.0145	-0.0031	0.0276	0.0046	0.0026	0.0017	0.0062	0.0116
d_log(h)	0.0799	0.0256	0.0009	0.0107	0.0112	0.1033	0.0281	0.1675	0.1431	-0.0229	0.1427	-0.0476	-0.0055	0.2116	0.1805	-0.0012	-0.0399	-0.0811	0.0489	0.0996	0.0232	0.0676	0.0638	0.0526
d_trt_s	-0.0315	-0.0581	-0.0603	0.0379	-0.0073	-0.0179	0.0460	-0.0220	-0.0737	-0.0017	-0.0517	0.0405	0.1175	-0.0244	0.0595	0.0953	0.0017	0.2640	0.0102	-0.0161	-0.0041	-0.0509	-0.0323	0.0096
d_socx	-0.0984	0.0243	-0.1804	-0.1622	-0.1309	-0.0772	-0.0788	-0.0432	-0.0504	-0.1170	-0.0570	-0.1852	0.0655	-0.0196	-0.2296	-0.0163	-0.0223	-0.1740	-0.0115	-0.0657	-0.0559	-0.1247	-0.1631	-0.0858
t_value																								
	-0.4958	-0.6807	0.2499	0.5535	-0.1456	-0.0142	0.1645	-0.0201	-0.0341	-0.0753	-0.5608	-0.2459	-0.4984	0.1343	0.3904	-0.4283	-0.4705	-0.1843	0.3995	0.2460	0.5012	0.1696	-0.7350	
	0.3712	0.6607	0.2474	-0.0605	0.5040	0.6073	0.1789	0.1490	0.6644	0.4197	1.2534	0.9867	2.0270	0.2784	0.1305	0.2313	0.8709	-0.0459	1.3107	0.3114	0.0465	0.0430	0.2367	
	0.7278	0.3817	0.0040	0.2869	0.1397	0.5255	0.1559	0.6117	0.9045	-0.0862	0.8297	-0.3154	-0.2402	0.5726	0.5086	-0.0153	-0.0975	-0.4047	0.6640	0.5271	0.0946	0.4278	0.6207	
	-0.1466	-0.7024	-0.3638	0.3121	-0.0718	-0.1136	0.2177	-0.2330	-0.5968	-0.0097	-0.3026	0.1945	0.5938	-0.1833	0.6626	0.6227	0.0228	0.8182	0.0703	-0.1898	-0.0270	-0.3546	-0.2183	
	-0.2429	0.1043	-1.3481	-1.5477	-1.1142	-0.3749	-0.4767	-0.1890	-0.3807	-0.4771	-0.2744	-1.6048	0.1274	-0.1466	-0.8318	-0.1979	-0.1145	-0.3670	-0.0699	-0.7167	-0.1989	-0.6565	-0.6863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소고[1)]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bjun@kipf.re.kr)

최근 도입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시설보육 이용의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던 가정내 유료 보육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Ⅰ. 도입

저출산에 따른 제반 사회 · 경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최근 활발해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그리하여, 영유아 보육은 복지정책의 주요한 영역 중 하나로 인식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영유아 복지정책의 수혜범위와 지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요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및 금액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확충,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원 확대라는 방식을 통해 보육서비스 확대를 꾀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서 언급된 방식을 이용한 결과 제도화된 아동보육, 다시 말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시설 이용을 통한 아동 보육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도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 이에 반해, 비제도화된 보육서비스, 예컨대 가정내의 개인에 의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2)].

최근 도입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시설보육 이용에 한정된 기존 제도하에서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던 가정내 유료 보육 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 개별 가구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을 공적인 지원의 대상으로 간주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육 서비스 지원 범위의 외연적 확대라는 측면이 아닌 실효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아이돌보미 사업의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에 대

1) 본고는 원종학 · 전병힐 (2008)에 기초함.
2) 2004년 전국 보육 · 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59%의 조사가구가 이웃 탁아모 혹은 베이비시터 등에 의한 개인 양육에 대한 비용 보조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문희 외 (2005))

해 살펴보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추진 배경은 기존의 시설보육이 다양한 보육서비스 욕구의 증대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에 있다[3]. 시설보육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며, 맞벌이 · 임시 · 일용직의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시간연장 및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시설보육서비스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주된 수혜계층이 저소득층, 특히 맞벌이 여성이 있는 가구가 될 것인지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평가에 있어서 주된 요소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요인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이 여성의 취업을 증가시키는 효과 여부 역시 중요한 관심사이다. 여기서 언급된 두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필요로 하나, 아직까지 관련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자료의 제약을 감안한 상태에서 대략적인 논의를 통해 본고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사업이 기대한 효과에 부합할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려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앞서 제기한 두 질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3절에서는 2008년 실시한 가정보육실태조사의 아이돌보미 이용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가격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찾으려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요약이 제4절에 제시될 것이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추진배경 중 하나는 맞벌이 증가에 따라 시설보육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 충족이다.

Ⅱ. 문제제기 및 관련 논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추진배경 중 하나는 맞벌이 증가에 따라 시설보육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 충족이다. 맞벌이, 임시, 일용직 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영아, 시간연장, 시간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음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유료 개인형 보육서비스의 이용계층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가구임을 감안한다면, 유료 가정보육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정당성은 비용의 문제로 접근이 곤란했던 저소득층이 새로운 제도하에서 주된 서비스 이용자가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해, 어떤 면에서는 사치재로도 인식될 수 있는 가정 내 유료보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이돌보미

3)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www.idolbom.or.kr/)

소득이 낮은 가구들 역시 개인별 보육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가 있다.

서비스의 혜택이 저소득층 가구로 향하기보다는 기존에 민간 부문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에 집중된다면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가구의 돌보미 서비스 이용 욕구에 대한 논의에 대한 근거는 (암묵적으로나마) 〈표 1〉에 바탕한다. 〈표 1〉은 가구소득분위에 따른 가정보육서비스 이용률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유료 가정보육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예컨대, 1분위의 경우 2.1%의 가구만이 유료 가정보육서비스를 이용하나, 6분위에 속한 가구는 약 15%의 이용비율을 보인다. 이 비율은 가장 높은 소득을 갖는 10분위 가구의 경우 25% 수준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관측은 유료 가정보육서비스가 소득이 높은 가구들이 주로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과 일치한다. 한편 친지나 이웃 등에 의한 무급의 가정보육서비스까지 포함한다면 저소득층 가구의 이용률 역시 현저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소득이 낮은 가구들 역시 개인별 보육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갖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비용제약으로 인해 이웃 · 친지 등의 비전문적인 인력에 의한 무급서비스 형태로 충족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표 1〉 소득계층별 개인양육지원 이용률

(단위: %, 명)

구 분	이용			비용 지불 이용			(수)
	혈연	비혈연	소계	이용	이용	이용	
1분위	16.9	1.0	17.9	-	-	2.1	(195)
2분위	10.8	-	10.8	1.5	-	3.4	(324)
3분위	7.5	-	7.5	2.5	-	4.4	(320)
4분위	11.5	-	11.5	1.9	-	3.1	(321)
5분위	15.1	0.6	15.7	4.9	0.6	7.3	(344)
6분위	20.8	0.8	21.6	5.3	0.8	8.3	(361)
7분위	24.2	2.0	26.3	9.6	2.0	14.7	(293)
8분위	27.6	2.6	30.3	13.8	2.0	19.4	(304)
9분위	31.6	2.0	33.6	17.2	2.0	23.2	(250)
10분위	36.6	8.3	34.2	15.4	7.9	24.6	(228)
$x^2(df=9)$	112.8**	91.9**	151.5**	147.2**	93.5**	190.6**	-
10분위/1분위	27.6	8.3	1.9	(10.3)	(13.2)	1.2	-

주: ** $p<.01$
자료: 여성부, 2004년 보육 · 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원자료.
출처: 서문희 외(2006)

따라서, 저소득층에서 나타나는 시간제 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이들 소득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관측되고 있는 이웃 · 친지 등에 의한 무급서비스 이용을 유급의 돌보미 이용으로 전환시킴을 의미한다. 이 논지의 타당성은 다음의 두가지 사실에 의존한다. 첫째, 현재 이용되고 있는 비전문적인 인력, 즉 이웃과 친지에 의한 무급 보육서비스와 비교하여 돌보미 서비스가 보다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가의 여부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전제로 할 때, 과연 현재 돌보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원체계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행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당면한다.

저소득층에서 나타나는 시간제 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이웃 · 친지 등에 의한 무급서비스 이용을 유급의 돌보미 이용으로 전환시킴을 의미한다.

여기서 제기된 두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한 이상적인 상황은 돌보미제도 이용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보된 경우이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미흡하므로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보다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대략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시사점을 얻으려 한다.

가. 양질의 서비스 제공

[그림 1]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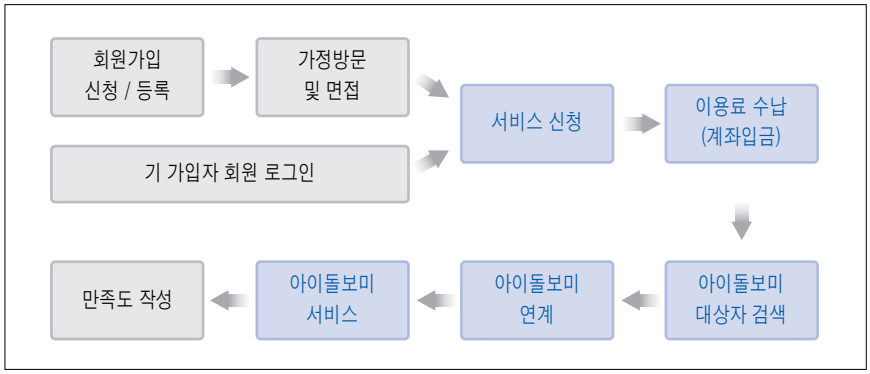

http://www.idolbom.or.kr/form/Service010.asp에서 인용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해당지역별 가정지원센터에 등록된 아이돌보미에 의하여 제공된다. 아이돌보미에 의해 제공되는 구체적인 서비스의 예는 아이들의 학교 · 학원의 등하교(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 서비스, 놀이활동, 안전 · 신변보호 등이다.

가정지원센터가 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직접 연계시키는 방식

급여 차이로 인하여 가정지원센터의 돌보미 관리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과 공적부문의 아이돌보미 간의 질적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을 택하고 있다. 단순히 연계에 그치지 않고 가정지원센터가 직접 서비스의 공급자인 아이돌보미를 사전 ·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이다. 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50시간에 걸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65세 이하의 개인에 대해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통제한다. 또한, 서비스 이용 대상 가구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후적인 관리를 꾀하고 있다.

2009년 현재 아이돌보미는 평일의 경우 1명의 아동을 돌볼 때 교통비를 제외하고 시간당 5천원의 급여를 받는다. 민간돌보미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월 1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시간당 약 7천원~8천원 수준의 시급에 해당한다. 양 부문간의 시급 차이를 감안한다면 아이돌보미로 일할 용의와 자격이 있는 서비스 제공자는 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기보다는 보다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민간부문의 아이돌보미로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을 가질 것이다. 이 경우 우수한 돌보미 인력이 민간부문에 집중됨에 따라 가정지원센터의 돌보미 관리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과 공적부문의 아이돌보미 간의 질적 차이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 달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양질의 돌보미 확보라면 아이돌보미를 통해 개별 아동에 따른 다양한 수준의 보육 서비스 필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란 취지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 저소득층 지원

〈표 2〉 아이돌보미 이용요금

(단위: 원)

아동수	가형[1]		나형[2]		다형[3]			
					기 본		심 야	
	기본요금 (2시간)	추가 시간당	기본요금 (2시간)	추가 시간당	기본요금 (2시간)	추가 시간당	기본요금 (2시간)	추가 시간당
1	2,000	500	8,000	3,000	10,000	5,000	12,000	6,000
2	3,000	700	12,000	4,500	15,000	7,500	18,000	9,000
3	4,500	1,100	18,000	6,700	22,500	11,200	27,000	13,500
4	6,000	1,500	24,000	9,000	30,000	15,000	36,000	18,000
5	7,500	1,800	30,000	11,200	37,500	18,700	45,000	22,500
6	9,000	2,200	36,000	13,500	45,000	22,500	54,000	27,000

주: 1) 가형: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2) 나형: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이하
3) 다형: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초과(교통비 이용자 부담)
1. 가 · 나형의 경우에는 주간 · 심야 간 요금 차이가 없으며 3자녀 이상의 경우 아이돌보미 2명이 파견됨.
출처 : http://www.idolbom.or.kr/form/Introduction020.asp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현행 지원제도는 차등보육료의 방식을 따라 가구의 소득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4].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 증가에 따라 시간당 이용요금이 증가하는 구조이다. 예컨대 2009년 현재 월평균 소득이 195만 6천원에 미달하는 4인 가구의 경우 가형으로 분류되어 최초 2시간에 대해 2천원을, 추가 시간에 대해서는 5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195만 6천원 이상 391만 1천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4인 가구는 나형의 요금이, 그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경우 다형의 요금이 부과된다.

현재의 지원방식은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여 낮은 가격에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개인양육서비스 이용이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정상재 (normal good)란 가정하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방식은 모든 계층의 유료가정 보육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장 낮은 시간당 비용을 부담하는 저소득층의 이용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에서 설명한 대략적인 논의가 항상 옳지만은 않다. 저소득층의 이용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가격변화에 따른 아이돌보미 수요의 비보상탄력성(uncompensated elasticity)에 대한 일정한 조건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복잡한 논의를 피하고, 다음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저소득층 가구의 수요함수를 h_L, 고소득층 가구의 수요함수를 h_H라고 하자. 각 소득계층에 속한 가구의 수요함수가 가격에 대해 선형 (linear) 이라고 가정한다. 아이돌보미와 유사한 가정보육서비스의 시간당 가격이 p_0,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시간당 가격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대해 각각 p_L, p_H라고 한다[5].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유료가정보육서비스 이용시간 변화는 각각 $(p_0 - p_L)\times\frac{\partial h_L}{\partial p}$과 $(p_0 - p_H)\times\frac{\partial h_H}{\partial p}$임이 쉽게 구해진다.

만일 고소득층의 유료가정보육서비스가 가격 변화에 대해 보다 민감하다면 $(\frac{\partial h_L}{\partial p} < \frac{\partial h_H}{\partial p})$, 저소득층에 대해 보다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의 수요가 더욱 많이 증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할 수도 있다.

$$(p_0 - p_L)\times\frac{\partial h_L}{\partial p} < (p_0 - p_H)\times\frac{\partial h_H}{\partial p}$$

개인양육서비스 이용이 소득에 따라 증가하는 정상재란 가정하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지원방식은 모든 계층의 유료가정 보육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4) 소득 구간에 따라 기본시간당 1천원에서 9천원까지의 요금을 정부가 부담한다.(www.idolbom.or.kr)

5) $p_L < p_H < p_0$라는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또한, 민간부문의 유료서비스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없다고 가정한다.

단지 소득구간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도록 이용요금체계를 설계하였다는 사실이 저소득층 가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이 원하는 수준으로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사실은 지원 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고소득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가격 p에서 수요를 $h_k(p)$ $(k=H, L)$라 하자. 주어진 가정하에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액은 각각 $(p_0-p_L)\times h_L(p_L)$과 $(p_0-p_H)\times h_H(p_H)$이다[6]. 앞서와 같은 이유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큰 차이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지원총액에서는 고소득층이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단지 소득구간에 따라 가격이 낮아지도록 이용요금체계를 설계하였다는 사실이 저소득층 가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이 원하는 수준으로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대하는 수준의 정책효과를 얻기 위한 가격체계의 결정은 보다 엄밀한 분석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다음 제3절에서는 설문을 통해 얻은 가상 수요 자료를 이용한 아이돌보미 수요 분석을 통해 가격체계와 관련된 시사점을 찾아 보려한다.

Ⅲ. 아이돌보미 수요분석

본절의 분석을 위해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2008년 가정보육실태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이용한다. 2008년 가정보육실태조사는 만 5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서울 · 경기 · 인천의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가구내 설문자는 아동의 어머니로 하였다. 다만, 어머니가 없는 단친 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본 설문은 응답 대상 가구의 부모의 교육수준 · 연령 · 가구 소득 ·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와 5세 이하 대상 아동들에 대해 각 시간대별 보육 형태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응답가구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 기초통계량

	평 균	표준편차
자녀수	1.66	0.63
5세 이하 자녀수	1.28	0.47
취업	0.40	
주당근로시간	46.17	12.10
연령	33.88	3.73
배우자연령	63.43	3.73
교육 (대학이상=1)	0.57	
배우자교육 (대학이상=1)	0.73	

6) 여기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가구의 수는 동일하다는 암묵적인 가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각 계층에 속한 총가구수는 고려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008년 가정보육실태조사에서는 아동 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가상적 수요를 모든 설문 대상 가구에 대해 질문하였다 (〈표 4〉). 현재의 제도하에서 개별 가구가 직면하는 가격 체계와 동일하게 최초 2시간 이용에 대한 기본 요금과 추가 시간에 대한 단위 시간당 비용을 가격 체계로 하여 4가지 서로 다른 가격체계에 대해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물었다.

각 가격체계에 따라 개별 가구가 희망하는 아이돌보미 이용시간은 가격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가구의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는 사실이 관측된다.

〈표 4〉 아이돌보미 서비스 가상적 수요 조사 문항

문57) ○○님께서는 베이비시터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기준 요금이 다음과 같다면, 매주 평균 몇 회 몇 시간의 이용의사가 있으십니까?

요금 2시간 미만 기본 요금 적용	주 평균 이용 횟수	1회 평균 이용 시간
57-1) 기본요금 2,000원, 추가 시간당 500원	회/1주	시간/1회
57-2) 기본요금 8,000원, 추가 시간당 3,000원	회/1주	시간/1회
57-3) 기본요금 10,000원, 추가 시간당 5,000원	회/1주	시간/1회
57-4) 기본요금 12,000원, 추가 시간당 6,000원	회/1주	시간/1회

[그림 2]는 각 가격체계에 따라 개별 가구가 희망하는 아이돌보미 이용시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57-1의 가격체계에서 92%의 가구가 1주일에 적어도 평균 1회 이상 이용하기를 희망하였다. 가격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가구의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는 사실이 관측된다. 구체적으로 57-2에 제시된 가격에서 이용률은 61.2% 수준에 머물며, 57-3로 가격이 상승한다면 33.8%의 응답자만이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였다. 57-4 수준에서는 이용률은 더욱 떨어져 24.6%만이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이 낮은 가격체계 하에서 많은 수요를 표출하는 방향의 응답을 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해당 문항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대답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7].

7) 이 사실이 설문에 기반한 응답이 진정한 수요를 표출한다는 근거로 삼기는 무리이다. 설문 응답에 관한 여러 이슈에 대해서는 McFadden et. al. (2005)를 참조하라. 또한, 최초 2시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본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므로, 1회 이용시 1시간을 선택하는 것보다 2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보다 바람직함에도 일부 가구가 1시간을 선택했다는 점은 여전히 아이돌보미의 가격 체계 또는 설문 문항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비용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이용 여부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2]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가격별 주당 희망 이용시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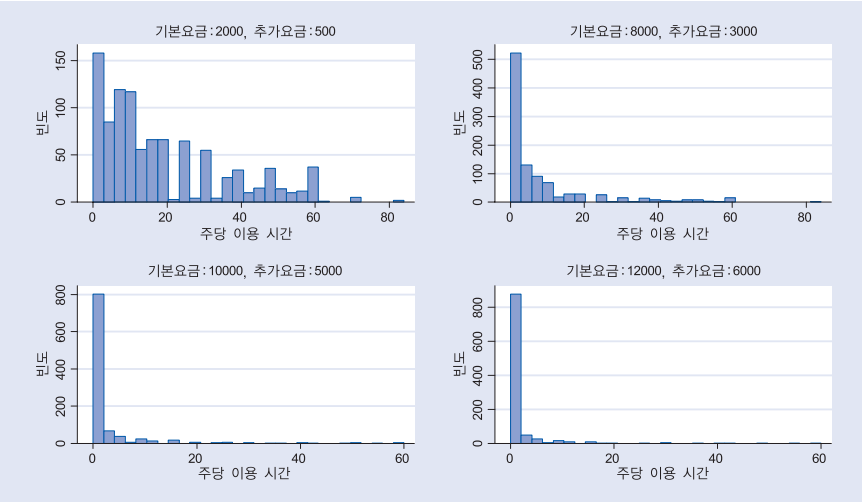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여부와 이용 희망 시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에 대해 살펴보자.

가구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여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요함수를 프로빗 (probit)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주어진 가격체계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지에 대한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종속변수로 삼고, 가격 변수, 가구소득, 대상 아동 연령, 어머니의 연령 · 교육 · 경력, 지역 등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i는 개인에 대한 지수(index), j는 가격체계에 대한 지수라고 하면 기본적인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y_{ij}=1 \Leftrightarrow y_{ij}^{*}=x_{i,j}{}'\beta+\varepsilon_{ij}\geq 0$$

위의 식에서 y_{ij}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정의된 더미변수이다. 또한, 통제된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변화를 설명하는 교란항은 $\varepsilon_{i,j}=\alpha_i+\epsilon_{ij}$의 형태를 갖는다고 가정하자. 즉, 개인별 특성에 따른 교란항 α_i와 나머지 부분 ϵ_{ij}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첫 번째 부문 α_i는 가구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나머지 부문 ϵ_{ij}는 모든 가구와 가격체계에 걸쳐 동질적으로 나타나는 교란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α_i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_{ϵ}^{2}인 정규분포를 따르며, ϵ_{ij}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σ_{ϵ}^{2}인 정규분포를 따르며, 두 변수는 서로 독립적이라 가정한다. 또한, ϵ_{ij}는 서로 다른 가격체계하에서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하자.

이러한 가정에서 얻어진 추정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비용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이용 여부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기본비용과 단위 비용이 1천원씩 상승할 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은 각각 3%p와 9%p 하락하였다[8]. 흥미로운 사실은 비용과 관련한 두 가지 변수, 즉 기본요금과 추가시간당 요금의 효과는 가구 소득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가구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기본비용의 효과는 커지나 추가 시간당 비용의 효과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격 변동에 대한 고소득층의 서비스 이용 패턴에 대한 변화가 주로 (1회당) 적은 시간을 이용하는 가구에서 발생함을 암시한다. 반대로 저소득층의 경우 (1회당) 이용시간이 많은 가구에서 비용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이 주로 발생함을 암시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 서비스 이용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비용보다는 추가 비용의 조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 서비스 이용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본비용보다는 추가 비용의 조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할 때, 비용 변수를 제외한 다른 변수들의 경우 아이돌보미 이용과 사전적으로 기대되었던 방향의 연관관계를 갖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 수준이 통상적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장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다만, 어머니의 직장 경력만이 유의수준 5%에서 서비스 이용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경력이 높은 어머니의 경우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이 높기 때문인 듯하다.

가구 소득구간별로 나누어 동일한 분석을 한 경우에도 대체로 유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샘플과 비교할 때, 가구 소득이 700만원 이상인 가구 집단에 대한 분석 결과가 차이를 보이나,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적은 샘플 사이즈 (N=19)로 인한 결과인지 혹은 소득에 따라 다른 모수(parameter)값을 갖기 때문인지 식별하기 곤란하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가구소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는 전체 샘플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추정치의 부호 및 통계적 유의성에서 동일한 결과가 얻어졌다. 그러나, 가구 소득이 350만원 이하인 집단에 대한 추정치에서 어머니의 경력(년수)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대신에, 어머니의 대학 졸업 여부 더미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다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8) 한계 효과는 샘플의 평균값 수준에서 평가되었다.

아이돌보미 희망 이용시간과 관련해서는 가구소득 (350만 원 이상 더미 변수)와 단위 시간당 비용 변수(로그-평균비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표 5〉 패널 구조를 이용한 프로빗 모형

변수	전 체	소득 350만원이하	소득 350~700만원	소득 700만원 이상
아동 연령	0.098 (0.22)	0.208 (0.20)	−0.116 (0.25)	5.08*** (1.58)
어머니 연령	−0.168 (0.10)	−0.187** (0.08)	−0.095 (0.11)	−1.641*** (0.53)
어머니 대학 졸업 더미	1.463 (1.17)	1.377*** (0.53)	0.509 (1.25)	1.051 (4.16)
가구 소득 (> =350만원, 더미)	1.077 (0.63)			
어머니 직장 경력 (년)	0.185** (0.09)	0.148 (0.07)	0.162* (0.09)	1.856*** (0.39)
5세 이하 추가 아동수	0.834 (0.62)	0.417 (0.57)	0.550 (0.73)	−6.210** (2.42)
다른 어른 동거 (더미)	−0.515 (0.97)	−0.601 (1.07)	−0.096 (1.08)	11.484** (4.47)
서울 (더미)	0.934 (0.59)	1.157 (0.53)	0.858 (0.66)	0.525 (3.31)
경기(더미)	−0.558*** (1.27)	0.783*** (0.83)	−2.683* (1.45)	−4.001 (4.93)
기본비용(천원)	−0.724*** (0.24)	−0.801*** (0.28)	−0.951*** (0.32)	−2.440** (1.37)
추가비용 (시간당, 천원)	−2.123*** (0.41)	−2.044*** (0.50)	−1.800*** (0.51)	−0.900 (2.47)
상수항	17.331 (3.49)	17.361 (2.58)	17.900 (4.08)	55.830*** (17.62)
N	1000	475	506	19

***: 유의수준 < 1%, **: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이제 가상적인 가격체계하에서 주당 희망 이용시간을 이용해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요를 추정해보자. h를 주당 희망 이용시간, p_j는 시간당 평균 비용, x_i는 통제된 변수들이라고 하면 개별 가구의 수요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h = \max(x_i'\beta + \gamma \times \ln p_j + \varepsilon_{ij}, 0)$$

앞서와 같이 패널구조를 가정한 상태에서 토빗 (Tobit) 분석을 시도하기로 하자. 교란항 ε_{ij}에 대해서는 이전의 프로빗 분석과 동일한 가정을 사용한다. 구체적인 추정치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아이돌보미 희망 이용시간과 관련해서는 가구소득 (350만 원 이상 더미 변수)와 단위 시간당 비용 변수(로그-평균비용)만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갖는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가구소득이 350만 원 이상인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대략 주당 3.4시간의 추가적인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별가구가 직면하는 평균비용이 5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하자. 주어진 식에 따르면 이 경우 기대되는 아이돌보미 이용시간의 변화는 $-2\times\gamma$이다.

따라서, 추정결과를 여기에 대입하면 평균비용의 50% 저하는 개별 가구가 평균적으로 20시간의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소득구간에 따라 평균 비용의 수요함수에 대한 효과를 확인해 본 결과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희망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시간이 보다 가격탄력적이란 결과가 확인되었다. 앞서 가정한 것처럼 50% 수준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경우 월소득 350만원 이하 가구는 주간 18시간을 추가적으로 더 이용하려 함에 비해, 월소득 350~700만원인 가구와 월소득 700만원 이상 가구는 각각 21시간과 29시간을 추가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프로빗 분석에서와 같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패턴 변화를 위해서는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더 큰 가격 변동이 있어야 함을 암시한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만으로 인해 현재 전업주부인 여성이 전일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50%의 비용 저하가 있는 경우 주간 18시간의 추가적인 서비스 이용, 즉 1일 평균 약 3.6시간 정도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전일제 취업 여성의 보육서비스를 아이돌보미 서비스만으로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말한 수준의 비용 하락이 있는 경우라도 다른 방식과 결합하여 보육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가구에서만 여성의 전일제 취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만으로 인해 현재 전업주부인 여성이 전일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낮은 시급 수준은 동일한 이용시간에 대해 적은 보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돌보미 지원사업의 재정부담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민간부문과의 경쟁 구조하에서 어떤한 방식으로 우수한 아이돌보미 인력을 확보할지에 대한 문제를 남긴다.

〈표 6〉 패널구조를 이용한 주당 (희망) 이용시간에 대한 토빗 분석

변수	전체	소득 350만원이하	소득 350~700만원	소득 700만원 이상
아동연령	−0.032 (0.27)	0.286 (0.38)	-0.527 (0.40)	2.978* (1.81)
로그-평균비용	−10.009*** (0.14)	−9.016*** (0.19)	−10.586*** (0.20)	−14.946*** (1.07)
어머니 연령	−0.258 (0.10)	−0.441*** (0.14)	−0.168 (0.15)	−1.632 (0.70)
어머니 대학 졸업 더미	1.521 (0.76)	1.005 (0.96)	1.868 (1.29)	−3.672 (6.45)
가구 소득 (> =350만원, 더미)	3.401*** (0.86)			
어머니 직장 경력 (년)	0.098 (0.10)	0.119 (0.14)	0.166 (0.13)	1.358 (0.58)
5세 이하 추가 아동수	−0.142 (0.83)	0.900 (1.08)	-1.280 (1.24)	−13.865* (5.42)
다른 어른 동거 (더미)	1.262 (1.24)	1.570 (2.00)	1.430 (1.62)	6.046 (5.66)
상수항	13.873*** (3.23)	18.651*** (4.34)	13.377*** (4.91)	54.892*** (24.47)
N	1000	475	506	19

***: 유의수준 < 1%, **: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Ⅳ. 맺음말

본고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저소득층을 포함한 가구들의 보육에 대한 일시적 수요 및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 실효성이라는 관점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실제로 얻어질지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만, 본고에서는 현행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와 저소득층 가구의 가정 내 보육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 결과적으로 수혜액이 이들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로 집중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았다. 서비스의 질과 관련하여 현재 아이돌보미 기준 시급이 민간부문의 유사 보육서비스 급여보다 낮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낮은 시급 수준은 동일한 이용시간에 대해 적은 보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돌보미 지원사업의 재정부담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민간부문과의 경쟁 구조하에서 어떤한 방식으로 우수한 아이돌보미 인력을 확보할지에 대한 문제를 남긴다. 둘째, 저소득층에 대한 시간당 보조금을 높게 하여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낮은 가격에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가격체계를 설정할지라도 주된 수혜계층이 반드시 저소득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적을 통해 현재 무급서비스 이용을 통해 충족되는 저소득층의 가정 내 보육 서비스 이용 욕구를 아이돌보미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금체계 설정은 엄밀한 실증분석에 기반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용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해, 본고에서는 아이돌보미 이용에 대한 가상수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돌보미 서비스 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수요함수 추정결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기본 비용의 효과는 커지고, 추가 시간당 비용의 효과는 줄어든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주당 이용시간에 대해 돌보미 서비스의 평균 비용이 미치는 효과는 가구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커진다는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용요금 설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본 비용의 조정보다는 추가 시간에 대한 비용조정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소득 증가에 따라 아이돌보미 이용시간에 대한 가격탄력성 역시 증가하므로 제3절에서 예시하였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즉, 저소득층가구보다 고소득층 가구에 대해 큰 규모의 단위시간당 비용 지원액을 설정함에도 전체 지원액 규모로 비교하는 경우 고소득층 가구가 저소득층 가구에 비해 더 큰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예는 극단적인 경우로 국한되겠지만, 저소득층 가구의 서비스 이용 진작을 위해서는 이용요금 설정에 주의를 기울어야 함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구별 자료를 통한 이용행태 분석을 통해 적절한 가격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본고의 논의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설문에 근거한 가상수요를 이용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논의에 있어서도 대략적인 수준에서의 문제 제기에 그쳤다. 여기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적절성과 관련한 다른 이슈들이 있을 수도 있다. 우선 비용 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과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요구하는 비용보다 사회적으로 누리게 되는 편익이 클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할 것이다. 비록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하여도 저소득층의 시간제 보육서비스 또는 추가적인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가정 내 아이

저소득층의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본 비용의 조정보다는 추가 시간에 대한 비용 조정이 보다 효과적이다.

돌보미 서비스란 특정한 방식을 이용하여 충족시켜야 하는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예컨대, 다른 국가들에서 이용되는 드랍인 (drop-in) 서비스 등의 대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른 대안에 대한 비용측면 혹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우위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질문들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아이돌보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KIPF

<참고문헌>

서문희 · 나정 · 최혜선,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육아비용 적정 부담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2006

서문희 · 신나리 · 이정원 · 이세원,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연구』, 여성가족부

원종학 · 전병힐, 『아동 돌봄 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McFadden, D. A. Bemmaor, F. Caro, J. Dominitz, B. Jun, A. Lewbel, R. Matzkin, F. Molinari, N. Schwarz, R. Willis, and J. Winter, "Statistical Analysis of Choice Experiments and Surveys," *Marketing Letters*, Vol 16, 2005

2009년도 일본의 세제개편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jweon@kipf.re.kr)

I. 서론

일본은 저출산 · 고령화의 진전과 더불어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으로 인해 경제사회의 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2008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금융위기로 시작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일본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의 대표기업 도요타는 창업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종신고용을 자랑하던 일본의 대기업들이 줄이어 대규모 인원감축을 발표하고 있다[1].

장기적인 구조의 변화와 경기침체에 직면하여 일본 정부는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앞으로 세제가 지향해야 할 형태에 대하여 '당면은 경기대책, 중기적으로는 재정재건, 중장기적으로는 개혁에 의한 경제성장' 이라는 경제재정운영 방침에 입각하여, 2008년 10월에 '생활대책'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발표하고, 주택차입금 감세나 중소기업대책세제를 비롯한 각종 세제상의 조치를 취하였다.

'생활대책' 에서는 경제성장과 재정건전화의 양립을 꾀한다는 관점에서 기초연금 국고부담비율을 1/2로 인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비롯하여, 중앙 · 지방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중기 프로그램[2]' 을 책정하였다.

일본의 세제개정은 정부 세제조사회가 작성한 매년도의 세제개정에 관한 답신으로부터 시작된다[3]. 2008년 하반기에 발표된 세제조사회의 답신에 의하면, 바람직한 형태의 세제로서 경제와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과 재정건전화를 두 개의 축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즉, 직면한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경기 대책을 우선하는 것이 국민생활과 일본경제의 안정을

1)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인 도요타가 6,000명, 소니가 16,000명, NEC 20,000명, 히타치가 7,000명의 인원감축을 발표하였다.
2) 중기 프로그램은 다음 세 가지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 3년 이내의 경기회복을 최우선적으로 꾀하기 위해 감세조치 등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 사회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경제상황이 호전된 후에, (중략)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근본개혁을 신속하게 개시하여, 그때그때의 경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2010년대 후반까지는 단계적으로 실행한다.'
- '연도말에 개인, 법인의 소득과세, 자산과세, 소비과세의 각 세목에 대한 개혁의 기본적 방향성을 명확히 한 '세제근본적개혁의 전체상'을 알기쉽게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근본개혁을 단행한다.'

3) 일본의 세제개정 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종학(2005)을 참조하기 바람.

지키는 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제조사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상의 조치가 재정건전화라는 강한 요청이나 앞으로의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목표로 하는 방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4]. 세제조사회가 재정건전화를 중시한다는 점은 정부가 '생활대책'에 포함시키고 있는 조치를 구체화할 때 일정 시한을 설정하여 실제로 유효하며 적절한 형태로 실시할 것을 요청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세제조사회의 '세제개정에 관한 답신'과 2009년 1월 23일 각의 결정된 '2009년도 세제개정 요강'을 중심으로 2009년도 주요 세제개정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Ⅱ. 2009년도 세제개혁의 주요 내용

2009년의 세제개정은 최근의 경제금융 정세를 고려하여, 경기회복 실현에 이바지하는 관점에서 주택·토지세제, 법인관계세제, 중소기업관계세제, 상속세제, 금융·증권세제, 국제과세, 자동차과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가. 고정자산세

일본에서 주택과 토지에 관한 세금은 고정자산세라는 이름으로 부과되고 있다. 고정자산세는 어떤 자치단체에서도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고정자산을 과세객체로 하고 있어 세원의 편중도 적어 지방세로서 적합한 기간세목이며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한 세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 주택세제

2009년도 세제개정에서 가장 주목할 것으로는 '주택차입금 감세'이다. '과거 최대의 주택차입금 감세'라는 아소 총리의 지시에 따라 감세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주택세제에 관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택차입금이 있는 경우의 소득세액 특별공제

주택차입금이 있는 경우의 소득세액 특별공제제도에 대해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함과 동시에 다음 조치를 꾀한다. 먼저 주택 취득을 위해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거주용으로 사용한 경우의 공제기간 주택차입금 등의 연말잔고 한도액 공제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1〉 주택차입금이 있는 경우의 공제 (일반주택)

거주시작연도	공제기간	주택차입금의 연말잔고 한도액	공제율
2009	10년간	5,000만엔	1.0%
2010	10년간	5,000만엔	1.0%
2011	10년간	4,000만엔	1.0%
2012	10년간	3,000만엔	1.0%
2013	10년간	2,000만엔	1.0%

한편, 장기우량주택의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인정장기우량주택에 해당하는 가옥으로 일정 건물(이하 '인정장기우량주택'이라 함)의 신축 또는 건축 후 사용된 적이 없는 인정장기우량주택을 취득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이에 거주용으로 제공한 경우에

4)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제개혁은 세제조사회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

대한 특례를 도입하여, 그 공제기간, 주택차입금 등의 연말 잔고의 한도액 및 공제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2〉 주택차입금이 있는 경우의 공제 (장기우량주택)

거주시작연도	공제기간	주택차입금의 연말잔고 한도액	공제율
2009	10년간	5,000만엔	1.2%
2010	10년간	5,000만엔	1.2%
2011	10년간	4,000만엔	1.2%
2012	10년간	3,000만엔	1.0%
2013	10년간	2,000만엔	1.0%

위의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장기우량주택의 경우 비용을 차입(loan)하여 집을 사고, 2009~2011년 사이에 입주한 경우 10년간 합계 최대 600만엔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폭이 확대되었다[5]. 입주시기가 2012년이면 400만엔, 2013년이면 300만엔이 최대 공제액이다.

일반 주택 · 맨션의 경우 2009~2010년에 입주하면 최대 500만엔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주택이라 하더라도 건축연수가 그다지 오래 되지 않았으면 원칙적으로 공제대상이 된다. 지불하는 소득세가 공제액에 달하지 않는 경우, 개인주민세로부터도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수입이 적어 소득세가 많지 않은 사람이라도 주택 융자 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주민세의 공제액 상한은 97,500엔이다.

나) 주택의 신축 및 개량한 경우의 소득세액 특별공제 도입

내구성 및 내진성(耐震性), 에너지 절약 성능이 높고 일반주택보다 수명이 긴 장기우량주택의 신축 또는 취득 후 2011년까지 입주한 경우는 일정 요건하에서 주택 신축 비용에 관한 표준적인 성능강화비용 상당액(1,000만엔을 한도로 함)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해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특별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6].

또한 기존 거주자가 거주하는 가옥에 대해 에너지 절약형 공사를 하고, 2009~2011년 사이에 실제로 거주한 경우 에너지 절약형 공사 비용과 표준적인 공사비용 상당액 가운데 적은 금액 (200만엔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한 경우는 300만엔)을 한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해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가옥 내에 장벽 제거(barrier free) 개수공사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20만엔을 한도 비용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토지세제

토지와 관련된 고정자산세에 관해서는 과세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부담수준의 균형화 · 적정화에 노력한 결과, 지역별로 부담수준의 균형화는 상당 정도 진전되었으나 일부는 여전히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2009년도 평가 개정을 고려한 향후의 세부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부담조정조치를 기본으로 납세자의 세부담도 고려하면서 부담의 균형화 · 적정화 촉진을 꾀하고 있다.

토지 거래에 관해서는 2009~2010년 2년 사이에 취득한 토지를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시 세금우대를 한다. 토지매각 시의 양도소득에서 1,000만엔을 특별히 소득공제한다. 개인 및 법인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2009년~2010년에 토지를 선행 취득하고, 그 후 10년간에 다른 토지를 매각한 경우, 그 양도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토지매매 등에 관한 등록면허세 경감조치의 일환으

5) 5,000(만엔) × 1.2% × 10(년) = 600만엔

6) 단 그 해의 합계소득액이 3,0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로 현행 세율을 2년간 거치하도록 하고, 2011년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 **토지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현행 1000분의 10)**
  2009. 4. 1~2011. 3. 31까지 1000분의 10
  2011. 4. 1~2012. 3. 31까지 1000분의 13
  2012. 4. 1~2013. 3. 31까지 1000분의 15

- **토지 소유권 신탁 등기 (현행 1000분의 2)**
  2009. 4. 1~2011. 3. 31까지 1000분의 2
  2011. 4. 1~2012. 3. 31까지 1000분의 2.5
  2012. 4. 1~2013. 3. 31까지 1000분의 3

나. 법인세제 및 중소기업 관련세제

2009년 세제개정에는 경기침체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체력이 약한 기업을 보호하고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우대세제 및 에너지 절약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우대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세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할 때 높은 수준인 법인세 인하 논의는 세제개혁의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하는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2009년도 세제개정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개정으로는 우선, 에너지 수급구조개혁 추진 설비 등이나 자원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설비 등에 대해 2년간 즉시 상각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투자감세조치를 도입하였다. 또한, 시험연구비에 관한 특별세액공제제도에 대해 특별시험연구비의 범위에 시험연구독립행정법인과 공동으로 행한 시험연구에 관한 비용 및 동 법인에 위탁한 시험연구에 관한 비용을 추가하였다.

2009년 세제개정에서는 에너지 절약·신에너지 설비의 우대도 포함하고 있다. 기존의 에너지 절약 설비의 즉시 상각을 인정하는 것 외에도 공동 열공급 시스템이나 에너지 절약형 가전 제조라인 등 기업이나 가정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이 있는 설비투자도 상각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관한 2009년도 세제지원안을 살펴보기에 앞서 일본의 중소기업 우대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에서는 대기업에 비해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하는 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를 하는 이유는 기업 수로는 전체 기업의 90% 이상, 고용자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고용 확보의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대세제는 대상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일본경제의 회복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세특별조치법을 활용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경감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이 기계 등을 구입한 경우 법인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투자촉진세제' 등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인재투자촉진세제, 감가상각특례, 엔젤세제 등이 있다.

〈표 3〉 중소기업 관련 주요 우대세제

	내용
투자촉진세제	설비투자의 취득가격의 일부를 세액공제
인재투자촉진세제	교육훈련비의 일부를 세액공제
감가상각 특례	일정액 미만의 물건을 구입한 경우 즉시 상각
엔젤 세제	벤처 기업에 출자한 기업가에 세부담을 경감

이상과 같이 이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우대를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2008년 하반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경기 악화의 영향을 중소기업이 더욱 심하게 받고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여당 내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그 결과 2009년도 세제개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은 개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우선, 자본금이 1억엔 이하의 회사 등 중소법인[7]에 대해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연간 800만엔 이하의 부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18%로 인하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은 법인세율의 본칙 30%에서 이미 22%로 경감하고 있으나, 2009년도 세제개정은 22%에서 4%p를 더 낮추는 조치이다. 대상기간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적자로 전락한 경우는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의 일부를 환급하는 '소급환급' 제도도 대폭 확충한다. 또한 설립 후 5년 이내의 기업만 이용할 수 있으나 2009년도 개정에서는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였다. 이는 2009년 2월 1일 이후의 사업연도가 대상이 된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환급액은 아래의 식과 같이 구해진다.

소급환급액 = 전기법인세액 × (당기결손금액/전기소득금액)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전기(前期)의 소득이 200엔이고 당기에 80엔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급환급액은 24엔이 된다[8].

다. 상속세제

일본의 상속세에 관해 세제조사회는 ① 상속세의 과세상황으로서 연간 사망자 가운데 상속세 과세가 발생하는 비율이 4% 정도까지 감소하였다는 점과, ② 사회정세로서 고령자 세대 내의 자산 격차가 차세대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③ 노후의 부양을 사회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 고령자의 자산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의 자산배분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과세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과세방식(유산취득과세를 전제로 상속세 총액을 유산총액과 법정상속인 등에 의해 계산하는 방식)은 ① 동일한 금액의 자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세액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재산취득자의 수평적 공평이 저해)는 점과, ② 한 사람의 상속인이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에도 추징세액이 발생한다는 점, ③ 거주 등의 계속을 배려한 현행의 각종 특례는 현행 방식하에서는 거주를 계속하지 않는 다른 공동상속인 등의 세부담도 경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례의 확충은 과세 공평성이란 측면에서 불평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를 이유로 세제조사회는 상속세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10].

상속세와 관련하여 주목할 세제로 중소기업 후계자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승계세제'가 있다. 사업승계세제는 상속에 의해 중소기업을 계승하는 경우 공장 등이 있는 사무용 토지는 과세가격의 80%, 비상장주식은 과세가격의 10% 감액하여 상속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 상속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세제이다.

그런데 현행 세제는 토지와 주식 간에 감액률에 큰 차이가 있어 중소기업 업자들은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도 80%의 감액을 요구하여 왔다. 2009년도의 세제개정에서는 고용의 80%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하는 비상장주식의 과세대상액을 80%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

7) 중소기업은 ① 보통법인 가운데 각 사업연도 종료 시에 자본금 혹은 출자금액이 1억엔 이하 이하인 기업 또는 자본 혹은 출자가 없는 기업 (보험업법에 규정하는 상호회사 등은 제외), ② 공익법인 , ③ 협동조합, ④ 인격이 없는 사단 등을 가리킨다.

8) (200×30%)×(80/200)=24

10) 본업과 관계가 없는 부동산 등 재산관리 회사나 투자목적 회사는 사업승계세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고 있다. 대상은 제조업은 자본금 3억엔 이하 혹은 종업원 300인 이하, 서비스업은 자본금 5,000만엔 또는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다. 종업원의 80%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 외에 5년 간의 사업승계나 회사를 승계하는 시기 등을 명기한 승계계획을 제출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무당국은 세제우대가 없는 것으로 후계자 이외의 상속인의 세액을 일단 확정한다. 그 후에 후계자가 상속하는 주식의 과세대상액을 80% 감액한 후에 상속세액을 계산하여 경감한다. 사업승계와 관련한 2009년도 상속세 개정은 어디까지나 과세의 이연에 불과하다. 상속을 받은 후부터 5년이 지나더라도 주식을 제3자에 양도한 경우는 그 때에 새로이 유예분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후계자가 사망할 때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나 경영이 파탄한 경우는 납부가 면제된다.

현재 동족회사나 사업용지를 상속하여 과세되고 있는 사람은 연간 약 1만명 정도이며, 현행 사업승계제도에서 감수규모는 수십억 엔 정도이다. 2009년도의 세제개정으로 사업승계에 따른 감세규모는 200억엔~300억엔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1].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승계과 관련하여서는, 고용확보나 경제활력의 관점에서 더욱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업용 자산을 지니고 있지 않는 자와의 과세 공평성이나 친족 간의 상속 (세습)에 의한 사업승계를 지원하는 것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정부와 전문가 사이에서 존재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라. 자동차과세

일본에서 자동차와 관련한 주요 과세로는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 중량세가 있다. 자동차 취득세는 매매에 따르는 거래세이며, 자동차 중량세는 보유에 따르는 재산세이다. 자동차 중량세는 구입 시와 차검[12] 시에 지불한다.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일본의 자동차 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자동차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도 세제개정에 자동차 중량세 감세안을 포함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 사이에 차검을 받는 자동차의 경우, 환경친화 정도에 따라 50, 70, 100%의 3단계로 나누어 자동차 중량세를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등은 중량세를 100% 감세, 즉 면제한다. 이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연비나 배출 유해물질 양 등에 따라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경감 폭이 결정된다.

현행 중량세는 구입 시와 차검 시에 부과되는 데 자가용차로 차체 중량 0.5t마다 연 6,300엔이 부과된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많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예컨대 200만엔의 하이브리드 차(1.5t)를 구입한다고 하면 3년간 약 6만엔의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 중량세는 신차만이 아니라 이미 구입한 차도 차검 시에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경감 폭은 신차와 마찬가지로 50~100%이다. 신차를 구입한 때에는 중량세를 3년분 납부하므로, 가령 대상차를 연내에 구입하였더라도 감세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약 3년 뒤인 첫 차검을 받을 때이다.

2009년도의 세제개정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

11) 제도 변경에 따른 감수규모 전망에 대해서는 〈표 5〉에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음.

12) 차검이란 '자동차 검사등록제도'의 통칭으로 자동차나 배기량 250cc 이상의 자동이륜차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신차는 3년, 이후 매 2년)마다 국토교통성이 검사하고,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기 위해 등록하는 제도이다.

게는 유리하게 되어있으나, 감소 폭이 크다고는 할 수 없어 2008년 하반기 이후 일본의 자동차 업계에 밀어닥친 불황의 여파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다.

〈표 4〉 차량종류별 감세율

차량 종류		감세율 (자동차 중량세)
하이브리드 차 등		100% (면세)
승용차, 경자동차	연비기준 +25%	75%
	배기가스 규제 ▲75%	
	연비기준 +15%	50%
	배기가스 규제 ▲75%	
중량차	연비기준 달성	75%
	배기가스 규제 신장기규제 달성	
	연비기준 달성	50%
	배기가스 규제 현행 규제 ▲10%	

마. 금융 · 증권세제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세제개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현행의 7%(주민세 포함 10%) 경감세율을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상장주식의 배당에 관한 원천징수세율 특례연장을 1년 연장하였다.

둘째, 기업형 확정갹출연금에 대해 사업주 갹출금을 한도로 하면서 사업주 갹출과 합계하여 갹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행하는 개인 갹출이 도입됨에 따라 개인 갹출금 전액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확정형 갹출연금의 갹출한도액도 아래와 같이 인상하였다.

- **기업형**
  다른 기업연금이 없는 경우 :
  월 4.6만엔 → 월 5.1만엔
  다른 기업연금이 있는 경우 :
  월 2.3만엔 → 월 2.55만엔
- **개인형**
  기업연금이 없는 경우 :
  월 1.8만엔 → 월 2.3만엔

바. 국제과세

글로벌화의 진전과 사업형태의 복잡화 · 다양화로 인해 국경을 초월하는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과세는 일본의 적절한 과세권 확보와 경제활동에 대한 배려나 일본경제의 활성화와 균형(balance)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일본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일본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획득하는 이익의 국내 환류를 위한 환경정비가 요구되는 가운데,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을 환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9년 세제개정에서는 외국세액공제제도에 대해, 기업의 배당정책 결정에 대한 중립성의 관점과 적절한 이중과세 배제를 유지하면서 제도를 간소화하는 관점도 고려하여 간접 외국세공제제도를 폐지하고,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모회사의 익금 불산입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때 외국 자회사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기발행주식의 25% 이상의 주식을 배당 지불의무 확정일 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직접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다.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액을 익금불산입할 때 배당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당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그 배당액에 대해 과세되는 외국원천세 등의 금액은 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

산하는데 손금액이 산입하지 않음과 동시에 외국세액공제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표 5〉 2009년도 세제개정(내국세 관계)에 따른 세수감소액 전망

(단위 : 억엔)

개정사항	보통연도	초년도 (2009년도 감소전망액)
1 주택 · 토지세제		
(1) 주택융자감세 확충	△ 1530[1]	△ 110
(2) 장기우량주택의 신축 및 기존주택의 개수에 관한 세액공제제도의 신규도입	△ 240	△ 110
2. 법인관계세제		
(1) 에너지수급구조개혁추진설비 등 즉시상각제도 도입	△ 850	△ 780
(2) 자원생산성향상촉진세제의 신규도입	△ 430	△ 410
3. 중소기업관계세제		
(1) 경감세율 인하	△ 1100	△ 1100
(2) 결손금 소급환부 적용정지의 폐지	△ 1120	△ 940
4. 상속세제		
(1) 거래시장이 없는 주식 등에 관한 납세유예제도의 신규도입	△ 210	△ 170
(2) 농지 등의 납세유예제도의 개선	△ 80	△ 0
5. 금융 · 증권세제		
확정약출연금제도의 확충	△ 270	△ 50
6. 자동차과세		
자동자중량세 감면조치 신규도입	△ 1020[2]	△ 1020[3]
합계	△ 6850	△ 4690

주: 1) 주택융자 감세 확충에 의한 보통연도 전망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거주분에 대한 개정 후 제도를 적용한 경우의 세수감소액의 평균과 개정전의 제도(2008년 중에 거주용인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를 적용한 경우의 세수감소액과의 차액을 계상한 것임

주: 2) 자동차중량세 감면조치 신규도입에 의한 세수감소액은 특별회계분 (보통연도 △340억엔, 초년도 △340억엔)을 포함함

주: 3) 상기의 계수는 정밀한 조사를 한 결과, 앞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

Ⅲ. 맺음말

2009년 현재 일본은 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이다. 고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경향은 인구구조 고령화를 더욱 촉진시켜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 · 사회적 구조 변화 속에서 일본경제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1992년 버블경제 붕괴 이후 10여년에 걸친 불황에서 벗어나려는 기미를 보이던 일본경제는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심각한 경기침체 국면에 빠져들었다. 세계적인 금융경제 변동에 당면하여 침체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내수 주도의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경제의 체질 전환을 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투자의 활성화,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설비투자의 촉진, 국내금융자산을 활용한 소비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2009년도 세제개정을 보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세제개혁이라기보다는 당면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감세 위주의 대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감세정책이 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것인지, 또한 당면한 경기침체를 위한 세제개정과 중장기적 개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정이 어떠한 유기적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가 앞으로의 일본 세정을 둘러싼 중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iPf

<참고문헌>

원종학, '2005년도 일본의 세제개편',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2005

財務省, ·『平成21年度の税制改正に關する答申』, 2008

_____ ·『平成21年度税制改正の大綱』, 2008

_____ ·『平成21年度税制改正の要綱』, 2009

_____ ·『抜本的な税制改革に向けた基本的考え方』, 2007

http://www.mof.go.jp/jouhou/syuzei/syuzei.htm

27) 사후관리: 세무행정비용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동향 09-01

요 약

■ 프랑스 대통령 Nicolas Sarkozy는 지난 2008년 12월 현 국제적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260억 규모의 경기부양 종합대책 발표
- €114억은 VAT 조기 환급 및 R&D 세액공제의 환급, €105억은 공공부문 투자지원, €19.6억은 고용지원, €18억은 주택건설지원 등에 투입

■ 일본 재무성은 지난 2008년 12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경기회복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주택 · 토지세제, 법인관련 세제, 상속세제, 금융
- 증권세제, 국제과세, 자동차관련 세제 등에 대한 세제개정안 발표

■ 미국 행정부는 자동차산업 지원과 조세회피방지 노력을 강화
- 자동차 제조업체에 긴급자원 지원과 함께 경영자 보수 손금한도를 제한하고 버뮤다와 같은 조세피난처 국가에 대한 세제강화 법안을 마련 예정

1. 프랑스 경기부양 종합대책

■ 프랑스 대통령 Nicolas Sarkozy는 지난 2008년 12월 4일 현 국제적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경기부양 종합대책(massive stimulus package)을 발표
- 이는 €260억 규모로 프랑스 GDP의 약 1.3%에 달하며, 소비보다는 주로 투자에 초점이 맞춰짐
  - 구체적으로 €114억은 VAT 조기 환급 및 R&D 세액공제의 환급에, €105억은 공공부문 투자지원에, €19.6억은 고용지원에, €18억은 주택건설지원 등에 투입될 예정
- 각 분야별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 민간부문 투자지원
- 2009년부터 VAT 환급액의 조기지급 및 R&D 세액공제의 환급을 통해 민간에 €114억을 제공
  - 현재 프랑스에서는 연구개발비 중 35~50%를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종합대책에 의하면 R&D 세액공제액이 계산된 이후 3개 과세기간 동안 공제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에 즉시 환급 예정
  - 손실법인 및 R&D 세액공제액을 차감할 만큼 법인세 납부세액이 충분하지 않은 법인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

• 신규투자에 대해 사업소세(taxe professionnelle) 전액 면제

■ 공공부문 투자지원

• 기간시설(infrastructure), 영구 시설물(développment durable), 문화유적(patrimoine), 고급 연구 · 국방산업 등 4분야에 투자지원

– 공공부문 직접투자 및 EDF나 GDF Suez와 같은 대기업에 의한 간접투자에 각각 €40억을 할당

– 약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약 €25억 규모의 VAT 조기 환급을 허용

■ 고용지원

• €7억 규모의 감세조치를 통해 1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2009년 신규채용 직원에 대해 최소임금의 1.6배까지 보상하는 것이 가능

• 해고된 근로자의 직업교육 등을 위해 €5억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

• 실업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RSA, Revenu de solidarité) 외에 2009년 첫 세 달 동안 €200의 현금을 지원

– 이는 €7.6억 규모로 약 3.8백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주택건설 지원

• 2009~2010년 동안 주택건설, 신규 주택구입을 위한 제로금리 대출 확대, 교외지역의 재개발 등에 €14.5억을 지원

• 거주지 개선사업과 환경위생 사업에 €2억을 지원

• 숙박시설(accommodation) 등에 €1.6억을 지원

■ 자동차산업 지원

• 프랑스의 자동차 업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보조금(rebate)을 €1,000으로 인상

– 이는 €2.20억 규모로 CO_2배출량이 160g/㎞ 이하인 차량에 한함

• 제조사와 정부가 €3억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설립하여 하도급업체 지원

2. 일본의 2008 세제개편

■ 일본 재무성은 지난 2008년 12월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경기회복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주택 · 토지세제, 법인관련 세제, 상속세제, 금융 · 증권세제, 국제과세, 자동차관련 세제 등에 대한 세제개정안 발표

■ 주택 · 토지세제

• 주택세제

– 주택융자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 최대공제가능액을 500만엔(장기우량주택의 경우에는 600만엔)으로 인상

– 장기 우량주택의 신축 등을 하는 경우나 에너지절약 및 장벽제거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세액공제제도 신설

• 토지세제

– 2009년과 2010년에 취득하는 토지를 5년 초과하여 소유하고 양도할 때의 양도이익에 대해 1,000만엔을 공제하는 장기양도소득 특별공제제도 신설

– 사업자가 2009년과 2010년에 토지를 선행취득하고, 그 후 10년 내에 다른 토지를 매각했을 경우, 그 양도이

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신설

- 토지의 매매 등과 관련되는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감 세율을 2년간 더 적용하고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 법인관련 세제

• 에너지수급 구조개혁 추진 설비나 자원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설비 등에 대해서 2년간 즉시상각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투자감세 조치 도입

• 중소법인 등의 경감세율을 현행 22%에서 18%로 2009년부터 2년간 인하

■ 상속세제

•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원활화를 위해 비상장주식 등과 관련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유예제도 도입

- 경영승계상속인이 비상장회사를 경영하고 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 그 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해 경영하는 경우 그 경영승계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 중 상속 등에 의해 취득한 의결권 주식 등(상속 개시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의결권 주식 등을 포함하고 그 회사의 발행제의결권주식 총수의 3분의 2까지)과 관련되는 과세 가격의 80%에 대응하는 상속세의 납세를 유예

- 그 결과 약 50,000개의 기업이 월별 신고대상자에서 분기별 신고대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증권 · 금융세제

• 상장주식 등의 배당소득 및 양도이익에 대해 현행의 7% 경감세율을 3년간 연장

• 확정기여형 연금에 대해서 개인기여(매칭기여)를 도입함과 동시에 기여금 전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고 기여한도액을 인상

- 기업형 연금의 경우 다른 기업연금이 없는 경우 현재 월 46,000엔에서 51,000엔, 다른 기업연금이 있는 경우 현재 월 23,000엔에서 25,500엔으로 인상

- 개인형 연금의 경우 현재 월 18,000엔에서 23,000엔으로 인상

• 일반생명보험료 공제와 별도로 4만엔의 간호의료보험료 소득공제 신설

■ 국제과세

• 일본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획득하는 이익이 국내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간접외국세액공제제도 대신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 모회사가 익금불산입하는 제도 도입

-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의 주식 등을, 배당 등의 지불 의무가 확정되는 날 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외국법인을 말함

- 2009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외국자회사로부터의 배당 등에 적용

■ 자동차 과세

• 일정한 배기가스 성능 · 연비 성능 등을 갖춘 자동차와 관련되는 자동차 중량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 2009. 4. 1.~2012. 4. 30. 기간에 받는 신규 · 계속검사(해당 기간 내에 최초로 받는 검사에 한정) 시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 중량세에 대하여 배출가스기준 및 연비성능 등에 따라 과세면제, 75% 세율 경감, 50% 세율 경감

3. 미국의 경영자보수 손금한도 및 조세회피방지 노력

■ 부시행정부는 2009년 1월 5일 Big2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하여 1,740억달러,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

- 2008년 12월 자동차업계의 재정지원을 위해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공화당 상원의 반대로 기각되자, 긴급경제안정화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 EESA)의 부실자산프로그램(TRAP)으로 지원
- 이번 자금지원으로 General Motors Corp.와 Chrysler LLC.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

■ 재무부(Treasury)는 부실자산프로그램(TRAP)의 지원을 받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영자에 대한 보수에 대한 규정을 강화

- 최고 5명의 경영진에 대한 보수 손금산입 한도는 1인당 $500,000로 제한
- 보수에 대한 손금제안 규정 이외에 별도의 세제지원은 없음

■ 2008년 12월, 버뮤다(Bermuda)에 본사를 둔 3개의 대기업[1]은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조세정책을 대비하기 위하여 스위스로 본사 이전 계획을 발표.

- 2009년 새로운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버뮤다(Bermuda) 같은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향후 조세회피를 막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
- 오바마 당선자는 상원의원 시절 조세회피남용금지법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였지만, 동 법안에 대한 표결은 이루어지지 못했음
- 대기업의 본사 이전 국가로 스위스가 선택된 이유는 ① 미국과의 조세조약 체결국이며, ② 스위스 법인세법상 해외자회사의 법인소득은 비과세되기 때문
- 오바마 정부의 조세회피에 대한 정책방향은 종전의 조세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다국적기업(MNE)들의 조세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1) 세계 최대의 보안시스템 제조업체인 Tyco International Ltd, 원유정제시설 설계업체인 Foster Wheeler Ltd 그리고 Weatherford International Ltd임

동향 09-02

요 약

■ 싱가포르 재무부는 1월 22일 의회에 제출한 2009년 예산안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환급 및 일자리 보존을 위한 Jobs credit 제도 도입 등의 세제개편안을 발표

■ 미국 민주당의 $8,250억 규모 경기부양법안이 28일 하원을 통과
- 감세규모는 $2,750억으로 오바마 감세안보다 축소되었는데 공약 중 법인에 대한 고용증진세액공제(New hire tax credit)는 폐기
- 재정지출 축소를 요구하는 공화당 반대로 2월중 상원통과에는 난항 예상

■ 대만은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인 및 가계 지원 조치를 시행
- 법인 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세금납부기한 연장, 가계 상품권 지급 등

■ 덴마크 조세장관은 친환경 자동차세제 개편방안을 제시

1. 싱가포르 2009 예산안

■ 재무부는 1월 22일 의회에 제출한 2009년 예산안을 통해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환급 및 일자리 보존을 위한 Jobs credit 제도 도입 등의 세제개편 내용을 발표하였음

■ 법인세
-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인세율을 현재 18%에서 2010년부터 17%로 인하
- 자선기부 증가를 위하여 IPCs(Institutions of Public Charter)와 기타 승인된 기관에 2009. 1. 1~2009. 12. 31 기간에 기부한 경우 공제율을 200%에서 250%로 인상
- 투자 촉진을 위하여 2010년과 2011년에 사업용으로 기계장치(plants and machinery)를 구입하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 첫 해에 75%를 상각(capital allowance)하는 가속상각 허용
-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009년과 2010년에 결손금 전기이월제도 강화
  - 과거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손실 한도액을 현재 $100,000에서 $200,000로 인상하고 현재 직전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던 것을 과거 3년까지 이월 허용
- 2010년과 2011년에 사업에 필요한 리노베이션 비용을 지출한 경우 현재 3년에 걸쳐 손금에 산입하던 것을 1년에 즉시 손금산입함
- 해외원천소득 과세면제 대상을 해외원천배당, 자회사 이익, 서비스 소득에서 모든 해외원천소득으로 확대
  - 싱가포르에 송금되는 경우 과세가 면제되는 요건을 일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2009. 1. 21. 이전에 싱가

포르 외의 지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2009. 1. 22~2010. 1. 21. 사이에 싱가포르로 송금하는 모든 외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면제됨

■ 소득세

• 2009 과세연도에 20%의 소득세 환급(상한액 $2,000) 허용

– 환급은 개인소득세 납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2008년 또는 2009년에 직장을 잃은 납세자들에게 소득세를 최고 24개월간 분할 납부 허용

• 현재 거주용 부동산의 연간가치(net annual value)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2010년부터 거주용 부동산 소유자에게 연간 $150,000까지 과세를 면제함

■ 조세지원제도

• 경기침체기에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으로 Jobs credit 제도 도입

– 1년간 실시하는 임시조치로 고용주가 CPF[1] (Central Provident Fund)가입자인 각 근로자의 월급여 중 $2,500에 대하여 12%의 현금보조(cash grant)를 받음

• 창업기업에 대한 과세면제의 적용범위 확대

– 창업기업의 경우 최초 3년간 과세소득 $100,000까지 100%, $100,000 초과 $200,000까지는 50% 과세면제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적용대상에 Companies Limited by Guarantee[2] 포함

■ 기타세제

• 재산세

– 산업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2009년 재산세(property tax)의 40% 환급

– 많은 개발사업자들이 개발사업 계획을 연기함에 따라 개발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9. 1. 22.부터 개발이 승인된 토지에 대하여 2년간 재산세 납부 연기

– 호텔에 대한 재산세를 2009. 1. 1.부터 25%로 인상하기로 하였던 것을 1년 연기함으로써 2009년 세율은 20% 그대로 유지

• 도로세

– 2009. 7. 1.부터 자동차, 버스, 택시에 대하여 1년간 30%의 도로세 환급

• GST

– 2009. 4. 1.부터 항공기에 대한 0세율 적용범위가 재화 및 승객의 국제수송을 위한 모든 항공기, 적격한 항공기의 판매 · 유지 · 수선 서비스로 확대

– 와인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와인전시회 및 콘퍼런스에 사용될 일정량 규모의 와인에 대하여 GST를 감면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3월에 발표할 예정

• 디젤세

– 현재 디젤택시 소유자에게 연간 $5,100의 디젤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2009. 3. 1.부터 1년간 부과하지 않음

1)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실시하는 정부 주도에 의한 저축

2) 회사의 한 형태로 사원(members)의 책임이 청산시 분배받는 자산금액으로 제한되는 회사

2. 미국 민주당의 경기부양법안(Economic Stimulus Bill)

■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했던 부양안(stimulus plan)보다 재정지출은 확대되고, 감세규모는 축소된 경기부양법안(stimulus bill)이 민주당 발의로 28일 하원(House) 통과

- 총 8,250억달러 중 재정지출로 5,500억달러, 감세규모는 2,750억달러로 배정
  - 인프라구축, 과학, 에너지, 교육과 의료분야에 재정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도모에 중점
  - 감세규모가 감소 :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Making Work Pay tax credit는 일부 수용, 고용증진세액공제(new hire tax credit)는 폐기

주요 내용	오바마의 경기부양안	민주당의 경기부양법안
• 감세규모 (총예산규모)	$3,000억 ($6,750억~7,750억)	$2,750억 ($8,250억)
• Making Work Pay tax credit	연소득 $200,000 이하인 가구에게 $1000(근로자: $500)의 세액환급	추가 최저한세 적용배제 대상에서 제외
• New hire tax credit	법인에게 1년간 신규고용 1인당 $3000의 세액공제	폐지 (경기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창출 효과 불확실성)
• 결손금 소급공제	소급공제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추가 TRAP[3]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적용 제외
• 50% 가속상각법	50%의 추가 감가상각비 손금인정 기간을 2년 연장	좌동 (부시정부의 감세정책 일몰규정확대)

- 민주당의 법안에 생애주택첫구입세액공제 요건 폐지, EITC와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확대, 고등교육비세액공제 신설($2500 tax credit for higher education costs), 재생에너지 및 환경보존에 대한 세액공제, 고실업률 지역 개발 채권에 대한 이자면제와 세액공제 등이 추가될 예정

■ 하원은 1월 28일 법안을 표결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Senate) 논의 과정과 2월중 경기부양법안 통과에 난항 예상

- 공화당 하원의 비판 : 감세규모는 확대되어야 하고, 즉각적인 경기부양을 도모하지 못하는 재정지출(예: 과학, 교육과 의료분야)은 축소되어야 함
  - 상원에서는 Making Work Pay tax credit에 대한 최저한세(AMT) 적용배제 필요성을 재고려 예정
- 민주당의 반박논리 : 선제적인 고용창출을 통한 소비주체의 체질 강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각 경제주체의 경쟁력을 강화

3. 대만의 경제위기 대응 조세정책

1) 결손금 공제기한 연장[4]

■ 2009년 1월 6일 법인의 결손금 이월공제 기한을 현재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음

- 경제위기 때문에 손실이 난 6만여 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결손금의 이월공제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함
- 세법 개정으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특히 국제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곤란을 겪고

3) 2008년 10월에 통과된 긴급경제안정화법에 따른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 정부가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공정가액으로 매입 또는 보증을 수행
- 2009년에는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서 부실자산프로그램의 자금을 일부 지원

4) http://www.taipeitimes.com/News/taiwan/archives/2009/01/07/2003433123

있는 DRAM 산업 및 평판(Flat-panel) 제조업체 등이 혜택 수혜

2) 세금납부기한 연장

■ 대만 재정부가 2009년 1월 21일 밝힌 바에 따르면 실업 상태에 있는 개인과 재무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최대 3달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납부를 연기받을 수 있음
- 다만, 납부기한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인의 경우 순영업수익(net operating revenue)이 i) 작년 4/4분기에 30% 이상 감소하였거나 ii) 이번 달로부터 1년 전의 4월까지 30% 이상 감소하였다면 최대 세 달 동안 세금의 납부를 연기받을 수 있음
- 대만 국내기업 중 1/3 이상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작년 하반기 동안 200,000개 이상 기업의 이익이 30% 이상 감소했음
- 세금의 납부를 연기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번 연도 말 이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함

■ 개인의 경우 저소득자거나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는 최대 3개월 동안 소득세의 납부를 연기받을 수 있음
- 법인과 동일하게 이번 연도 말 이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추가적인 세부사항들은 다음 달에 공표 예정
- 사실상 빈곤층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납부이연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2009년 1월 17일 재무부장관의 발언 내용에는 납부기한 연장 이외에도 분납에 관한 내용 역시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발표에는 분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

3) 상품권 지급

■ 대만 정부가 소비 진작 목적으로 2009년 1월 18일 모든 대만 국민에게 NT$3,600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음
- 상품권 지급의 궁극적인 목적이 민간소비 촉진이기 때문에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키로 함
- 전국에 있는 14,202개의 수금센터(collection center)에서 상품권 지급 대상자의 약 91.29%에 해당하는 21백만 이상의 개인이 이 날 상품권을 수령
- 대만 정부에선 약 23,260,000명으로 상품권 수혜자 추산
- 1월 18일에 상품권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정 연휴가 끝난 후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

■ 20세 이상의 대만인의 경우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상품권 통지서를 지참하고, 지정 장소에 방문하면 상품권 수령 가능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상품권을 대신하여 수령 가능하며, 미성년자 본인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호적카드(household registration card)만으로도 충분
- 대만인과 혼인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거주자 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 카운터에서 상품권을 수령해야 함
- 직접 상품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효한 ID와 호적을 갖고 있는 다른 대만인을 통해 상품권을 대리수령하는 것 또한 가능

- 이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 후 자신의 신분증 또는 외국인 거주자 등록증을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하는 대만인에게 전달해야 함

■ 2009년 9월 30일까지 상품권을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초과하면 무효가 됨

• 액면가액 NT$500 상당의 상품권 6장과 액면가액 NT$200 상당의 상품권 3장, 모두 9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 식별이 불가능해 타인이 사용하더라도 제재불가

• 구입품목에는 제한이 없으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상가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면제되는 노점상, 의료 · 복지 · 교육기관 등에서는 사용 불가

■ 정부가 상품권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위해 국회에 특별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며, 2008년 12월 26일 국회의 최종적인 승인을 받음

• 2008년 12월 5일에 〈상품권 지급에 관한 특별법(振興經濟消費券發放特別條例)〉이 통과, 2008년 12월 26일에는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

4. 덴마크 친환경 자동차세

■ 덴마크 조세장관 Kristian Jensen은 지난 2008년 12월 8일 교통체증, 소음, 공기오염, CO_2 방출량을 줄일 목적으로 자동차세의 근본적인 개혁안을 발표

• 자동차 등록세 인하

- 25%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차량 가격의 180까지 인하[5)]

• 녹색차량세(green driving tax) 부과

- 혼잡성 : 자동차세를 자동차가 사용되는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차등 부과
- CO_2 및 환경 : 자동차세를 친환경 차량 및 에너지효율이 높은 차량에 대해 차등 부과
-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 자동차세를 대체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지역에 대해 차등 부과

• 전기차량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저세율 적용

5) 현재 덴마크에서는 자동차가격 중 DKK48,8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5~18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 등록세를 부과. 단, 영업용 차량의 경우 DKK12,1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0~20%의 세율을 적용

동향 09-03

요 약

■ 호주 정부는 2009년 2월 일자리 지원과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420억달러 규모의 Nation Building and Jobs Plan을 발표
- 설비투자 추가공제제도, 경기부양을 위한 보너스 제도 등으로 구성

■ 독일 연방내각(federal cabinet)은 2009년 1월 현 경제위기 타파를 위한 경기부양 종합대책Ⅱ(economic stimulus package Ⅱ)를 승인
- 주요 내용은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 및 개인소득세 최저세율 인하(15%→14%), 자녀보조금 지급(자녀당 EUR 100) 등
- 노르웨이 정부도 NOK20billion의 경기부양 종합대책을 발표

■ 캐나다 재무성은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09 예산안을 발표
- 향후 5년간 조세지출 규모는 C$300억이며 개인소득세 지원규모가 약 C$200억, 법인세 지원규모는 C$18억 수준

1. 호주 경기부양법안

■ 호주 정부는 2009. 2. 3. 일자리 지원과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420억달러 규모의 Nation Building and Jobs Plan을 발표하였으며, 다음의 조세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하여 2009. 6. 30 이전에 취득하여 2010년 이전에 설치하거나 또는 2009. 12. 31 이전에 취득하여 2010. 12. 31 이전에 설치하는 적격자산에 대하여 30% 또는 10%의 추가상각 허용
  - 적격자산이란 금액이 AUD10,000(소기업의 경우 AUD1,000)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호주 내에서 사용되는 자산
  - 조세지출 규모는 2009/10~2011/12에 걸친 3년 동안 약 $27억
- 경기부양을 위하여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1회성 보너스 지급
  - 약 870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Tax Bonus for Working Australian
    - 대상자는 2007-08년도에 납부세액이 있는 개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적격성 판정 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방식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닌 전자이체 또는 수표를 통해 지급할 예정임
    - 보너스 금액은 과세소득이 $80,000 이하인 납세자는 $950, $80,000 초과 $90,000 이하인 납세자는 $650, $90,000 초과 $100,000 이하인 납세자는 $300
  - 약 150만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Single Income Family Bonus
    - 대상가정은 1인의 주된 소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으로 자녀 수와 관계없이 가정당 $950

지급

- 가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부를 지원하기 위한 Farmer's Hardship Bonus
  - 지급액은 1인당 $950이고 약 21,500명의 수취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총지급규모는 $2,040만
- 취학자녀를 둔 150만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Back to School Bonus
  - 2009. 2. 3 현재 취학자녀(4~18세)의 수는 약 280만명이고 적격한 자녀 1인당 $950을 지급하며 총지급 규모는 $26억
- 승인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Training and Learning Bonus
  - 적격한 대상자 1인당 $950이며 총지원규모는 $5억 1,120만

2. 독일 및 노르웨이의 경기부양 종합대책

가. 독일 경기부양 종합대책 Ⅱ

■ 연방내각(federal cabinet)은 지난 2009년 1월 14일 현 경제위기 타파를 위한 경기부양 종합대책Ⅱ (economic stimulus package Ⅱ)를 승인

■ 조세분야 주요 내용

- 개인소득세 기본공제액 인상
  - 현 EUR7,664의 기본공제액을 2009년 1월 1일부터 EUR7,834, 2010년 1월 1일부터 EUR8,004로 인상
- 개인소득세 최저세율 인하(15% → 14%)
  - 또한 개인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과세구간 조정
- 2009년 7월 1일부터 의료보험료율 인하(15.5% → 14.9%)
- 고용보험료율을 2010년 7월 1일 이후에도 2.8%로 유지
- 일회성 정책으로 자녀당 EUR100의 자녀보조금 지급
- 2009년에 9년 이상 소유한 차량을 폐기하고 친환경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EUR 2,500을 지급
- 2009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세를 엔진크기가 아닌 CO_2 배출량에 따라 부과

나. 노르웨이 경기부양 종합대책

■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26일 2009 예산(2009 Budget)의 수정을 통해 NOK20billion 규모의 경기부양 종합대책(crisis package)을 발표했으며, 이는 2월 중순 의회에서 승인될 예정

■ 주요 세법개정 사항

-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 현행 규정에 의하면 결손금은 무기한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소급공제의 경우 회사가 청산한 경우에만 가능
  - 개정안에서는 2008년 및 2009년 한시적으로 각 사업연도 결손금 중 NOK5백만을 한도로 직전 2개 사업연도에 대해 소급공제하는 것을 허용
- 연구개발 세액공제(research and development credit) 한도 확대
  - 현행 규정에 의하면 Norwegian Research Council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 중 20%를 세액공제하는 것이 가능
  - 개정안에서는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자체 연구의 경우 NOK4백만에서 NOK550만으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NOK8백만에서 NOK1,100만으로 인상

3. 캐나다 Budget 2009 발표

■ 1월 27일 재무성이 발표한 2009 예산안은 300CAD(GDP의 1.9%)의 규모로 경기부양 및 190,0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2008~09년과 향후 5년 동안 218억CAD의 조세지출 중 개인의 감세규모가 약 200억CAD, 법인에 대한 조세혜택은 18억CAD로 구성

〈증치세법 개정내용 비교 〉

(단위 : 백만CAD)

	2008-2009	2009-2010	2010-2011	2011-2012	2012-2013	2013-2014	합계
개인소득세							
인적공제와 과세구간 조정	470	1,885	1,950	2,055	2,180	2,320	10,860
근로장려세제 확대	145	580	580	585	585	585	3,060
연령세액공제 확대	80	325	340	360	380	405	1,890
주택개조세액공제(신설)	500	2,500	-	-	-	-	3,000
생애첫주택세액공제(신설)	30	175	180	185	185	190	945
주택구매계획 한도 증액	-	15	15	15	15	15	75
광물 탐사세액공제 확대	-	70	△15	-	-	-	55
RRIF/RRSF의 사후손실	30	-	-	-	-	-	30
(소계)	1,255	5,550	3,050	3,020	3,345	3,515	19,915
법인세							
소기업 적용 기준 상향	-	45	80	80	90	100	395
50% 가속상각법 적용 연장	-	-	-	320	530	140	990
컴퓨터 즉시상각(신설)	-	340	355	△125	△160	△105	305
이자 공제	-	-	-	-	80	105	185
(소계)	-	385	435	275	540	240	1,875
합계	1,255	5,935	3,485	3,475	3,885	3,755	21,790

자료: 캐나다 재무성, Canada's Economic Action Plan Budget 2009, January 2009, p.254

■ 개인소득세 부분의 감세정책

• 인적공제와 과세구간에 대한 물가연동

– 인적공제(personal amount)는 9,600CAD에서 10,320CAD로 7.5% 증액

–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 상한을 37,885CAD에서 40,726CAD로, 22%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 상한을 75,769CAD에서 81,452CAD로 증액

• 근로장려세제(Working Income Tax Benefit; WITB[1])의 확대

– 세액공제율(Phase-in rate)을 20%에서 25%로 인상하고 세액공제 상한을 가구구성에 따라 1.5~1.8배로 증액

– 2007년 도입 당시 1백만 근로가구가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2009년 예산안으로 세제지원 대상이 1.5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

〈증치세법 개정내용 비교 〉

(단위 : CAD)

구분	기준근로소득		세액공제율		세액공제 상한	
	종전	예산안	종전	예산안	종전	예산안
독신근로자	3,000	좌동	20%	25%	522	925
부부 또는 자녀부양 가구					1,044	1,680

주 : 세액공제의 상한이 적용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감소되는데 감소비율(Rediction rate)은 15%로 변동 없음

• 65세 이상인 고령자에 대해 적용되는 연령세액공제(Age credit)를 1000CAD증액

• 주택시장에 대한 세제지원

– 주택개조세액공제(Home Renovation Tax Credit) : 2009년 1월 27일부터 2010년 2월 1일까지 주택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적격 지출비용이 1,000CAD 초과

1)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2007년부터 도입된 환급형 세액공제로 기준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세액공제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

하는 경우(한도 10,000CAD), 초과비용의 15% 상당액을 세액공제로 허용

- 생애첫주택세액공제(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 1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개인에게 주택구입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750CAD의 세액공제를 지원
- 주택구매계획(Home Buyers' Plan; HSP[2])의 상환금 증액: HSP를 통해 은퇴연금저축(Registered retirement Saving Plan; RRSP)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20,000CAD에서 25,000CAD로 증액

■ 법인세 부분의 감세정책

• 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11%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소기업의 소득판정 기준을 400,000CAD에서 500,000CAD로 상향조정

•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 컴퓨터 부문 취득시 즉시 상각 인정 : 2009년 1월 27일부터 2011년 2월 1일까지 취득하는 컴퓨터 기기와 시스템소프트웨어에 대한 감가상각비율을 100%로 하여 즉시 상각 처리 가능
- 50% 정액 가속상각법 적용 연장 : 2007년부터 적용되던 제조업 기계설비에 대한 50% 정액 가속상각법을 2010~2011년까지 적용하도록 연장
- 기계장치와 설비에 대한 관세를 면제

• 이자비용 공제 제한 규정 삭제

2) HSP는 생애첫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은퇴연금저축(RRSP)에서 20,000CAD 까지 자금을 인출하여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하게 해주는 금융지원제도로, 생애첫주택 구입자는 동 자금을 향후 15년간 분할 상환하여야 함. HSP를 통해 받은 자금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할 납부하지 못한 금액은 과세소득으로 산입됨

정책흐름

-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 2008년 국세징수 실적
- '08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 IMF의 G-20 국가 경제성장전망 수정 발표
- 유가환급금 수령자 설문조사
- 선진 조세체계 구현을 위한 목적세 정비 추진 필요성
- 근로사실이 불확실한 53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미분양주택 취득시 취 · 등록세 50% 감면 확대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 본 자료는 2009년 2월 12일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와 한나라당은 2. 12일(목) 11:00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첫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의

* 참석자 : (정부측) 기획재정부 장관, 1·2차관, 차관보, 세제실장 등
(당 측) 임태희 정책위의장, 서병수 재정위원장,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재정위 위원 등

■ 이 자리에서 당정은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조기에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지원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등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세제개편안 중 법률 개정사항의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Ⅰ. 추진 배경

◇ 성장 둔화, 일자리 부진 등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조기 추진

•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

• 민생 안정을 위해 선별적·직접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신속한 세제지원 추진

⇒ 시급한 세법 개정수요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추진

1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활성화 세제지원

• 미분양주택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조기 정상화를 위해 세제지원 추진

☞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 미분양주택에 투자한 리츠·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재산세 소급감면에 따른 종부세 추징배제

2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 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 민간의 일자리 나누기 실천노력 분담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역할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추진

☞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
☞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세제지원 도입

3 중산 ·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 경기침체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에 대비하여 중산 · 서민층 세부담 경감 추진

☞ 퇴직소득세액공제(세액의 30%) 도입
☞ 교복 구입비용을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추가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Ⅱ. 추진 내용

1.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활성화 세제지원

추진 필요성

■ 높은 수준의 미분양 물량이 지속되고, 경기침체로 수요 위축이 심화되면서, 단기간 내 해소가 곤란한 상황으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보완 필요

• '08. 11월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은 16.3만호(지방 13.7만호)로 외환위기 당시 수준(10.3만호)을 크게 상회

* 미분양 추이 : ('06. 말)73,772호 → ('07 말)112,254호 → ('08. 11월말)162,570호

〈미분양주택 현황(호, '08. 11말 기준)〉

구 분		계	과밀억제권역 밖	과밀억제권역 안
합 계		162,570	150,104	12,466
수도권	서울	2,263	-	2,263
	경기 · 인천	23,603	13,400	10,203
지방		136,704	136,704	-

세제지원 방안

1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 지원방안

• 적용시한 : 대책발표일(2. 12)부터 금년 말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

• 양도세 면제방법 및 적용지역

–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 5년간 양도세 50% 감면 ⇒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

* 과밀억제권역 : 서울, 인천 및 경기 14개시

◆ 서울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 옹진군 등 제외)
◆ 경기 14개시(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방법

–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하여 과세

• 신축주택의 범위

– 대책 발표일부터 금년 말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기존 미분양 주택 포함)

–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면적 149㎡(45평) 이내, 신축주택 수에는 제한 없음

• 기타 세제관련 사항

– 신축주택 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원까지 비과세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 추진계획 :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 미분양주택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 지원방안

•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CR-REITs: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 부여

【세제지원대상 펀드】

• 펀드의 취득 부동산이 모두 미분양주택

• 펀드의 존립기간 : 4년 이내

• 주공이 펀드로부터 잔여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약정 체결

【세제지원 내용】

① (종부세) "미분양주택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 및 "주공"이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면제

② (법인세) "미분양주택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 및 "주공"이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 양도차익에 대해 30% 세율로 법인세 추가과세

③ (배당소득세) 미분양주택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의 개인투자자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1억원 초과분은 14% 분리과세

■ 추진계획

• (종부세 및 법인세) 종부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 (배당소득세)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3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지원방안

• 【현행】 국민주택규모(85㎡) ·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저당차입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개정】 '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축주택(미분양주택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차입금 상환기간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

※ 적용지역은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지역과 동일

• 적용시기 : 대책발표일 이후 차입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추진계획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참고〉 현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제도

【공제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취득 당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서 3억원 이하인 주택

•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내 차입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계 1,000만원* 한도

*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에는 1,500만원

4 재산세 소급감면에 따른 종부세 추징 배제

■ 필요성

•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소급하여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

– '08년분 주택분 재산세부담을 과표적용률 동결, 세부담 상한 인하를 통해 금년 7월 재산세 부과 시 소급 경감(약 700억원)

〈08년분 주택분 재산세 소급 경감 내용〉

① 과표적용률을 50%('07년 수준)로 동결('08년분 당초과세 : 55%)
② 6억원 초과주택 세부담상한을 130%로 인하('08년분 당초과세 : 150%)

•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종부세 추징문제 발생

◇ 종부세 납부할 세액 = 종부세 산출세액 – 재산세 기납부세액

– '08년분 "재산세 기납부세액"이 소급하여 경감됨에 따라 "종부세 납부할 세액" 증가 ⇒ 종부세 추징문제 발생

– 재산세 경감효과를 달성하고, 소급입법 과세논란에 따른 민원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종부세 추징문제 해결 필요

* 예상추징세액 : 약 100억원, 추징대상인원 : 약 307천명

■ 추진방안

• '08년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 기납부세액은 기 부과·납부된 대로 개정 전 지방세법*에 의하도록 하는 특례 신설

* 과표적용률 55% 적용, 6억원 초과주택 세부담상한을 150% 적용

■ 추진계획 :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

2.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1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필요성

•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고용위기가 확산되고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현 고용수준 유지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강구

■ 지원방안

•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도 '노사간 합의'를 통해 당해 종업원의 '임금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

〈지원대상 요건(안)〉

① (기업규모) 모든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② (경영상 어려움) 감량경영의 필요에 직면한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것

* 매출액 혹은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하였거나,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③ (상시근로자 수 기준)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일정비율(예:5%) 이상 감소하지 않았을 것

④ (임금 기준) 상시근로자(임원 제외)에게 지급된 1인당 임금총액*이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감소하였을 것

*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합계액

■ 추진계획 :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 금융소외자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 세제지원

■ 필요성

• 자산관리공사(KAMCO)는 '08. 12. 29 부실채권 정리기금의 잔여재산(0.7조원)을 금융기관에 분배

* 분배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법인세 : 약 0.2조원

• 금융기관들은 동 분배금을 재원으로 금융소외자 재활지원사업*을 위한 신용회복기금에 출자

– '09. 1. 5 분배금 중 법인세상당액(0.2조원)을 제외한 0.5조원 출자

※ 신용회복기금의 금융소외자 재활지원사업

• 3개월 이상, 3천만원 이하 연체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를 재조정

• 신용등급 7~10등급자를 대상으로 금리 30% 이상인 3천만원 이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

• 금융소외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활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신용회복기금의 출자재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지원 필요

■ 지원방안

• 신용회복기금 출자재원으로 사용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 향후 출자로 취득한 신용회복기금 주식 처분시점까지 과세 유보

※ 법인세상당액(0.2조원)만큼 신용회복기금 출자재원 증가

■ 추진계획 :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3. 중산 · 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1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

■ 필요성

• 대내외 경기악화에 대응한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하는 퇴직자에 대한 세제지원 필요

■ 지원방안

• '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퇴직소득세액공제 도입

– 공제대상 : 퇴직소득자(임원 제외)

– 공제금액 : 산출세액의 30%(한도 : 근속연수×24만원)

* 퇴직소득세 : 퇴직금의 45%를 공제한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안분하여 연간세액을 계산한 후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여 최종세액 산출

■ 추진계획 : 2월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 교육비 소득공제 범위에 교복 구입비용 추가

■ 필요성

• 최근 교복가격 상승에 따라 교복가격* 안정화 및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부담 완화 필요

* 평균 40만~50만원 선 : 동복(20만~30만원), 하복(13만~18만원), 체육복(3만~5만원)

■ 지원방안

• 중 · 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범위에 교복 구입비용 추가

– 고가 교복비를 제외하기 위해 50만원 한도 설정

* 교육비 공제대상 :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등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08년까지는 연간 200만원)

■ 추진계획 : 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

3 주택담보노후연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지원방안

• 【현행】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당해 주택가격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서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중 이자상당액(200만원 한도)을 연금소득에서 공제

*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 만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담보로 연금가입 후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하는 제도

→【개정】 가입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공제요건을 완화

• 적용시기 : 대책발표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비용부터 적용

■ 추진계획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참고〉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제도

• 요건 :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

• 공제 : 지급받은 연금 중 이자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 (연 2백만원 한도)

* 이자상당액은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계산하여 증명서 발급

4. 목적세(교육세 · 농특세) 폐지 추진

추진 필요성

◇ 세제의 복잡성 · 예산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는 3개 목적세(교육세 · 농특세 · 교통세) 폐지('10년 시행) 법안을 '08년 정기국회에 제출

• 농특세법 폐지안 및 교육세법 폐지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

■ 4월부터 본격적인 예산편성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바, 2월중 목적세 정비 완료 필요

• 관계부처 간의 협의는 이미 완료된 상황

– (농특세) 폐지하되, 매년 '09년 농특세 歲入 이상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기로 농림부와 합의

– (교육세) 폐지하되, 교육재정교부율을 20% → 20.5%로 인상하기로 교과부와 합의

추진 계획

■ 2월 임시국회에서 교육세 및 농특세폐지법률안, 주세법 국회통과 추진

※ 목적세 정비 후 지방세 통폐합 추진 예정(16개 → 9개)

구 분	정비 전	정비 후
국세	14개	11개
지방세	16개	9개
계	30개	20개

2008년 국세징수 실적

* 이 자료는 2009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에서 발표한 「2008년 국세징수 실적」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08년 국세수입은 167조 3,060억원으로,

- '07년 실적(161조 4,591억원) 대비 5.8조원 증가(3.6%↑)
- '08년 예산(165조 5,623억원) 대비 1.7조원 초과

☞ '08년 감세규모*(△9.1조원)를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07년 실적 대비 15.0조원(9.3%) 증가한 수준

* 유가환급금 △2.7조원, 유류세 10% 인하 △0.7조원, 할당관세 인하 △0.7조원 등

〈주요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단위 : 조원, %)

구 분	'07 실적	'08년		'07년 실적 대비		'08년 예산 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국세	161.5	165.6	167.3	5.8	(3.6)	1.8	(1.1)
• 소 득 세	38.9	38.0	36.4	△2.5	(△6.4)	△1.7	(△4.4)
• 법 인 세	35.4	36.3	39.2	3.7	(10.6)	2.9	(7.9)
• 부가가치세	40.9	43.9	43.8	2.9	(7.0)	△0.1	(△0.2)
• 관 세	7.4	7.2	8.8	1.4	(18.4)	1.6	(21.8)
• 종합부동산세	2.4	2.9	2.1	△0.3	(△11.8)	△0.7	(△25.8)

■ '07년도 대비 주요 증감요인

- (증가세목) '07년 법인실적 호조에 따라 법인세 증가(3.7조원↑), 수입금액 증가 및 환율 상승에 따른 부가가치세 (2.9조원↑)와 관세가 증가(1.4조원↑)
- (감소세목) 유가환급금 지급(2.7조원)에 따른 소득세 감소(△2.5조원),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판결에 따른 환급으로 종부세 감소(△0.3조원)

Ⅰ. 2008년 세입 개관

■ 2008년 총국세 규모는 167조 3,060억원으로,

- 2007년 국세실적(161조 4,591억원) 대비 3.6%(5조 8,469억원) 증가

(단위 : 조원, %)

구 분	'07년 실적	'08년		'07년 실적 대비		'08년 예산 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국세	161.5	165.6	167.3	5.8	(3.6)	1.7	(1.1)
일반회계	155.4	159.4	160.7	5.3	(3.4)	1.3	(0.8)
특별회계	6.1	6.2	6.6	0.5	(8.5)	0.4	(6.8)

1 회계별 증감 사유

■ (일반회계) 160.7조원으로 2007년 실적(155.4조원) 대비 3.4% 증가(5.3조원↑)

- 법인실적 호조세에 따라 법인세 증가(3.7조원↑), 수입액 증가 및 환율 상승에 따라 부가가치세 증가(2.9조원↑)
- 반면, 유가환급금 지급 및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에 따라 소득세(△2.5조원)는 감소

2 세목별 증감 사유

1 소득세 : △2.5조원 감소

- 고유가에 따른 유가환급금 지급(2.7조원) 및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

* 부동산 등기부등본 접수건수(천건) : ('07)1,967 → ('08)1,881 (△4.4%)

2 법인세 : 3.7조원 증가

- '07년 기업실적 호전으로 전년 대비 증가

* 12월말 법인 당기순이익(조원) : ('06결산)42.2 → ('07결산)48.8 (15.8%↑)

3 부가가치세 : 2.9조원 증가

-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액 증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액 증가로 전년대비 증가

* 수출액(통관기준, 억달러) : ('07)3,622.3 → ('08)4,389.7 (21.2%↑)

* 수입액(통관기준, 억달러) : ('07)3,564.0 → ('08)4,389.7 (22.1%↑)

* 환율(원/달러) : ('07)929.4 → ('08)1,100.1 (18.4%↑)

4 개별소비세 : △0.7조원 감소

- 개별소비세 대상 유류분 소비량 둔화 및 자동차 판매량 감소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감소

* 중유 출고량(천배럴) : ('07)92,797 → ('08)70,875 (△23.6%)

* 자동차 판매량(대수) : ('07)750,362 → ('08)579,315 (△22.8%)

5 증권거래세 : △0.7조원 감소

- 금융위기에 따른 주식거래 위축으로 전년 대비 감소

* KOSPI 지수 : ('07)1,712.4 → ('08)1,529.4 (△10.7%)

* KOSPI 증권거래대금(조원) : ('07)1,363 → ('08)1,287 (△5.6%)

6 관세 : 1.4조원 증가

- 수입액 증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액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

* 수입액(통관기준, 억달러) : ('07)297.0 → ('08)362.7 (22.1%↑)

* 환율(원/달러) : ('07)929.4 → ('08)1,100.1 (18.4%↑)

7 종합부동산세 : △0.3조원 감소

-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판결로 종부세를 환급(△0.6조원)함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

8 주세 : 0.6조원 증가

- 맥주 출고량 증가 및 맥주가격 인상(6.9%↑)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증가

* 맥주 출고량(천㎘) : ('07)1,977 → ('08)2,025 (2.4%↑)

Ⅱ. 세목별 징수실적

(단위 : 조원, %)

구 분	'07년 실적	2008년		'07년 실적 대비		'08년 예산 대비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총 국 세	161.5	165.6	167.3	5.8	(3.6)	1.7	(1.1)
• 소 득 세	38.9	38.0	36.4	△2.5	(△6.4)	△1.7	(△4.4)
• 법 인 세	35.4	36.3	39.2	3.7	(10.6)	2.9	(7.9)
• 상속증여세	2.8	4.0	2.8	△0.1	(△2.3)	△1.2	(△29.7)
• 부가가치세	40.9	43.9	43.8	2.9	(7.0)	△0.1	(△0.2)
• 개별소비세	5.2	4.6	4.5	△0.7	(△12.8)	△0.1	(△2.1)
• 증권거래세	3.5	3.2	2.8	△0.7	(△19.6)	△0.4	(△12.0)
• 인 지 세	0.6	0.6	0.6	△0.0	(△2.6)	△0.1	(△8.8)
• 과년도수입	3.0	2.6	3.8	0.8	(26.8)	1.2	(44.5)
• 교 통 세	11.5	12.0	11.9	0.4	(3.9)	△0.1	(△1.0)
• 관 세	7.4	7.2	8.8	1.4	(18.4)	1.6	(21.8)
• 교 육 세	3.9	4.1	4.2	0.3	(8.2)	0.1	(1.5)
• 종합부동산세	2.4	2.9	2.1	△0.3	(△11.8)	△0.7	(△25.8)
• 주 세	2.3	2.5	2.8	0.6	(24.8)	0.3	(11.9)
• 농 특 세	3.8	3.6	3.8	△0.0	(△1.2)	0.1	(3.3)

'08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 이 자료는 2009년 2월 6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08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08년 세제개편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19개 세법('08. 12. 26 공포) 및 19개 세법 시행령('09. 2. 4, 2.6 공포) 후속조치로서 16개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임

※ 현재 국회 계류중인 3개 법률안(교육세 · 농특세 폐지 법률안, 주세법 개정법률안)은 2월 임시국회 통과 추진

◇ 개정대상 시행규칙

- 내국세(14개) :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세무사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 · 축산 · 임 · 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 관 세 (2개) : 관세법, 시장접근물량 증량 규칙

  *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은 1. 23(금) 공포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중 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계획임

세제개편 후속조치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양도세 등이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 등의 범위 축소

■ 현재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개인소유 토지는 60%의 양도세율 적용, 법인소유 토지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30% 추가 과세

■ 아래의 토지 등에 대해서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세부담을 대폭 경감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기업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맺고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②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관리대상기업과 채권은행 간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 약정을 맺고 해당 약정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

* 채권은행간 거래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기업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와 거래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공동관리절차를 규정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공장 등의 준공이 불가능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리기관에 양도하는 토지

④「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해당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아 해당 명령 또는 이행계획 등에 따라 매각하는 토지

* 신협중앙회,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등 포함

** 보유자산 처분, 출자금 감소, 점포 · 조직의 축소 등 경영개선 권고 · 요구

⑤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⑥ 한국원자력연구원 시험농장용 토지

⑦ 방조제 공사로 인한 어민 생계대책으로 정부가 배정한 간척지를 취득하여 실제 자경한 농지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설비투자 · 인력개발비의 범위 확대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20%) 대상에 신 · 재생 에너지 제조설비로 사용되는 '모노실란 공법' 의 태양전지용 실리콘 제조설비 추가

* 모노실란 공법 : 실리콘 원석에 모노실란 가스를 투입하여 실리콘 생산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임시투자세액공제(10%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발전설비, 선박설비 등 초대형 화물의 증가를 감안하여 초대형 화물운송차량(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 추가
- 기업의 고유업무 성질상 대량 보유하고, 수익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20만원 이상의 비품 추가(예: 호텔업 침대, 주방설비 등)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장애인 등 편의증진 시설(7% 세액공제)에 장애인 고용시설 추가

- 장애인용 작업대 · 작업보조 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의 통근용 승합 자동차 및 특수설비 등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 일반기업 : 지출액×3~6%, 증가분×40%, 중소기업 : 지출액×25%, 증가분×50%

-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 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 해외 유명호텔 등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훈련비용

⇒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보완

■ 농어민 지원을 위해 면세유 공급대상 기자재*의 대상 확대

※ 현재 농업용 34종(순환식 곡물건조기 등), 어업용 13종(수산물 건조시설 등)

- 농업용 3종 : 보통형 콤바인, 연속식 곡물건조기,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 어업용 1종 : 가시파래 건조시설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석유류부터 적용

■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유 공급 유종에서 경유를 제외

⇒ 〈적용시기〉 '10. 1. 1 이후 공장 출고 난방기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보완

* 매입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에 적용되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은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농수산물 구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

■ 영세한 개인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6/106에서 8/108로 확대

※ '08. 12. 5, 국회 재정위원회(조세소위)에서 확정 발표

• 다만, 법인 사업자인 음식점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대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허용

* 예시 :호텔 · 예식장 · 골프장 · 휴양시설 부속식당, 대규모 전문식당 등

■ 기타 업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현행과 같이 2/102 적용

• 다만, 법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

⇒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이유

• 과표양성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취지를 감안할 때 법인사업자는 이와 무관한 측면이 있음(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도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

• 기타 업종의 법인사업자는 제과 · 제빵 · 주류 · 사료 제조회사, 대형 유통점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 지원취지와 맞지 않음

• 제조업 등 법인이 매입하는 농수산물은 주로 수입품이므로 수출국에서 이미 VAT 영세율 등 면세가 적용된 만큼, 의제매입세액 공제시 과다한 보조금 지급에 해당

5. 납세편의 제고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확대

• (현행)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 1천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

• (개정) 모든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신고서와 간편신고서 비교

구 분	일반신고서	간편신고서
구비서류	10종	2종
작성항목	25개로 복잡	5개로 단순
세금계산서 합계표	구비서류로 첨부	신고서에 표기하고 미제출

■ 주세법상 주류하치장 설치승인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하치장 설치신고서 제출의무 면제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한의학 연구원 및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연구개발 지원

* 현재 과학용 연구개발시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상 18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청 훈령 · 고시 중 납세자 권리 ·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직접 규정

•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승인요건,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의 범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당좌대출 이자율(연 9%),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5%) 등

■ 기타 서식개정 등 단순 개정사항

IMF의 G-20 국가 경제성장전망 수정 발표

* 이 자료는 2009년 2월 6일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에서 발표한 「IMF의 G-20 국가 경제성장전망 수정 발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IMF의 G-20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 내용

(단위 : %, %p)

	'08년 전망					'09년 전망						'10년 전망	
전망시기	08. 4월	7월	10월	11월	09. 1월	08. 4월	7월	10월	11월 (A)	09.1월 (B)	차이 (B-A)	09.1월 (C)	성장속도 (C-B)
세 계	3.7	4.1	3.9	3.7	3.4	3.8	3.9	3.0	2.2	0.5	△1.7	3.0	2.5
미 국	0.5	1.3	1.6	1.4	1.1	0.6	0.8	0.1	△0.7	△1.6	△0.9	1.6	3.2
독 일	1.4	2.0	1.8	1.7	1.3	1.0	1.0	–	△0.8	△2.5	△1.7	0.1	2.6
프랑스	1.4	1.6	0.8	0.8	0.8	1.2	1.4	0.2	△0.5	△1.9	△1.4	0.7	2.6
영 국	1.6	1.8	1.0	0.8	0.7	1.6	1.7	△0.1	△1.3	△2.8	△1.5	0.2	3.0
이탈리아	0.3	0.5	△0.1	△0.2	△0.6	0.5	0.5	△0.2	△0.6	△2.1	△1.5	△0.1	1.9
캐나다	1.3	1.0	0.7	0.6	0.6	1.9	1.9	1.2	0.3	△1.2	△1.5	1.6	2.8
일 본	1.4	1.5	0.7	0.5	△0.3	1.5	1.5	0.5	△0.2	△2.6	△2.4	0.6	3.2
중 국	9.3	9.7	9.7	9.7	9.0	9.5	9.8	9.3	8.5	6.7	△1.8	8.0	1.3
인 도	7.9	8.0	7.9	7.8	7.3	8.0	8.0	6.9	6.3	5.1	△1.2	6.5	1.4
한 국	4.2	4.1	4.1	4.1	2.5	4.4	4.3	3.5	2.0	△4.0	△6.0	4.2	8.2
호 주	3.7	–	2.5	2.4	2.3	3.4	–	2.2	1.8	△0.2	△2.0	1.8	2.0
아르헨티나	7.0	6.5	6.5	6.5	6.5	4.5	4.0	3.6	3.0	0.0	△3.0	1.5	1.5
브라질	4.8	4.9	5.2	5.2	5.8	3.7	4.0	3.5	3.0	1.8	△1.2	3.5	1.7
인도네시아	6.1	6.1	6.1	6.0	6.1	6.3	6.3	5.5	4.5	3.5	△1.0	4.0	0.5
멕시코	2.0	2.4	2.1	1.9	1.8	2.3	2.4	1.8	0.9	△0.3	△1.2	2.1	2.4
러시아	6.8	7.7	7.0	6.8	6.2	6.3	7.3	5.5	3.5	△0.7	△4.2	1.3	2.0
사우디	4.8	–	5.9	5.5	5.5	5.6	–	4.3	4.1	0.8	△2.3	3.7	2.9
남아공	3.8	3.8	3.8	3.7	3.1	3.9	3.9	3.3	2.8	1.3	△1.5	3.5	2.2
터 키	4.0	4.0	3.5	3.0	1.0	4.3	4.3	3.0	2.0	△1.5	△3.5	3.5	5.0
유 로	1.4	1.7	1.3	1.2	1.0	1.2	1.2	0.2	△0.5	△2.0	△1.5	0.2	2.2

2 IMF의 G-20 국가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 내용

Ⅰ.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1. 세계경제 전망

1 (세계경제) 08. 4/4분기 실적 악화*로 08년 3.4%, 09년은 0.5%로 전후 최저수준으로 전망(08. 11월 2.2% 전망, 1.7%p 하향조정)

* 08. 4/4분기 산업생산과 상품수출 각각 15~20%, 30~40% 감소

• 각종 위기대책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이 지속되고 실물경기도 심각한 침체 국면

–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감소 및 불확실성 증가가 소비위축 및 생산과 무역감소로 연결되는 금융/실물 간 악순환이 지속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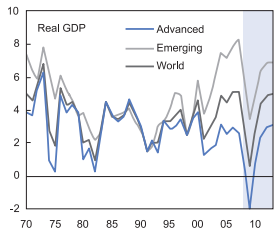

산업생산 및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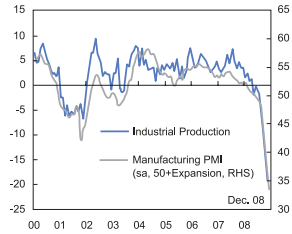

* 자료 : IMF G-20 Note(2. 3일)

• 다만, 지속적인 금융 · 재정 · 통화정책 추진으로 2010년 3.0%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

2 (선진국) 09년 △2.0%로, 2차대전 후 최대 경기위축을 기록할 전망

• 금융대책과 대규모 재정정책, 큰 폭의 금리인하 등으로 09년말 이후 점차 회복하여 2010년은 1.1% 성장 예상

– (미국) 유가하락과 감세에도 불구하고 09년 △1.6%, 09년 하반기 공공지출 증가로 2010년 서서히 회복(1.6%)될 전망

– (유럽) 주택가격 하락, 금융시장 불안 및 실업률 증가 등으로 09년 △2.0%, 2010년 0.2% 성장 전망

– (일본) 글로벌 수요 감소 및 엔화 절상에 따른 수출감소, 내수위축 등으로 09년 △2.6%, 2010년 0.6% 성장 전망

3 (신흥개도국) 09년 3.3%, 2010년 5.0% 성장 전망

• 수출 감소,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해외차입제약 등의 영향으로 08년 6.3%에서 성장세 크게 둔화

– (유럽 중 · 동부) 막대한 재정적자하에서 금융위기로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IMF 구제금융 요청

– (중국) 09년 6.7% 성장이 예상되며,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내수증진으로 2010년 8% 성장 전망

4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하락 및 경기 부진의 여파로 선진국 및 신흥개도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5 (환 율) 안전자산 선호현상에 따라 현재 엔화, 달러화, 유로화 등 주요 준비통화가 상대적으로 강세인 반면, 위안화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

• 신흥국가의 통화는 큰 폭의 절하 후 외국자본의 대거 이탈이 진정되면서 중기균형수준 유지 또는 다소 하회(환율 저평가)

* 중기균형수준에 근접한 통화: 브라질 헤알화, 폴란드 즐로티화
중기균형수준을 하회하는 통화: 한국 원화, 멕시코 페소화, 인니 루피

2. 세계경제의 위험요인

1 (실물/금융 간 악순환) 불확실성 증가 → 소비 · 투자 위축 → 노동시장 악화 → 개인 · 기업파산 → 금융부실 → 경기침체

① (美 주택시장 침체) 2010년까지 주택가격 급락이 지속되어 금융시장 회복을 저해하고, 실물 및 여타 국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② (디플레이션) 제로 금리로 통화정책이 제한된 상황에서 디플레이션 기대가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지연시켜 극심한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

③ (해외차입 곤란) 선진국의 대규모 국채발행과 deleveraging 확대 등으로 신흥국의 외자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

④ (보호무역주의) G-20 공동선언에도 불구하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강화와 수출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징후가 나타남

Ⅱ. 정책대응 현황 및 효과성

1. 통화 및 금융정책

1 (추진동향) 글로벌 금융시장의 붕괴 방지를 위한 세계 각국의 광범위한 통화 및 금융정책 실시

① (정책금리 인하) 금융시장 불안으로 정책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아 전반적인 금융시장 압박이 지속

② (중앙은행의 직접개입) 신용창출 기능 손상 및 금리인하 효과 미비로 기업어음, 자산유동화 증권

및 모기지채권 매입 등 실시

③ (공적자금 투입) 정부는 은행예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확대하고 직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금융당국은 부실 금융기관의 구제 등에 관여

2 (정책 효과) 전례 없는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불안은 지속되고 있으며, 주요 금융기관도 위기에 여전히 취약

- 신속한 정책대응에 실패하여 금융위기의 실물경제로의 확산을 차단하지 못했으며,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 필요
  - CDS 스프레드 확대 및 주가 하락 등으로 볼 때 주요 금융기관의 회생가능성에도 불확실성이 증대

2. 재정정책

1 (추진동향) G-20 국가는 평균 08년 GDP의 0.5%, 09년 1.4% 2010년 1.3%의 재정지출안을 채택

- G-20 국가들의 경기부양책은 감세 1/3, 지출확대 2/3로 구성

〈G-20 국가의 재정정책〉

재정정책 내용			해당 국가
감세	소득세 인하		캐나다, 독일, 인도네시아, 한국, 스페인, 영국
	간접세 인하		캐나다, 중국, 독일, 인도, 한국, 영국
	법인세 인하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한국, 러시아, 영국
지출확대	도로망 확대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이탈리아, 한국, 미국 등
	취약산업지원	중소기업지원	많은 국가
		건 설	독일
		에너지	중국
		자동차	중국, 프랑스, 스페인, 미국
		국 방	러시아
		농 업	브라질, 한국, 러시아
	취약계층지원	실업수당	러시아, 스페인, 영국, 미국
		현금보조	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아동지원	호주, 독일
		연금지원	호주, 캐나다
	장기과제	의료·교육	호주, 중국
		환경기술개발	중국, 독일, 영국, 미국

2 (재정정책의 효과) 현재 계획된 경기부양책의 실행으로 G-20 국가의 09년 GDP 성장률을 0.4~1.3%p 높일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경우 캐나다, 독일, 일본, 한국, 미국, 신흥국의 경우 중국, 러시아, 남아공에서 가장 큰 폭의 성장효과 기대

〈G-20 국가의 경기부양책의 GDP 대비 규모 및 성장효과〉

	Size 2/ (In percent of GDP)			Growth Impact 3/a (In percent of GDP)	
	2008	2009	2010	2009	2010
Argentia 4/	0.0	1.3	n.a.	0.3 ~ 1.1	−0.1 ~ −0.2
Australia	0.7	0.8	0.3	0.2 ~ 0.7	−0.1 ~ −0.4
Brazil	0.0	0.3	0.2	0.1 ~ 0.2	0.0 ~ 0.0
Canada	0.0	1.5	1.3	0.4 ~ 1.3	0.1 ~ 0.4
China	0.4	2.0	2.0	0.6 ~ 2.1	0.5 ~ 1.4
France	0.0	0.7	0.0	0.2 ~ 0.6	0.0 ~ −0.1
Germany	0.0	1.5	2.0	0.4 ~ 1.2	0.3 ~ 0.9
India 5/	0.0	0.5	n.a.	0.2 ~ 0.5	−0.1 ~ −0.3
Indonesia	0.0	1.3	1.1	0.4 ~ 0.8	0.0 ~ 0.0
Italy	0.0	0.2	0.1	0.1 ~ 0.2	0.0 ~ −0.1
Japan	0.0	1.4	0.4	0.4 − 1.3	−0.3 ~ −0.7
Korea	1.0	1.5	0.3	0.5 ~ 1.3	−0.3 ~ −0.8
Mexico	0.0	1.0	n.a.	0.3 ~ 1.0	−0.2 ~ −0.6
Russia	0.0	1.7	n.a.	0.6 ~ 1.7	−0.6 ~ −1.7
Saudi Arabia	2.4	3.3	3.5	1.3 ~ 4.2	0.2 ~ 0.6
South Africa 6/	1.3	1.3	n.a.	0.4 ~ 1.3	−0.4 ~ −1.3
Spain	3.1	1.1	0.3	0.3 ~ 0.9	0.0 ~ 0.1
Turkey	0.0	0.0	n.a.	0.0 ~ 0.0	0.0 ~ 0.0
United Kingdom	0.2	1.4	−0.1	0.4 ~ 1.0	−0.4 ~ −1.0
United States	1.1	1.9	2.9	0.6 ~ 1.4	0.4 ~ 1.2
Total (PPP weighted a verage)	0.5	1.4	1.3	0.4 ~ 1.3	0.1 ~ 0.3

〈참고〉 재정정책 수단별 경기부양 효과 분석(IMF, 자체분석)

- (변수구분) 감세/인프라투자 확대/기타로 구분
- (결과) 인프라투자 확대가 집행시차(implementation lag)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에 가장 효과적

  * 재정승수(= 국민소득/재정투입) : (감세) 0.3~0.6, (인프라투자) 0.5~1.8

– 다만, 현재는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제약 가계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감세의 재정승수가 최대치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

3 **(재정건전성)** 경기부양을 위한 세수감소 및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G-20 국가들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할 전망

* G-20 국가의 재정은 GDP 대비 평균 0.3% 악화되고, 2010년에는 산출갭(output gap)의 확대에 따라 1.2% 악화될 전망

① (세수감소)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 수익세, 소비세 등 감소에 따라 정부재정 악화

* 09년 G-20 국가 평균 GDP의 약 1.3% 재정적자 원인(IMF 자체전망)

② (공적자금투입) 부실금융기관 구제 및 금융시장 지원으로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의 정부부채 증가

* 금융시장투입자금 규모(GDP 대비, 중앙은행의 유동성공급 및 지급보증 제외) : (선진국) 5%, (신흥시장국) 1.2% 수준

Ⅲ. 정책추진방향

1. 금융부문 정책

1 **(부실자산 처리)** 은행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과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부실자산 처리에 총제적인 노력이 필요

- 정부의 지급보증 방식, 배드뱅크에 인계하는 방식 등이 있으며, 배드뱅크의 경우 정부재정이 많이 소요되나 투명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

2 **(자본확충)**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의 자본확충(recapitalization)이 신속하고 큰 규모로 이루어질 필요

- 경제여건 악화로 은행 재무구조의 추가적인 악화에도 견딜수 있도록, 지급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규모의 자본재확충 필요

3 **(주택시장)**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 필요

-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주택차압 및 파산을 제한하고, 주택가격의 overshooting 위험을 줄일 필요

4 **(유동성 공급)** 중앙은행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공급

- (선진국) 부실자산처리 및 자본재확충으로 은행의 재무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충분한 유동성 공급 필요
- (신흥시장국) 외국인 자본유입의 급격한 중단이 은행의 지급불능 사태를 야기하지 않도록 유동성 공급이 필수

– 신흥시장국은 은행 예금인출 사태의 위험 방지 및 지급불능 사태 방지를 위한 총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워크아웃제도를 강화할 필요

- (국제공조)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은 건전한 펀더멘틀을 가진 신흥시장국에 통화스와프, 무역금융을 위한 credit line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

2. 거시경제정책

1 **(통화정책)** 제로금리에 가까운 국가의 중앙은행(특히 연준)은 정부채권 구입 등 전통적인 통화정책보다는 주요 신용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에 중점을 두는 대안적인

정책수단 마련 필요

- 단, 개입 목적 및 정책성공 판단 기준을 시장에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

2 **(재정정책)** 통화정책 한계로 인해 재정정책이 중기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내수를 부양하는 핵심적 역할을 할 필요

- 재정지출 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며, 정부지출로 적절한 기간 동안 생산 증대를 가져오는 것이 핵심
  - 주요 선진국은 정책시차는 가장 크나 경기부양 효과 또한 가장 큰 인프라투자를 통해 경기를 부양할 필요
- 단, 중기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정책은 일시적이어야 하며, 경기호전시 점진적인 재정 조정(fiscal correction)이 필요

3 **(환율정책)** 유연한 환율제도하의 국가의 경우 환율변동이 자본유출 압력을 거의 흡수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 환율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할 필요

- 신흥시장국은 자본유입 역전의 영향을 완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나 동시에 글로벌 디레버지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자본유출 현상이 지속적일 수도 있음을 유념

4 **(신흥시장국의 정책방향)** 다수의 신흥시장국은 경기대응적인 재정정책의 여지가 있으나, 글로벌 금융시장 압력이 재정정책 여지를 제약하고 경기부양책의 비용을 증가시킬 전망

- 상대적으로 건전한 거시경제 펀더멘틀을 가진 신흥시장국의 경우 과거보다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 및 내수 지지를 위한 재량적인 정책 활용 여지가 증대

유가환급금 수령자 설문조사

* 이 자료는 2009년 1월 29일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에서 발표한 「유가환급금 수령자 설문조사」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유가환급금 지급 현황

■ 2008년 11~12월 2개월간 근로자 · 자영업자 등 총 1,435만명에게 26,520억원의 유가환급금 지급

구 분	지급인원(만명)	지급금액(억원)
계	1,435	26,520
근로소득자	742	15,298
일용근로자	349	4,216
사업소득자	344	7,006

※ 유가환급금 제도 개요

– 중산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소득(근로자는 총급여 3,600만원,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소득세 환급 형태로 지급

■ '08년도 신규입사자 · 신규개업자(약 80만명 추정)는 '09. 5월 신청, 6월 지급 예정

2. 유가환급금 수령자 대상 설문조사

■ 설문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유가환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 자영업자 1,000명

• 조사시기, 조사기관 : '09. 1. 14~1. 16, KDI

■ 설문 내용

– 지급받은 유가환급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가?

– 유가환급금이 가계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 유가환급금 지급 절차는 간편하였는가?

■ 설문조사 표본은 전체 지급대상자의 직업별(근로자 · 자영업자), 소득별, 지역별 분포를 감안하여 설계

■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의 53.5%가 유가환급금을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27.5%가 '카드빚 등 가계부채 상환'에 사용 ⇒ 전체의 81%가 소비 및 소비 관련 부채상환에 사용

• 응답자의 55.2%가 유가환급금이 "중 · 저소득층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

– 유가환급금을 '소비지출'에 사용했다는 응답은 근로소득자(43.8%)보다는 자영업자(74.4%)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

– 고연령층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가환급

금을 소비지출에 더 많이 사용

– 저연령층일수록, 유가환급금 지급액이 많을수록 유가환급금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1 설문조사 결과 요약표

설문요지	조사항목	응답비율
1. 유가환급금 사용 용도	① 소비지출	53.5%
	② 저축	10.1%
	③ 카드빚 등 가계부채 상환	27.5%
	④ 기타	8.9%
1-1. 소비지출 용도	① 쇼핑	13.6%
	② 외식비	9.7%
	③ 자녀교육비	3.9%
	④ 생활비	65.8%
	⑤ 기타	6.9%
2. 유가환급금이 중·저소득층 가계에 도움이 되는 정도	① 매우 도움	21.0%
	② 어느정도 도움	34.2%
	① + ② 도움 됨	(55.2%)
	③ 보통	(22.8%)
	④ 별로 도움 안 됨	18.2%
	⑤ 전혀 도움 안 됨	3.8%
	④ + ⑤ 도움 안 됨	(22.0%)
3. 유가환급금 지급절차에 대한 의견	① 매우 간편	28.7%
	② 대체로 간편	42.4%
	① + ② 간편	(71.1%)
	③ 보통	(18.6%)
	④ 다소 불편	8.8%
	⑤ 매우 불편	1.5%
	④ + ⑤ 불편	(10.3%)

2 외국의 주요 관련사례

■ 미 국

• '08년 개인은 300~600$, 결혼 가정은 600~1,200$(유자녀 가정의 경우 1인당 300$ 추가) 지급 등 총 1,100억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 실시

■ 일 본

• '99년 저소득층 3,5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엔의 상품권 제공(총 7,000억엔 규모)

■ 우리나라의 사례 이후 일본·호주·대만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현금·상품권 등을 배부하는 정책을 발표

• 일본

–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2천~2만엔 지급

– '09. 2월 지급 예정(총 2조엔)

• 호주

– 790만명(전 국민의 37%)에게 최대 1,400호주달러(130만원) 지급

– '08. 12월 지급 (총 9.6조원)

• 대만

– 전 국민에게 1인당 3,600대만달러(16만원)의 상품권 지급

– '09. 1월 음력 설 이전 지급 (총 3.7조원)

선진 조세체계 구현을 위한 목적세 정비 추진 필요성

* 이 자료는 2009년 1월 16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에서 발표한 「선진 조세체계 구현을 위한 목적세 정비 추진 필요성」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목적세 정비 추진경과) '08. 2월 「이명박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과제」에서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한 '세제개편 방침'을 밝힌 이후, 정부는 교통세 · 교육세 · 농특세 등 3개 목적세법의 정비를 추진해 왔음

- 그간 6차례의 공식 관계부처 회의* 및 공청회**, 수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목적세법 폐지 및 재원보전 방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졌음

  * 제1차관 주재 3회(9. 23, 11. 24, 12. 16), 세제실장 주재 2회(9. 9, 9. 12) 등

  ** 목적세 정비 공청회('08. 7. 31(목), 한국조세연구원) → 목적세 폐지의 당위성에 대한 조세연구원 발제 및 이해관계자 토론

- 현재는 국회에 제출되어 농특세법 폐지안은 본회의에, 교육세법 폐지안은 재정위에 계류중임

  * 교통세법 폐지안은 '09. 1. 8(목) 본회의를 통과

2 (목적세의 문제점) 현행 목적세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그간 학계를 중심으로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현행 목적세는 세원 하나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는 Tax-on-tax 방식으로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예산운용에 경직성을 야기하여, 국민에게는 납세협력비용을, 세정 측면에서는 징세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옴

  * (高 납세협력비용) 신고서식 증가 등으로 세금자료의 작성 · 관리 · 보관비용 상승

  (高 징세비용) 세수집계, 전산관리 및 체납관리 등 각종 행정비용 발생

- 세계은행의 「Doing-business 기업환경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제분야에서 '07년도에 106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

– 이처럼 평가가 저조한 것은 우리나라의 세목 수와 세금의 신고납부횟수가 많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경쟁력이 여타 경쟁국에 비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 더욱이 세금의 부담자와 수혜자가 달라 목적세의 기본요건이라 할 수 있는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맞지 않음

3 (목적세 정비방안) 금번 세제개편을 통해 교통세 · 교육세 · 농특세 등 3개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하는 한편, 재원보전을 위하여 금년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특별회계 재원 확충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임

〈목적세별 정비방안〉

세목 구분	본세통합 방안
교 육 세	• (국세분) Sur-tax를 모두 본세 통합 • (금융보험업분) 수수료 수입 VAT 과세 전환
교 통 세	• 휘발유 · 경유 세금을 개별소비세로 통합
농 특 세	• (국세분) Sur-tax를 모두 본세 통합(종부세분 제외) • (지방세분) 취득세분 · 레저세분 등 본세 통합

• 본세 통합을 통해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한편,

• 재원배분 문제는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내국세 총액의 20.0% → 20.5%)을 통해, 교통세 · 농특세는 일반회계 재원에서 100% 보전함으로써, 목적세가 폐지된 이후에도 관련부처 사업에 전혀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임

④ **(목적세 정비 반대논리에 대한 입장)** 그러나 일부에서 목적세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거가 없음

【교육세법 폐지안 관련】

① 비판논리 Ⅰ : 교육세 본세 통합에 따른 교육재정의 축소 우려

•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대체하면 오히려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됨

– 그 이유는, 첫째, 내국세수가 교육세수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므로, 내국세수의 일정률을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이 재정확보에서 더 유리하고

* 내국세 평균증가율('01~'08) 10.1%, 교육세 평균 증가율('01~'08) 2.0%

– 둘째, 교육세 세수는 제도 성격상 본세인 개별소비세 및 주세 등의 세입에 좌우되어 세수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세수 안정성 측면에서도 내국세 연동이 교육세보다 유리하기 때문임

* 실제 '04년과 '06년은 교육세수가 전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고, 이러한 세수 변동폭은 매년 더 커지고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율을 상향 조정(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0% → 20.5%)하여 교육세 폐지액 전액을 보전할 계획임

– 교육재정이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여 교육교부율을 내국세수의 20.5%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고, 이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에도 알렸음

* 교육세 본세 통합 가정시 재정중립적 교육재정교부율 평균 : 최근 3년 20.42%, 최근 5년 20.45%, '08 예산 20.4%

② 비판논리 Ⅱ : 교육세 본세 통합시 GDP 대비 교육재정 비율 6%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에 차질 우려

•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본세에 통합되기 때문에 GDP 대비 교육재정 비율 6% 달성과는 무관한 사항이며

• 앞으로 OECD 국가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분야 예산을 크게 늘려나갈 계획임

* 교육분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교육예산 : 36.1조원('08) → 47.1조원('12) (연 평균 7.6% 증가)

【농특세법 폐지안 관련】

■ 비판논리 : 농특세법 폐지로 인해 농어업 분야 지원을 위한 재정확보에 차질 발생 우려

• 농특세를 본세에 통합하여 세수중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재원손실분은 일반회계에서 100% 보전할 것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 전혀 영향이 없을 것임

• 더욱이 농특세는 재원조달 기능 면에서 의미가

점차 축소되고 있음

– '09년도 농림수산분야 예산 16.7조원 중 농특세 수입이 4.0조원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현재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재원의 상당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어 농특세가 폐지되더라도 향후 재정지원에 전혀 문제가 없음

* '09년도 예산상 농특회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액 : 1.5조원

• 또한, 농어촌 부문에 정부가 기 결정한 「농업 · 농촌분야 중장기 투 · 융자 계획」에 따라 '04~'13년간 총 123.2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 특히,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농특세 폐지와 관련한 일정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농특회계로 전입토록 규정하여 재원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함

5 (목적세 처리 지연에 따른 문제점) 목적세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첫째, 목적세 폐지를 전제로 명목세율 인상 및 각종 감면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한 개별소비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기 통과한 상황에서 목적세 정비만 지연될 경우 조세체계의 심각한 왜곡이 발생함

• 둘째,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함

– 목적세법 폐지안이 계속 계류되면 세입예산이 확정되지 못하게 되고, 금년 초부터 개시되는 '10년 예산편성시 대상기관에 대한 지침통보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생김

* 예산편성지침은 매년 4월 말까지 각 부처 · 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2월부터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시행함

6 (목적세 정비시 기대효과) 조세체계의 간소화, 납세협력비용의 감소, 예산운용의 효율화 등 우리 재정제도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① (조세체계의 선진화) 금번 목적세 정비로 재정학자를 중심으로 학계가 그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세목 통 · 폐합이 가능해져 선진 조세체계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됨

〈목적세 정비 후 국세체계의 간소화 변화〉

구 분	현 행	개 선
일반세	11개	11개
목적세	3개	0개
계	14개	11개

② (국민 납세협력비용 및 국가 징세비용 감소)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신고서 작성부담, 세무자료의 보관 · 관리비용, 관련 인건비 등 각종 인적 · 물적 납세협력비용이 대폭 감소하고,

• 세정 당국의 입장에서도 세수집계, 전산처리, 체납관리 등에 따른 세무행정관리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 기업하기 좋은 환경 및 납세자 프랜들리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임

③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또한 재원운영의 칸막이가 사라져 국가의 세출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

참 고 목적세제 현황

1 (개 요) 농특세, 교육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등 3가지

구 분	설치연도	설치 목적	적용시한	시한연장
농특세	1994. 3	• 94년 UR협상 타결에 따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발전사업에 소요될 재원 확보	2014. 6	• 당초 일몰 : 04.6 → 추가 시장개방을 고려, 10년 연장
교육세	1982. 1	•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교육재정 확보	없음 (영구세)	• 한시법으로 시작 → 90년 영구화
교통세	1994. 1	•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2009.12	• 당초 일몰 : 03.12 → 3년씩 2회 연장

2 (과세구조 및 세입 현황) 농특세 · 교육세는 다양한 세원의 Sur-tax로, 교통세는 휘발유 · 경유에 직접부과 방식으로 운영

〈목적세 정비 후 국세체계의 간소화 변화〉

농특세		교육세		교통세	
• 조세감면액 (소득세, 법인세, 관세, 취 · 등록세)	20	• 주세법상 주세액 (주정, 탁주, 약주 제외)	10	• 휘발유	472원/ℓ
• 취득세액	10	• 금융 · 보험업 수익금	0.5		
• 레저세액	20	• 개별소비세액	30		
• 증권거래금액	0.15	• 교통세	15	• 경유	335원/ℓ
• 개별소비세액	10				
• 종합부동산세액	20				

〈목적세 정비 후 국세체계의 간소화 변화〉

구 분	2007년 실적	2008년 전망	2009년 예산
금액(억원)	205,853	197,884	195,942
· 농특세	38,009	36,360	41,825
· 교육세	38,612	41,169	42,477
· 교통세	129,232	120,355	111,640
국세 중 비중 (%)	12.7	11.9	10.9

근로사실이 불확실한 53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이 자료는 2009년 2월 5일 국세청 소득지원과에서 발표한 「근로사실이 불확실한 53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금년 최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에 앞서 근로사실 유무가 불확실한 53만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임

• 금번 안내대상은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중 부양자녀 · 주택요건은 충족되나 근로소득 자료가 없어 소득요건 및 근로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가구를 선정한 것으로

• 실제는 근로자로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나 사업자(고용주)의 소득자료(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로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배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①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② 부양자녀 요건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③ 주택 요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④ 재산 요건	5천만원 이하 주택포함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 위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 3개월 이상 수급자 및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 금번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09. 1. 30~2. 6 발송)을 수령한 가구 중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나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함

※ 상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09. 3. 10, 일용지급명세서 '09. 3. 2까지 제출 가능

• 다만,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을 거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 급여수령통장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에 한함) 중 한 가지 자료를 첨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 근로장려금 신청 전에 근로소득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위 서류 중 한 가지를 준비하여야 함

■ 아울러, 사업자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확인이 가능한 근로장려금 수급예상 가구에 대하여는

• '08년 근로소득이 확정되는 '09. 4월말 근로장려금 신청을 추가적으로 안내하여 모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의 빠짐 없는 신청을 유도하여 나갈 예정임

■ '09년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청기한('09. 5. 1~6. 1) 내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8월 말까지 정밀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계획임

-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상계하고 6월 말 지급예정임

미분양주택 취득시 취 · 등록세 50% 감면 확대

- 감면기간 1년 연장 및 감면지역 지방에서 전국으로 확대 -

* 이 자료는 2009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에서 발표한 「미분양주택 취득시 취 · 등록세 50% 감면 확대」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속하게 침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2008. 6. 11.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라 현재 시행중에 있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 감면의 적용기간을 2010. 6월 말까지 연장(당초 2009. 6월 말 완료)하고, 적용지역도 지방(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행안부는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2008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및 거래량이 서울 · 경기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급속히 하락 · 감소세에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이번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확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09. 2. 12일 발표일 현재 전국 미분양주택을 발표일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② 시 · 도의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로부터 2010. 6. 30일까지 취득(잔금지급 · 등기)하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경감한다.

③ 또 작년 「6 · 11.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라 '08. 6. 11일 이후 미분양주택을 계약하여 2010. 6. 30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감면기간을 연장(당초 2009. 6월 말 한)하여 취득세 · 등록세 50%를 감면한다.

■ 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99㎡(30평)인 미분양주택을 2억 4천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세액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낮아져 372만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세액감면 효과 예시〉

취득가액 (만원)	전용면적 (㎡)	세율(%)		세액(만원)		차액	
		당초 (A)	변경 (B)	당초 (a)	변경 (b)	세율 (A−B)	세액 (a−b)
2억 4천	99(30평)	2.7	1.15	648	276	1.55	372
3억 2천	132(40평)	2.7	1.15	864	368	1.55	496

※ 미분양주택 취득에 따른 취 · 등록세 세율 감면 혜택은 50%의 감면 효과이며, 취 · 등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인하 효과까지 포함할 경우 총 57.4%의 감면 효과 발생

■ 오동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대책은 행안부 · 기재부 · 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종 마련되었으며, 주택경기의 조기 회복과 실물경기 침체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시행시기는 시 · 도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부터 이루어지므로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 미분양주택 취득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시행일을 확인

하여 감면조례 시행일부터 2010. 6. 30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 행안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면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각 시 · 도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미분양주택 취 · 등록세 감면(개요)

■ 감면요건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① 대상주택	• '09. 2.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으로 • '10. 6. 30일까지 준공(사용승인) 된 것 • '08. 6.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으로 • '10. 6. 30일까지 준공(사용승인)된 주택도 포함	※ 규모, 사업승인, 분양시기 등 무관
② 대상지역	• 전 국	
③ 취득자	•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자	
④ 시행시기	• 시도 감면조례 개정일 이후	※ 시도별로 개정일자 차이 있음
⑤ 적용시한	• '09. 2.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감면조례개정시행일부터 '10.6.30일까지 취득, 등기하는 경우 • '08. 6. 11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 '10. 6. 30일까지 취득, 등기하는 경우 포함(기간 연장)	
⑥ 절차	• 지자체에서 "미분양확인서 발급 또는 확인" 후 감면신청	
⑦ 신청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미분양확인서, 또는 미분양확인을 받은 분양계약서, 잔금지급영수증	

■ 세율 감면혜택(전용면적 85㎡ 이상)

구 분	감면 비율	비 고
합 계	2.7% → 1.15% (57.4%)	
취 득 세	1% → 0.5% (50%)	
등 록 세	1% → 0.5% (50%)	
농어촌특별세	0.5% → 0.05% (90%)	※ 감면분 비과세
지방교육세	0.2% → 0.1% (50%)	

■ 준공후 미분양주택 현황('08. 11월 말 기준)

합 계	서울	경기	인천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44,259	–	1,173	–	1,173	3,426	6,098	5,081	812	418

합 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259	6,124	2,479	4,403	1,027	4,404	2,528	6,072	214

재정통계

- 업종별 법인 수
- 시도별 법인 수
- 결산기별 법인 수
- 유형별 공익법인 현황
- 유형별 공익법인 현황(2001년 이후 통계항목 변경)

1. 업종별 법인 수

(단위: 개)

연 도	계	광업	제조업	전기 · 가스 · 수도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음식, 숙박업
1975	14,868	161	5,319	1	1,368	1,804	209	76
1976	16,199	157	5,881	2	1,462	1,854	312	89
1977	18,698	177	6,505	2	1,575	2,275	426	99
1978	20,684	185	7,165	2	1,913	2,576	508	126
1979	23,542	194	7,639	4	2,296	2,958	532	139
1980	26,612	203	8,007	3	2,832	3,534	597	148
1981	28,808	199	8,516	3	3,052	4,026	637	171
1982	35,424	232	9,146	9	3,484	4,516	691	180
1983	38,740	253	9,676	19	4,701	4,849	753	201
1984	40,678	275	10,129	17	5,479	5,194	721	203
1985	42,719	278	10,882	25	5,918	5,465	727	215
1986	45,844	307	12,396	26	6,293	6,036	852	238
1987	50,723	336	14,988	31	6,635	7,056	947	291
1988	56,615	355	17,897	34	7,067	8,460	1,065	353
1989	65,224	375	20,847	39	8,915	10,385	1,163	442
1990	76,638	450	24,073	35	11,311	13,213	1,490	477
1991	90,553	567	27,486	46	14,951	16,593	1,769	536
1992	102,136	630	29,577	45	19,415	19,547	2,310	538
1993	112,262	812	33,244	53	20,487	22,564	2,259	595
1994	125,413	896	36,675	51	24,108	25,115	2,493	695
1995	142,084	957	41,086	52	27,855	29,336	2,856	735
1996	160,071	977	45,748	71	31,233	33,894	3,125	870
1997	179,316	1,000	49,985	87	34,912	39,022	3,471	1,017
1998	181,835	979	50,104	122	34,198	39,093	3,565	1,095
1999	206,354	1,100	57,288	148	38,918	43,433	4,508	1,416
2000	242,652	1,104	68,314	157	45,516	50,484	5,495	1,673
2001	286,352	1,074	76,677	169	55,724	57,030	6,585	1,791
2002	317,154	1,058	83,183	178	61,273	65,903	7,239	1,987
2003	330,187	1,032	84,812	199	64,741	69,059	7,197	2,002
2004	341,866	1,019	86,428	234	66,688	71,744	7,027	2,013
2005	360,821	1,001	88,475	257	70,158	76,726	7,038	2,057
2006	372,393	949	88,551	311	71,195	79,802	6,533	2,319

1. 업종별 법인 수 〈계속〉

(단위: 개)

운수보관업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서비스업	농업, 임, 어업	어업	산림업	축산업	의료업	기타산업
566	356	926	2,614		110	14	42	39	1,263
660	345	1,088	2,820		110	14	45	49	1,311
1,075	445	1,145	2,751		119	18	50	66	1,970
1,581	457	1,180	2,831		123	20	61	79	1,877
2,226	677	1,296	3,026		115	13	70	77	2,280
2,480	1,066	1,492	3,316		142	16	65	88	2,623
2,760	1,396	1,603	3,550		126	13	68	100	2,588
2,967	6,823	1,746	4,031		142	50	98	123	1,186
3,252	6,970	1,913	4,564		153	48	107	141	1,140
3,466	7,038	1,976	4,850		151	41	94	165	879
3,636	7,153	2,046	5,201		153	28	93	164	735
3,678	7,050	2,124	5,593		154	26	104	194	773
3,745	6,992	2,270	6,252		177	24	100	201	678
3,814	7,015	2,285	7,039		195	25	98	200	713
3,908	6,945	2,415	8,443		203	36	105	196	807
4,100	6,920	2,630	10,447		230	41	127	219	875
4,276	7,052	2,707	12,763		242	47	135	234	1,149
4,603	7,176	2,715	13,744		219	56	120	244	1,197
4,848	7,203	2,872	15,117		239	54	137	274	1,504
5,121	7,248	3,068	16,983		248	59	226	289	2,138
5,719	7,270	3,223	19,257		359	73	348	332	2,626
6,228	7,476	3,461	22,770		261	107	425	382	3,043
6,813	7,642	3,731	26,729		307	121	462	396	3,621
6,933	7,531	3,872	28,655		330	105	478	425	4,350
7,565	7,820	4,276	32,433		456	142	561	463	5,827
9,144	7,341	4,496	43,170		467	153	565	485	4,088
18,394	6,918	5,841	48,705		773	667	1,165	621	4,218
19,912	10,219	7,104	52,374	2,831				671	3,222
20,347	10,590	7,737	54,967	2,527				702	4,275
20,650	9,935	8,983	59,656	2,594				724	4,171
21,595	10,987	10,266	64,731	2,608				756	4,166
22,700	11,530	11,719	69,809	2,783				816	3,376

주: 1. 당해연도 말 가동법인 기준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시도별 법인 수

(단위: 개)

연 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합계	90,553	102,136	112,262	125,413	142,084	160,071	179,316	181,835
서울특별시	38,443	42,589	46,352	50,277	54,892	61,606	67,814	68,473
부산광역시	6,947	7,481	7,942	8,609	10,150	10,801	12,504	13,362
대구광역시	3,596	4,082	4,731	5,035	5,552	6,874	7,809	6,750
인천광역시	3,659	4,081	4,848	5,366	6,577	7,777	7,893	8,381
광주광역시	2,395	2,769	3,088	3,353	4,117	5,842	4,233	4,723
대전광역시	2,102	2,507	2,645	2,936	3,394	3,745	4,229	3,898
울산광역시	-	-	-	-	-	-	2,685	2,771
시계	57,142	63,509	69,606	75,576	84,682	96,645	107,167	108,358
경기도	11,052	12,725	13,768	15,995	18,061	20,818	25,755	26,558
강원도	1,897	2,248	2,508	2,955	3,402	3,048	4,350	4,724
충청북도	2,260	2,709	3,142	3,461	4,124	4,391	4,584	5,016
충청남도	2,399	2,842	3,198	3,800	4,297	4,990	5,336	5,686
전라북도	2,663	2,906	3,224	3,865	4,710	4,887	5,503	5,821
전라남도	2,478	3,004	3,449	4,404	5,093	5,055	7,435	7,281
경상북도	4,182	4,746	5,298	6,035	7,027	7,872	8,516	8,092
경상남도	5,567	6,337	6,887	7,936	9,089	10,497	8,643	8,518
제주도	913	1,110	1,182	1,386	1,599	1,868	2,027	1,781
도계	33,411	38,627	42,656	49,837	57,402	63,426	72,149	73,477

2. 시도별 법인 수 〈계속〉

(단위: 개)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6,354	242,652	286,352	317,154	330,187	341,866	360,821	372,393
76,531	95,077	112,350	123,558	127,082	128,712	133,935	136,579
12,918	14,126	16,405	18,262	18,852	19,278	20,252	20,962
8,130	8,245	9,953	10,779	11,079	11,441	11,587	12,247
10,691	11,242	13,172	14,649	15,314	15,503	15,853	18,115
5,207	5,241	6,383	7,675	7,837	8,006	8,757	8,839
5,116	5,807	6,736	7,166	7,453	7,736	8,280	8,625
2,866	3,232	3,853	4,142	4,462	4,620	4,989	5,243
121,459	142,970	168,852	186,231	192,079	195,296	203,653	210,610
29,446	38,209	46,779	53,866	58,829	64,730	70,649	72,461
5,317	5,431	6,411	7,497	7,580	7,747	8,046	8,239
6,460	6,964	9,156	8,531	8,714	9,062	9,597	9,910
6,339	6,618	7,378	9,717	10,074	10,813	11,728	12,097
6,406	9,143	10,465	11,141	9,665	9,790	10,130	10,523
8,039	8,632	9,178	9,403	11,352	11,895	12,404	12,869
10,454	10,594	11,372	12,618	12,916	13,172	14,496	14,645
10,441	11,976	14,288	15,403	16,136	16,436	16,781	17,484
1,993	2,115	2,473	2,747	2,842	2,925	3,337	3,555
84,895	99,682	117,500	130,923	138,108	146,570	157,168	161,783

주: 법인 수에는 최종 사업연도가 종료하지 아니한 신규법인은 제외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결산기별 법인 수

(단위: 개)

연 도	계	12월 말	3월 말	6월 말	9월 말	기타
1983	38,740	34,285	1,242	1,253	463	1,497
1984	40,678	36,100	1,286	1,319	479	1,494
1985	42,719	38,189	1,270	1,331	486	1,443
1986	45,844	41,079	1,326	1,373	521	1,545
1987	50,723	45,710	1,414	1,492	555	1,552
1988	56,615	51,447	1,427	1,594	564	1,583
1989	65,224	59,614	1,544	1,756	642	1,668
1990	76,638	70,288	1,769	2,052	755	1,774
1991	90,553	83,826	1,866	2,238	786	1,837
1992	102,136	95,453	1,842	2,190	827	1,824
1993	112,262	105,366	1,956	2,282	840	1,818
1994	125,413	118,409	1,928	2,337	807	1,932
1995	142,084	135,165	1,982	2,388	802	1,747
1996	160,071	152,776	2,108	2,484	912	1,791
1997	179,316	172,099	2,087	2,466	798	1,866
1998	181,835	174,280	2,229	2,382	800	2,144
1999	206,354	197,635	2,336	2,571	915	2,897
2000	242,652	233,970	2,475	2,533	883	2,791
2001	286,352	277,087	2,652	2,589	932	3,092
2002	317,154	308,562	2,613	2,599	1,003	2,377
2003	330,187	321,256	2,801	2,584	980	2,566
2004	341,866	333,072	2,641	2,508	937	2,708
2005	360,821	351,864	2,786	2,561	901	2,709
2006	372,393	363,376	2,867	2,493	917	2,740

주: 1. 당해연도 말 가동법인 기준임.
2. 법인의 회계연도가 12월로 편중되는 추세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유형별 공익법인 현황

(단위: 개)

연 도	계	출연재산 없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있는 공익법인						
			소계	학교	학술 장학 자선	사회복지	의료	종교	기타
1991	3,790	902	2,888	1,070	785	641	125	180	87
1992	3,920	913	3,007	1,070	854	653	138	189	103
1993	3,995	941	3,054	1,077	849	656	146	197	129
1994	4,230	983	3,247	1,058	953	703	176	187	170
1995	4,461	990	3,471	1,055	1,046	768	197	205	200
1996	4,624	938	3,686	1,079	1,114	808	237	215	233
1997	5,269	1,357	3,912	1,101	1,157	907	261	195	291
1998	5,221	1,309	3,912	1,081	1,204	872	276	189	290
1999	5,486	1,455	4,031	1,096	1,200	906	264	220	345
2000	5,773	1,977	3,796	978	1,160	792	227	207	43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유형별 공익법인 현황(2001년 이후 통계항목 변경)

(단위: 개)

연 도	계	교육사업	학술 장학 자선	사회복지	의료목적	종교보급	문화예술	기타
1997	5,269	1,160	1,278	1,215	285	378	254	699
1998	5,221	1,154	1,333	1,254	293	381	245	561
1999	5,486	1,197	1,392	1,307	289	424	245	632
2000	5,773	1,310	1,413	1,242	274	543	263	728
2001	11,063	1,727	1,826	1,972	382	3,810	351	995
2002	10,987	1,531	1,862	1,962	380	3,890	365	997
2003	11,177	1,512	1,896	1,970	377	3,881	367	1,174
2004	17,812	1,685	2,333	2,129	457	8,561	391	2,256
2005	26,517	1,749	2,732	2,505	452	16,414	451	2,214
2006	27,500	1,858	2,837	2,617	478	17,135	493	2,082

주: 2001년도부터 통계항목 변경.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추경 10조 규모로 조기 편성

사상 최대… 정부 "내수 살리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 필요"
재정부, 조세硏에 검토 의뢰

정부가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편성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추경 규모와 시기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했다.

올해 예산이 집행되기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됐지만 경기가 급격히 냉각됨에 따라 정부 안팎에서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는 지난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에 추경 편성의 원칙과 규모,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분야 등을 분석해 조속히 회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재정을 추가로 얼마나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보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 당국자는 "불황의 충격을 줄이려면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아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내외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추경을 편성할 경우 그 규모가 10조 원은 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추경이 가장 많이 편성된 해는 신용카드 부실사태가 터졌던 2003년으로 당시 규모는 7조5000억 원이었다.

재정부는 윤증현 장관 내정자와 추경 편성 방침에 대한 의견 조율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져 윤 장관이 공식 취임하는 9일을 전후해 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수출 기업을 위한 보증보험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자 "170조 원으로 설정된 수출보험 공급 한도가 소진되면 추경예산이 편성될 때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해 추경을 편성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편 재정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6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2009년 2월 10일자〉

원윤희 조세연구원장,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 유지해야"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이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지출이 적절한 사업과 대상을 선택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는 등 성과관리를 통해 재정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원 원장은 27일 '재정포럼 1월호'에 실린 '경제위기와 재정의 역할'이라는 칼럼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100년 만에 온 경기침체'라고 정의한 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원 원장은 그러나 "지금과 같이 감세와 재정지출의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은 결국 국가부채 규모를 확대해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나쁜 결과를 낳지 않으려면 재정 건전성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유인하고 ▷최대한 시장 왜곡을 피하며 ▷민간의 의존성을 높이지 않고 ▷정부지원으로 시장 퇴출을 막아서는 안 되는 등 시장을 보완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출이 적절한 사업과 대상을 선택해 적시에 이뤄져야 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성과관리최고책임자(Chief Performance Officer)를 임명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재정지출은 가능한 국가경쟁력에 도움이 될 사회간접자본이나 기술개발, 인적자원개발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 2009년 1월 27일자〉

"자본소득 세제 일원화를" 이참에 땜질 처방 아닌 근본대책 마련해야

'엔화스와프예금'의 환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자본 세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파생금융상품이 쏟아지면서 비슷한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엔화스와프예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엔화예금'과 일종의 파생상품인 '선물환계약'이 별개의 거래인지, 아니면 하나의 통합된 거래인지 여부다. 우리나라는 예금 이자에는 과세하지만 파생상품에는 대다수 다른 나라와 달리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똑같은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비과세로 나뉘면서 분란이 생겼다는 얘기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관련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9월 세제개편안 발표 때는 파생상품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증권업계의 반발과 기형적인 현행 주식거래세 때문이다. 현물 주식을 거래할 때도 0.3%의 증권거래세·농특세만 부과하고 있는데 파생상품에만 양도세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증권선물거래소 등의 논리였다. 또 대안으로 검토된 거래세 부과에 대해서도 증권업계는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파생상품을 포함한 자본소득의 세제를 ■금융소득 일원화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금융서비스 부가세 부과 등의 방향으로 일원화·선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잡한 파생상품별로 관련 세제를 미리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분쟁이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가 중장기 과제로 미룬 금융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2009년 1월 22일자〉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수술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안 제로 베이스 검토..다음달 공청회
수수료율 단일화 · 매입사업자 · 진입규제 완화 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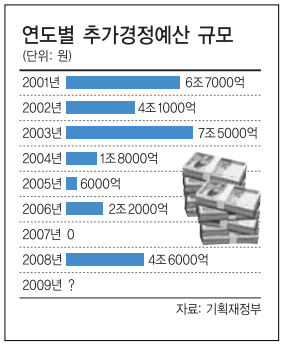

정부가 다음달까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근본적으로 끌어내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수료율 단일화, 매입사업자 제도 도입 등이 집중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미 발표한 대로 재래시장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3%포인트 낮추는 것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2월에 점검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나아가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현재까지 논의된 사안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2월 중 여러 방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부 안팎에서는 근본적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으로 수수료율 단일화, 매입사업자 제도 도입, 신용카드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이 검토돼 왔다.

수수료율 단일화 방안은 현재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가맹점, 중소가맹점, 영세가맹점 등에 따라 큰 편차가 있는 카드 수수료율을 간소화하자는 주장이다. **김재진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방안에 대해 "한국과 같은 복잡한 수수료율 체계에서 카드 수수료를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굉장히 심플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매입사업자 제도는 '카드 발급사-카드 회원-가맹점'으로 구성된 3단계 신용카드 수수료 시스템에 전표매입사를 도입하는 것. 납부 대금을 카드 사용자들로부터 거둬 가맹점에 전달하는 일을 전표 매입사에게 주자는 것.

하지만 카드업계는 제도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제도 도입시 수익이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수수료 인하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제도가 도입될 지는 불투명하다.

〈이데일리 2009년 1월 22일자〉

재정포럼

2009년 2월호 통권 제152호

■ 발 행 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 행 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 집 위 원 /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 월간 재정포럼
2009년 2월 16일 발행 / 제14권 제2호(통권 제152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 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 · 전화 · FAX · 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 · 이름 ·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